

최 종
연구보고서

GOVP1200628480

T0009657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Reorganization of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HSK)
for Agricultural Products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주산업대학교
농협중앙회

농 립 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5월 24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최 세 균
연 구 원 : 허 주 녕

협동연구기관명 : 진주산업대학교
협동연구책임자 : 조 덕 래
연 구 원 : 김 상 용
연 구 원 : 전 장 수

협동연구기관명 : 농협중앙회
협동연구책임자 : 정 태 호
연 구 원 : 황 형 성
연 구 원 : 이 욱

요 약 문

I. 제 목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HS)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적정한 관세 분류 체계와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 적용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 등 관세 관련 통상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세분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관세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관세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국제적인 사례 분석,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 농업 관련 신상품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관세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 관세의 농업보호 기능 제고 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 내용

- 관세 및 품목분류 관련 규정 검토
- 주요국의 관세제도 분석
- 품목분류 현황 비교 분석
- 품목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 농산물 품목분류체계 개선 방안

2.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HS)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요국의 관세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 및 분석하고, 국내 관련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HS) 개편 방안을 제시
- 적정한 관세분류 체계와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 적용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 등 관세 관련 통상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세분류체계를 구축
- 국제적인 사례 분석,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 농업 관련 신상품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관세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 관세의 농업보호기능 제고
- 관세정책, 수입관리 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국문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HS)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적정한 관세 분류 체계와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 적용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 등 관세 관련 통상분쟁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세분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관세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관세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국제적인 사례 분석,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 농업 관련 신상품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관세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 관세의 농업보호기능 제고 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국내 품목분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둘째로는 주요국의 관세제도를 분석하고, 셋째, 품목분류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국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관계, 국제 협상에서의 협상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나 잠정적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 캐나다, Mercosur, 한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국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양허 및 실행 관세율표를 엑셀(Excell) 형태로 정리한다(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국가별로 1,000~2,500개 정도의 품목이 존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대상 국가의 품목별, 품목군별 품목분류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넷째, 품목분류 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군별 잠정 분류표를 작성하여 품목단체, 교역 관련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끝으로 농산물 품목분류 세분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화 및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등을 통한 품목분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품목의 세분화 및 관세율 차등화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단순함과 관세율 설정의 불합리성 등으로 관세회피를 위한 여러 가지 수입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회적 수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품목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분류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조정은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게 조정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WTO 회원국 등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HS 코드는 10단위까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은 6단위까지이다. 따라서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인도는 농산물 품목분류 수가 1,400여 개고, 미국, 캐나다 EU는 2,000개 이상이다. 선진국들은 특히 축산물에 대한 HS 코드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류, 버터 밀크, 치즈와 커드류 등의 품목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포도주, 코코아 조제품, 초콜릿 등 조제식품에 있어서도 품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포도주를 9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도주 관련 HS 코드는 8개이다.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특히 우리나라보다 세분화된 HS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축산물, 채소·과실 조제품이다. 육류의 경우 EU는 232개 코드로 되어 있어 미국(125개)이나 우리나라(94개)보다 2~3배 더 세분화되어 있다. 낙농품은 미국이 EU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은 낙농품에 있어서 264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174개보다 두 배, 우리나라의 51개보다는 다섯 배나 더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의 예를 바탕으로 통계적 목적은 물론 산업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품목분류는 관세 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목적과도 관련된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 관세행정적 측면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장점이 많다. 예를 들면, 포도주(HS 2204번)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U는 실질적으로 9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양허된 품목분류는 20여 개에 불과하나 실행세율 품목분류는 통계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세분화 한 것임).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수입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물론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왜곡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 또는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입(예, 찌팔)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 못지않게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관세율 적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30%의 동일한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에도 미국, EU 등이 보다 세분화된 품목코드에 기초하여 차등화 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개로 단순하게 분류된 품목에 40%의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쇠고기가 우리나라 농산물 중 민감 품목으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도가 높으며 개방의 요구 또한 높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 대비하여 민감 품목으로 선정한 돼지고

기, 사과, 배, 쌀 등의 품목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품목체계의 단순화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체계의 단순화는 국제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좁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자유화 추세에 대비하여 국내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품목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관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EU,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품종, 품목 부위 등의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여 품목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관세율의 차등화는 WTO/DDA 협상 이행계획서 작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2. WTO/DDA 이행계획서 제출 대비

WTO에서 진행 중인 DDA 협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WTO/DDA 협상이 타결되면 회원국들은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양허 계획서를 제출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관세율표 상에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민감도에 따라 관세감축 폭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품목의 범위와 순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세균 외(2006)는 부가가치, 재배면적, 지역집중도, 경쟁력, 시장보호 정도(관세율 등), 자급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품목별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피해액의 비율, 교역 가능성(검역 및 교역 비중 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의 순위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부가가치 기준 상위 33개 품목(이들 33개 품목이 농업 전체 부가가치의 86%를 차지)을 대상으로 미곡, 쇠고기, 고추, 인삼, 낙농품, 마늘, 감귤, 포도,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대두, 복숭아, 딸기, 참깨, 단감, 천연꿀, 양파, 엽연초토마토, 느타리버섯, 감자, 배추, 오이, 수박, 무, 파, 호박, 고구마, 참외, 상추, 시유 등의 순으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우선으로 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와 관세율 차등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WTO/DDA 협상 이행 및 농업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기타로 분류된 품목의 실체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코드로 정해지지 않아 '기타'라는 품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는 품목이 많다. 신선 농산물이 기타로 분류될 경우 냉장, 냉동, 건조, 파쇄 등 단순 가공품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 가운데에서도 기타로 처리된 것 가운데 교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실 품목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품목의 가공품도 실품목의 가공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로 분류된 품목은 주로 채소류(07류)와 과실류(08류),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등에 많다. 이러한 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타채소(신선/냉장), 기타채소(냉동), 기타채소(건조),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기타버섯(건조), 기타버섯(신선/냉장), 기타과

실(건조), 기타과실(신선), 기타곡물, 기타곡분 등이 있다. 냉동고추가 냉동채소의 일부로 분류된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HS 세번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특정한 HS 세번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1.4%로 나타났다. 독립된 HS 세번을 부여하더라도 관세율의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주요 품목의 경우 향후 시장개방 협상에서 관세율 감축/철폐의 차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급히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함량에 따른 품목 세분화 및 관세율 조정

혼합분유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76%(2006년 기준)임에 비해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하여 저세율로 수입한 뒤 다시 분유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율 코드를 세분화하고 포함된 성분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이다. 함유량 또는 성분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율을 원료 함유량 또는 성분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는 유럽연합(EU)이 가장 세분화된 기준과 품목분류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또는 이러한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낙농품, 설탕 등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 국가의 예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원료의 함량이 많을수록 원료 농산물에 가까운 관세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관세회피 등 우회적 수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특정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의 차이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71.4%에 달하였다. 관세율 수준은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농산물 품목 분류를 가공 정도나 품목의 함량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새로운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1.4%를 차지하였으며, 품목 분류를 세분화할 경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피해구제 제도를 통한 국내 농업보호가 유리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64.3%로 나타났다. 결국 농산물 품목분류가 세분화될 경우 일정부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더불어 수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5. 미래 지향적 품목분류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국제적 교역이 미미할지라도 점차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이 출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 및 품목분류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에 대하여는 전통적 농산물과 차별화가 요구된다. GM 농산물에 대하여는 현재 표시제도에 의해 교역과 유통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계적 목적 및 국내 유통에 대한 경로 추적, 적정 관세율 부과 등에 있어서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GM 농산물은 생산비가 낮고 수입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고려한다면 GM 농산물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3%는 GM 농산물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관세수준은 응답자의 42.9%가 기존의 농산물 관세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농산물 관세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28.6%였다.

SUMMARY

Reorganization for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HSK)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focuses on adjustment of commodity specification for tariff schedule. Te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S.A., the EU, MERCOSUR are select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gion, level of development, and trade or trade negotiation with Korea for comparative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for commodity specification have been reviewed. Case study for ten major countries was conducted to evaluate Korean harmonized system(HSK).

Korea has 1,452 tariff lin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it is far below the average of ten countries. The U.S.A. has the most specified commodity specification system with tariff lines of 2,689. Countries which have more than 2,000 tariff lines are Canada, the EU, and MERCOSUR. On the other hand, Thailand has the most simplified tariff specification system with just 1,065 tariff lines. Korea maintains relatively well specified commodities for HS 5, 6, 14, and 18 comparing the average. However, Korean commodity specification is far below the average for most of commodities including meat, dairy, grains, tobacco, and beverage.

Korea needs to develop more specified HS system considering the level of processing, species, and contents of raw materials. For example, rice needs to be specified considering variety(short, medium, and long), and the level of processing, parboiled, milled or husked, broken, etc. Beef can be more specified including veal and differences in parts like loin, hips, and rib. Dairy products should contain differences in variety and contents of raw materials. Different tariff rates should also be provided considering contents of raw materials and the level of processing as well as price differences from variety differences.

Problems are often from the classification of "others" which include anything other than classified specifically. There are too many items included in "others" for Korean harmonized system(HSK)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 needs

to specify real items to be classified in HSK and try to minimize items in “others”. Authoritie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ariff line specification and Korean government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providing new HS code for newly emerging traded goods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organic products, and new variety products. Social and scientific needs and concerns increase for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and their trade.

여 백

CONTENTS

Summary in Korean	iii
Summary in English	viii
Chapter 1 Introduction	1
1. Backgrounds of the study	1
2. Literature review	5
3.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6
Chapter 2 System of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8
1.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8
Chapter 3 Condition and feature for major country of tariff system	24
Chapter 4 Comparis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37
1. Scopes and method	37
2. Results(average tariff)	37
3. Results by country	38
4. Comparative analysis for major country	79
5. Classification for major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85
6. Overview and conclusions	109
Chapter 5 Survey on agricultur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114
1. Backgrounds of survey	114
2. Major subjects of survey	115
3. Results	115
Chapter 6 Reorganization of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124

Chapter 7 Accomplishment of target and contributions to the related fields	128
1. Accomplishment of target	128
2. Contribution to the related fields	128
Chapter 8 Application plan of study results	130
Chapter 9 Foreign scientific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study	130
Chapter 10 Reference	131
Appendix	133

목 차

요 약 문	i
국문요약문	iii
SUMMARY	v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1.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1
2. 적정 관세부과 및 우회수입 방지를 통한 농업피해 최소화	1
3. 통상마찰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관세체계 도입	3
4. 신기술, 신상품 출현에 대비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1. 연구목적	6
2. 연구내용	6
제2장 농산물 품목분류체계의 내용과 제도	8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체도의 발전 과정	8
1. HS의 제정 배경	8
2. HS협약의 주요 내용	10
3. HS 상품분류 구조와 원칙	12
가.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12
나. HS의 상품분류 원칙	14
4. HS의 농산물 품목분류 구조	15
가. HS의 농·수·임산물 분류체계	15
나. 농·수·임산물의 부·류별 품목배열	16
5. 관세율표의 변천과정과 구성	17
가. 한국 관세율표의 변천과정	17
나. 관세율표와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의 구성	18
다. HSK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20
6. 농산물 품목분류체계 수정의 제도적 근거	21

가.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21
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변경	23
제3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24
1. 한국	24
2. 일본	28
3. 미국	29
4. 유럽연합(EU)	31
5. 중국	32
6. 멕시코	33
7. 호주	34
8. 캐나다	35
9. 태국	36
제4장 품목분류의 국제비교	37
제1절 분석대상국 및 분석방법	37
제2절 분석결과(평균관세율)	37
제3절. 국가별 분석결과	38
1. 미국	38
2. 캐나다	43
3. 멕시코	47
4. MERCOSUR	51
5. EU	55
6. 일본	59
7. 중국	63
8. 태국	67
9. 인도	71
10. 한국	75
제4절 주요국의 품목분류 현황 비교분석	79
1. HS 2단위 품목분류 현황	79
2. HS 4단위 품목분류 현황	82
제5절 민감품목의 분류 현황	85
제6절 종합분석	109

제5장 품목분류 체계 관련 의견 수렴	114
제1절 설문조사 배경	114
제2절 설문 주요 내용	115
1. 설문 대상자	115
2. 설문 주요 내용	115
제3절 설문결과	116
1. 관세체계 인지도 및 개선방안	115
2. 품목분류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119
제6장 농산물 품목분류 개편 방향	124
1. 품목의 세분화	124
2.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화	125
3. WTO/DDA 이행계획서 제출 대비	125
4. 기타로 분류된 품목의 실체화	126
5. 함량에 따른 품목 세분화 및 관세율 조정	126
6. 미래 지향적 품목분류	127
제7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28
제1절 목표 달성도	128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기대효과	128
1. 관련분야 기여도	128
2. 기대효과	129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30
제9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30
제10장 참고문헌	131
부록	133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HS협약의 전문 및 본문 구성내용	11
표 2-2. HS 품목분류표의 구성내용	13
표 2-3. HS 해석에 관한 통칙 내용	14
표 2-4. HS의 농·수·임산물 분류체계	15
표 2-5. 농산물 품목분류의 세분화 실태	16
표 2-6. HS의 농·수·임산물 품목 배열	16
표 2-7. 한국의 관세율표 적용 품목분류 방법의 변화	18
표 2-8. HS,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의 구조 비교	19
표 2-9.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의 구성 예(신선한 배의 경우)	20
표 2-10. HSK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추정 결과	21
표 2-11. 품목분류 수정의 제도적 근거	22

제 4 장

표 4-1. 국별 평균 관세율	38
표 4-2.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39
표 4-3.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1
표 4-4.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3
표 4-5.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5
표 4-6. 멕시코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7
표 4-7. 멕시코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49
표 4-8. 남미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1
표 4-9. 남미연합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3
표 4-10. EU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5
표 4-11. EU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7
표 4-12. 일본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59
표 4-13. 일본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1
표 4-14. 중국의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3
표 4-15. 중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5

표 4-16.	태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7
표 4-17.	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69
표 4-18.	인도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1
표 4-19.	인도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3
표 4-20.	한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5
표 4-21.	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77
표 4-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분류 현황(2단위 기준)	81
표 4-23.	한국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6
표 4-24.	EU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86
표 4-25.	한국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8
표 4-26.	한국의 냉동 쇠고기(0202)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8
표 4-27.	캐나다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9
표 4-28.	캐나다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 품목분류 현황	90
표 4-29.	미국의 천연꿀(0409)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1
표 4-30.	미국의 오이류(0707)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1
표 4-31.	미국의 토마토(0702)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2
표 4-32.	한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2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93
표 4-34.	한국의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 품목분류 현황	100
표 4-35.	캐나다의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 품목분류 현황	100
표 4-36.	한국의 파·마늘류(0703)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1
표 4-37.	캐나다의 파·마늘류(0703)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2
표 4-38.	중국의 파·마늘류(0703)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3
표 4-39.	한국의 잎담배(2401)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3
표 4-40.	미국의 잎담배(2401)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4
표 4-41.	한국의 포도주(2204)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6
표 4-42.	EU의 발포성 포도주(2204)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6
표 4-43.	EU의 포도주(2204)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7

제 5 장

표 5-1. 설문 대상자	115
표 5-2. 단순 가공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116
표 5-3.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	117
표 5-4. 농산물 관세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	118
표 5-5. 관세품목분류상 '기타' 분류품목	120
표 5-6. 기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필요성	121
표 5-7.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차이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121
표 5-8.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신상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122
표 5-9.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의 관세 수준	122
표 5-10. 농산물 품목분류 세분화에 대한 의견	12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DDA) 농업협상 등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고 있다. UR협상에서 농업부문의 비관세장벽은 관세화를 통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따라서 관세의 수입규제 또는 시장보호 기능은 UR 이전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 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가격기능(또는 시장기능) 조절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부문 관세는 재정적 기능(관세 수입에 의한 재정적 기여)보다 산업보호 기능(농업부문의 높은 관세에 의한 수입억제)이 중시되는 경향이다.

관세를 통한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관세율 구조상 고율관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율관세는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분쟁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WTO/DDA 농업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고율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율관세를 큰 폭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율관세 이외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관세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이 가능한 관세제도로 관세부과 방식의 다양화(종량세, 복합세, 계절관세 등), 관세품목분류(Harmonized System Korea: HSK)의 세분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 세분화에 의한 농업보호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세균 외, 2002). 따라서 관세의 농업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 품목분류 또는 세번분류(稅番分類)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2. 적정 관세부과 및 우회수입 방지를 통한 농업피해 최소화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HS 코드는 10단위까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은 6단위까지이다. 따라서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품목의 분류가 매우 복잡한 국가가 있는 반면 단순화된 국가

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1,452개(2005년 기준)이고, 미국, 캐나다, EU 등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2,000개를 넘는다. 품목분류 수의 차이는 HS 6단위 이하에서 얼마나 품목을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포도주(HS 2204번)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U는 9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수입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稅番)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세계 주요국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보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부문은 비농업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번분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동일 품목내에서 세번 분류를 다양화하고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여 적절한 관세의 부과와 이를 통한 시장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우회적으로 수입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하거나 다른 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예, 냉동고추, 찐쌀, 모조분유 등) 관세를 회피하고 산업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추(HS 0904201000: 건조고추, HS 0904202000: 고추가루, HS 0709602000: 신선 및 냉장 고추)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관세율 상한을 설정하여 300%의 높은 관세를 얻어냈다. 300%의 관세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10년간 10% 감축되어 2004년도 관세율은 270%가 되었다. 그러나 냉동고추는 기타 냉동채소로 관세율 코드가 분류되어 2004년도 관세율은 27%에 불과하다(2003년부터 관세율 코드가 0710807000로 부여되었으나 수입 증가와 부정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2년까지는 별도의 코드 없이 0710809000의 기타냉동채소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많은 물량의 냉동고추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고추 주산지인 음성군 등에서 해동후 다시 건조되어 '음성고추' 등으로 부정 유통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세를 양허할 당시 냉동고추를 기타냉동채소에서 분류하여 고추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쌀의 품목분류 번호는 1006이다. 관세율은 기본관세만이 정해져 있고 양허관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쌀의 양허관세가 정해진다면 수백%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찐쌀은 곡물조제품인 1904류 가운데 쌀가공품(코코아 미포함)으로 수입할 수 있다(HS 1904901000). 찐쌀의 양허관세율은 54%로 매우 낮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찐쌀의 품목분류가 쌀과 같은 1006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의 품목분류를 쌀가공품이 포함되도록 세분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찐쌀의 관세율은 쌀의 관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수입 쌀의 용도가 대부분 제과용 쌀양금인 관계로 찐쌀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찐쌀이 기타로 분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찐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이다.

조제분유는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분유 재고가 누적되어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2002년 혼합분유 수입량이 2만 톤을 넘고 있다. 혼합분유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76%임에 비해 혼합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하여 저세율로 수입한 뒤 다시 분유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혼합분유를 모조분유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임). 이러한 현상은 관세율 코드를 세분화하고 포함된 성분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팝콘용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과 옥수수에 기타 성분이 포함된 제품간에 발생하는 관세율 차이로 인하여 관세가 낮은 팝콘용 옥수수 수입이 증가하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옥수수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찐쌀과 유사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기술(유통, 가공 관련 기술 등)과 운송·통신의 발달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회수입과 관세회피의 문제점은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분별 관세율 차등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증가하는 우회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관세율 및 품목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품목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번분류 체계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동일한 품목군 내에서 다양한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 못지않게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관세율 적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30%의 동일한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구조 아래서는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 가능성, 우리나라 품목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포도주로 분류된 품목군 내에서 알코올 함유 정도, 가격, 포장단위 등을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관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3. 통상마찰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관세체계 도입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관세회피,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이외에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과 이를 둘러싼 통상마찰을 들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조치(Safeguard: SG) 발동과 이를 둘러싼 한·중 마늘분쟁, 혼합분유 수입으로 인한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분류 및 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통상마찰과 산업피해 문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번분류 문제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농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통해야 하나 SG 발동은 절차가 복잡하고 구제 신청에서 발동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산업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 산업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SG를 발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며 발동된 피해구제조치는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구제 수단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국과의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국내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마늘 세이프가드 시행 직후인 2000년 6월 7일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양국간 무역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마늘에 비해 크게 낮게 설정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한·중 양국간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 코드를 재분류하고 관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세번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주요 통상 대상국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담당자, 품목별 생산자 단체, 관세청과 농림부 등 관련 정부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여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해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농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단순한 관세체계는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과세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세단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번분류(HS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번 내에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을 가공도와 혼합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쇠고기(HS 0202)로 분류되는 쇠고기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

를 부과한다. 그러나 EU는 같은 쇠고기라도 HS 코드 번호에 따라 최저 43%에서 최고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 같은 국가,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농산물에 관세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4. 신기술, 신상품 출현에 대비

새로운 상품의 출현은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쇠고기라도 품질을 차별화한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사료의 차별화, 사육방식의 차별화, 가공, 유통 단계 차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고 있다.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상품분류를 HS 코드에 포함하고 관세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회피를 통한 수입 증가는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 유통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농산물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켜 수입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상품 출현에 대비한 상품분류 코드의 추가, 신기술의 출현 따른 우회 수입 증가에 대비한 상품분류 코드의 세분화 등을 통해 수입증가와 관세회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농산물 관세체계 개편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세번분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세균 외(199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 및 관세율의 개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제도와 관세율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으나 본격적인 국가 간 비교연구는 아니다. 농산물 관세구조의 누진성 여부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다루고 있다.

최세균(2001)은 농산물 관세구조를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의 논문 형태로 포함된 연구 내용이 제한적이다.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 감축 결과를 우리나라와 주요 협상 대상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부는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대부분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하였다.

최세균 외(2002)는 주요국의 관세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에 각국의 관세율 체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관세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일부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낙균 외(1993)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12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 누진관세 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국한된 분석으로 국제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UR협상 타결을 상정한 분석으로 현재 진행 중인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감축공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정호 외(1993)는 실효보호율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낙균(1993)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HS)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적정한 관세 분류 체계와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제도 적용 등으로 인한 통상마찰 등 관세 관련 통상분쟁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세분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관세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관세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국제적인 사례 분석,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 농업 관련 신상품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관세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 관세의 농업보호기능 제고 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국내 품목분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둘째로는 주요국의 관세제도를 분석하고, 셋째, 품목분류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연구 대상국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관계, 국제 협상에서의 협상력 등을 고려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 캐나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국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양허 및 실행 관세율표를 엑셀(Exell) 형태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국가별로 1,000~2,500개 정도의 품목이 존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대상 국가의 품목별, 품목군별 품목분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품목분류 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군별 잠정 분류표를 작성하여

품목단체, 교역 관련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끝으로 농산물 품목분류 세분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화 및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등을 통한 품목분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장 농산물 품목분류체계의 내용과 제도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발전 과정¹⁾

1. HS의 제정 배경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상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다양화, 기호의 변화, 유행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품의 다양화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량하려는 노력도 상품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천연상품으로부터 첨단기술제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상품의 종류가 현존하고 있다. 수많은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면 분류기준을 설정한 다음 유형별 상품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품분류란 상품을 소재,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류(類)와 종(種)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상품군과 다른 상품군 사이의 차이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상품군별로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업무나 수입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비록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²⁾ 관세를 환급하거나 수출통관을 등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정확한 품목분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상품분류는 국제무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국가 간에 통일된 상품분류표를 사용하면 국제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표 작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1831년 벨기에는 자국의 무역통계 집계를 위한 목적으로 상품분류

1) 이 부분은 한희영·한동철(2002), 이강화(2001), 정용화·홍영선(2001), 김재식(2004), 홍영선(2002), 이정길(2003)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를 작성하여 사용³⁾한 바 있으나, 국제통일 관세율표 작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는 1853년에 개최된 브뤼셀회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889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International Commercial Congress)부터 각 국은 국제통일 관세율표 및 통계표의 유용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06년에 밀라노의 제2차 국제상업회의소 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Chamber Commerce)에서 국제통일 관세율표 및 통계표 작성의 필요성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13년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상업통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통계분류표를 국제협약으로 채택하였다. 이 분류표는 여러 나라에서 관세목적으로 이용되었고, 국제상업통계국이 산업통계⁴⁾를 작성하면서 이용하기도 했다. 그 후 1927년에 국제연맹이 주관하여 개최한 세계경제협회의회의에서 국제관세율표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1931년에 관세율표 초안인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제정하였다. 이 분류표는 각 국에서 관세율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연맹의 기능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상품분류표는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CCN),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등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체가 되었다. 국제연맹이 1938년에 발간한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최소목록(Minimum List of Commodities for International Statistics)은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참고한 것이고, 이것이 SITC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즉,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참고한 최소목록을 기초로 하여 1950년에 UN 통계위원회에서 표준 국제무역분류표(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7월에 UN 경제이사회(ECOSOC)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무역분류표(SITC)를 대외 무역통계 분류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그 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UN은 1988년부터 SITC 3차 개정 분을 무역통계 작성에 이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유럽 관세동맹연구단이 1948년에 관세목적으로 제정한 브뤼셀 관세품목표(BTN : Brussel Tariff Nomenclature)도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브뤼셀 관세품목표는 1950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체결되고, 1959년에 발효된 BTN협약⁵⁾의 부속서에 수록된 품목표이다. 브뤼셀 관세품목표는 1976년 6월에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통일상

3) 홍영선(2002), p. 6. 참조

4) 이 산업통계는 1922년에 발간되었으며, 최초의 산업통계이다(김재식, 2004).

5) BTN 협약의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관세율표의 물품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협약)이며, 동 협약은 전문, 본문 16개조 및 부속서(BTN)로 구성되어 있다.

품명 및 부호체계(HS)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되었으나 미국, 캐나다 등의 경제대국은 채택하지 않았다.

국제무역 비중이 큰 미국, 캐나다 등이 CCCN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신상품의 개발에 따른 무역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품목분류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공통성이 없어서 무역관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기존의 운송, 보험, 창고 등에 대한 상품분류의 통일 필요성도 새로운 품목분류표 개발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경제위원회로부터 상품분류 연구의 최적 국제기구라고 인정받은 관세협력이사회(CCC: 현 WCO⁶⁾)가 주관하여 13년간 국제 통일코드의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1970년 9월에 특별 연구단을 설치하여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 5월에 구성된 HS위원회(Harmonized System Committee: HSC)에서 새로운 상품분류 체도를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는 1983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으로 채택되었다. HS협약은 각 나라가 체결 절차를 거쳐 1988년 1월 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 협약으로 제정된 새로운 국제통일 상품분류체도가 곧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⁷⁾이다. 이것은 순 관세 목적인 CCCN 분류체계와 통계 목적의 국제무역 분류기준인 SITC를 모체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관세, 무역통계, 보험, 운송, 운임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HS협약의 주요 내용

HS 협약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 및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상품명 및 코드 변화가 광범위하게 연계되도록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는 데 있다. HS협약은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⁸⁾ 전문 및 본문의 구성 내용은 <표 2-1>과 같다.

6) WCO는 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의 약자이다.

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약칭하여 Harmonized System으로 부르기도 한다.

8)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HS협약의 정본은 벨기에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표 2-1. HS협약의 전문 및 본문 구성내용

조 항	내 용	조 항	내 용
전 문	HS협약의 목적, 필요성	제 11 조	체약국의 자격
제 1 조	용어의 정의	제 12 조	체약국의 가입절차
제 2 조	부속서(HS품목표)	제 13 조	효력의 발생 시기
제 3 조	체약국의 의무	제 14 조	속령에 대한 적용
제 4 조	개도국에 대한 적용	제 15 조	탈퇴
제 5 조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 16 조	개정 절차
제 6 조	HS위원회(HSC)	제 17 조	체약국의 권리
제 7 조	HS위원회의 기능	제 18 조	유보
제 8 조	이사회의 역할	제 19 조	사무총장의 통지
제 9 조	관세율	제 20 조	UN 등록
제 10 조	분쟁의 해결		

자료 : 세계관세기구, 홍영선(2002)에서 재인용.

HS협약 제3조에 의하면 HS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에 대해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 및 수출입 통계분류표를 HS 품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HS의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그들 관련 코드번호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② HS 해석에 관한 통칙과 부, 류 및 소호의 주(notes) 적용과 부, 류, 및 호 또는 소호 범위의 변경을 금지해야 하고 ③ HS의 번호 순서를 준수하며 ④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무역통계의 경우 6단위 수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6단위 이상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단, 상업적인 비밀이나 국가안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각 체약국은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문면상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HS협약 제17조는 각 체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로 각 체약국은 HS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둘째, 각 체약국은 총회의 협약개정 권고, 총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협약개정의 제안, 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HS해설서 및 HS품목분류 의견서 등의 안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S위원회(HSC)는 HS 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산하에 HS연구 소위원회와 과학자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급박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HS를 전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HS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협약 제7조에 규정된 HS위원회의 주요 기능

은 정보의 수집 및 배포, 협약 수정사항 작성, HS 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 작성, 해설서 작성, 품목분류 의견 및 기타 조언안 작성,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등이다.

3. HS 상품분류 구조와 원칙

가.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기본구조는 부-류-절-호-소호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품목분류의 원칙을 규정한 HS 해석에 관한 통칙과 주(notes)가 설정되어 있다. 부와 류의 표제는 참조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HS의 3대 구성요소인 통칙, 주 및 호·소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무역 대상 품목의 분류방법은 부(section)로 대분류한 다음 류로 중분류하고 있으며, 각 류는 호(heading)로 소분류하고, 각 호는 소호(sub-heading)로 세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류-(절)-호-소호의 구조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체계로서 수직적 품목분류 형식이다. 그런데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류를 세분하는 절은 특정한 몇 개의 류⁹⁾에만 분류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제로서 품목분류 구조로서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직적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HS 품목번호의 표시방법은 6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계 공통단위이다¹⁰⁾. 6단위 숫자 중 앞의 두 단위는 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단위는 호를 나타내며, 마지막 두 단위는 소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HS 품목번호가 081340이라면 제8류(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3호(건조한 과실)의 40소호(건조한 기타 과실)에 속하는 품목이다¹¹⁾.

HS 품목분류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가공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농·수·임산물, 광물 및 화공약품, 경공업 제품, 기계·전기기기, 전자·정밀기구, 잡품 및 미술품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산 동물인소는 제1류에 분류되어 있고 소의 가공제품인 소가죽은 제41류에 분류되어 있으며, 가공도가 더 높은 가죽 신발류는 제64류에 분류되어 있다. 류 내에서도 가공정도 순으로 품목을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신선한 감은 제8류의 10호 90소호

9) 절이 있는 류는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17류, 제72류이다.
10) 각 나라는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네 단위의 통계부호(혹은 부호)를 설정하여 세세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호를 10단위까지 세세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11) 각 국은 081340 아래 4단위의 숫자로서 건조한 기타 과실을 부호로서 세세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타 건조 과실(081340)은 건조 감(1813401000)과 건조 대추(0813402000)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081090)에 분류되어 있는데 가공도가 높은 건조 감은 081340에 분류되어 있다.

품목분류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주(notes)는 부의 주, 류의 주 및 소호의 주로 구분된다. 주는 각 부, 류, 호·소호의 분류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부 또는 류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등 품목분류상의 지침을 규정한다. 부의 주는 부의 표제 아래에 수록되어 있고, 류의 주는 류의 표제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호의 주는 류의 주 아래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HS의 품목분류 구성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대분류 수준에서 수평 배열한 21개의 부를 97개의 류로 중분류하고¹²⁾, 그것을 다시 1,254개의 호로 세분류한 다음 5,230개의 소호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부의 주는 44개이며 류의 주와 소호의 주는 각각 340개, 5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표 2-2. HS 품목분류표의 구성내용

품목분류		통칙 및 주	
항 목	구성내용	항 목	구성내용
부	제1부~제21부	통 칙	제1호~제6호
류	제1류~제97류	부의 주	44개
절	33개	류의 주	340개
호	1,254개	소호의 주	51개
소호	5,230개		

자료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율표(2004. 12. 29.)」로부터 집계한 것임.

한편 HS는 품목분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HS해설서, HS품목분류 의견서, HS품목색인서, HS·CCCN·SITC 사이의 상관표, HS·SITC 사이의 상관표 등의 부속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WCO가 HS의 공식적인 해석기준으로 채택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는 HS협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이다. HS품목분류 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는 각국에서 제출한 특정 상품의 분류에 관한 의견을 HS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유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 의견서는 협약상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HS 품목색인서(HS index)는 HS 및 HS해설서에 수록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파벳 순으로 품명을 작성한 것이다.

12) 제3부, 제14부, 제19부 및 제21부는 류로 세분하지 않고 있다.

13) 부별 분류항 수 및 주의 수는 부록1 참조.

나. HS의 상품분류 원칙

부, 류, 절, 호, 소호, 주 등과 같은 HS 구성요소만으로서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분류의 불완전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제품의 수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을 모두 일관성 있게 부, 류, 절에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분류원칙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을 제정하였다. 통칙은 하나의 상품은 항상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되고, 다른 품목번호에서는 명확하게 제외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칙은 모두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칙1은 최우선 적용원칙으로서 통칙2 이하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호 및 주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칙1에 의해 분류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종속적 적용원칙인 통칙2, 통칙3, 통칙4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분류해야 하며 역순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통칙5(용기류 및 포장재료 분류원칙)와 통칙6(소호의 분류원칙)은 보완적 적용원칙으로서 본 통칙이 규정하는 상품만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통칙5와 통칙6은 번호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칙에 부과하여 별도로 적용된다. HS 해석에 관한 통칙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HS 해석에 관한 통칙 내용

통칙 번호	주요 내용	적용 원칙
통칙 1	호 및 부·류의 주에 의한 우선원칙	최우선 적용원칙
통칙 2	불완전 물품 및 혼합물의 분류원칙	종속적 적용원칙
	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분류원칙	
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의 분류원칙		
통칙 3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결정원칙	
	가 협의로 표현된 호의 우선 분류원칙	
	나 물품의 본질적 특성 우선 분류원칙	
다 최종 호 분류원칙		
통칙 4	유사물품 분류원칙	
통칙 5	용기류 및 포장재료 분류원칙	보완적 적용원칙
	가 케이스, 상자 및 유사 용기 분류원칙	
나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 분류원칙		
통칙 6	소호의 품목분류 원칙	

주: 홍영선(2002, p. 20), 김재식(2004, p. 394-412), 정용화·홍영선(2001, pp. 18-19)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4. HS의 농산물 품목분류 구조

가. HS의 농·수·임산물 분류체계

농·수·임산물에 대한 HS 분류체계는 총 21부 중 4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24개의 류로 중분류하고, 201개의 호로 소분류한 다음 725개의 소호로 세분류하고 있다. 부의 주는 4개이며 류의 주와 소호의 주는 각각 65개, 12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2-4>.

농·수·임산물의 대분류 4개 부 중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고 있는 제2부의 소호 수가 265개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소호 비중을 차지하는 부는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을 포함하는 제1부와 가공식품류를 분류하는 제4부로서 각각 219개, 195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성 유지 관련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 제3부의 소호 수는 4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HS의 농·수·임산물 분류체계

형식별 품목분류항의 수(개)					주의 수(개)		
부	류	절	호	소호	부의 주	류의 주	소호 주
제1부	제1류~제5류	0	44	219	2	12	2
제2부	제6류~제14류	0	79	265	1	26	2
제3부	제15류	0	21	46	0	4	1
제4부	제16류~제24류	0	57	195	1	23	7
계	24개	0	201	725	4	65	12

자료 :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2004. 12. 29.)」로부터 집계한 것임.

농·수·임산물을 세분류한 소호 수는 전체 소호 수(5,230개)의 13.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6단위 기준으로 분류한 HS 품목분류표의 전체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농·수·임산물 품목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표 2-5>. 농·수·임산물의 경우 부당 소호 분류항 수와 류당 소호 분류항 수는 각각 181개, 30개인 반면 나머지 상품의 그것은 각각 265개, 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수·임산물이 상대적으로 상품분류의 세분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농·수·임산물 품목분류의 세분화 실태

	농·수·임산물	비 농·수·임산물
부 수	4	17
류 수	24	73
소호 수	725	4,505
부당 소호 수	181.3	265.0
류당 소호 수	30.2	61.7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2004)」로부터 집계하여 산출.

나. 농·수·임산물의 부·류별 품목배열

제1류부터 제5류까지 5개의 류로 중분류되어 있는 제1부에는 산동물, 육류, 어패류, 낙농품 등의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 배열되어 있으며 9개의 류로 중분류된 제2부에는 채소, 과일, 곡물 등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어 있다. 별도로 중분류하지 않은 제3부에는 동물성 유지 관련제품이 배열되어 있으며 9개의 류로 중분류되어 있는 제4부에는 가공식품류, 담배 등의 관련제품이 포함되어 있다¹⁴⁾<표 2-6>.

제1부부터 제3부까지는 품목분류의 주요 요소로서 용도, 종류, 가공상태 등을 기준하고 있다. 제4부 중 가공식품류(제16류부터 제21류까지)는 가공상태, 원재료의 종류, 성분 등을 기준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음료 및 주류(제22류)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 요소로서 제법, 주정도수, 성분 등을 채택하였다. 식품공업 잔재물 및 담배(제23류부터 제24류까지)는 원재료, 가공도, 용도 등을 품목분류상의 주요 요소로 이용하고 있다.

표 2-6. HS의 농산물 품목 배열

부	류	주요 품목	분류상의 주요 요소
제1부	제1류~제5류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용도, 종류, 가공상태
제2부	제6류~제14류	식물성 생산품	용도, 종류, 가공상태
제3부	제15류	동물성 유지	용도, 종류, 가공상태
제4부	제16류~제21류	가공식품류	가공상태, 원재료, 성분
	제22류	음료 및 주류	제법, 주정도수, 성분
	제23류~제24류	식품공업 잔재물 및 담배	원재료, 가공도, 용도

자료 : 이정길(2003), p. 374.

14) 부,류별 품목분류 내용은 부록2 참조.

5. 관세율표의 변천과정과 구성

가. 한국 관세율표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관세법은 제1조에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절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근거법이며, 동시에 수출입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관세법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첫째로 관세수입의 확보에 있으며, 둘째로는 주요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는데 있다. 세 번째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다. 즉, 관세 부과를 통하여 국내 산업 보호, 소비 억제, 국제수지 개선 등을 도모하고 관세율과 관세제도의 조정을 통한 물가안정 및 수출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충족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59조)”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고 규정되어 있다. 즉,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로서 관세법상 과세를 위해 상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상품별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방식은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몇 차례 변경되어 왔다. 해방 후부터 1961년까지는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방식을 사용하였고¹⁵⁾, 1962년부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브뤼셀 관세품목표(BTN) 체계를 상품분류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며 1968년에 BTN 협약에 정식 가입하였다. 1976년부터 브뤼셀 관세품목표(BTN)를 개칭한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CCN) 방식을 사용하였다. 1987년 11월 27일 BTN 탈퇴와 동시에 HS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988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표 2-7>.

15) 우리나라 최초의 관세율표는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 공포한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 및 통계품목표(통합관세통계품목표)였다(정용화·홍영선, 2001, p. 27).

표 2-7. 한국의 관세율표 적용 품목분류 방법의 변화

적용 기간	품목분류 적용 방법
1950 ~ 1961년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1962 ~ 1976년	브뤼셀 관세품목표(BTN)
1977 ~ 1987년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CCN)
1988 ~ 현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자료 : 이정길(2003), p. 374., 정용화·홍영선(2001), pp. 26-27.

나. 관세율표와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의 구성

HS협약 제3조의 3항에는 “체약국은 HS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세분류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 협약은 자국의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 체계에 일치시켜 사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S 협약 가입국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하는 경우 HS의 6단위 분류코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즉, HS 품목분류의 6단위 코드는 국제공통단위가 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서 HS 4단위 기준과 일치하도록 항목(세목)을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및 잠정세율을 표기하고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4단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6단위로 분류된 HS 품목분류 중 소호(5, 6단위)와 소호 주가 생략되어 있으며 소호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HS의 통칙6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소호와 통칙6을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85년 6월에 브뤼셀에서 국회비준¹⁶⁾ 조건부로 HS 협약에 가입 서명한 후 1987년 7월 1일에 재무부고시 제87-12호로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¹⁷⁾를 공표하였다. 이 관세·통합품목분류표에서 6단위까지는 HS 체계에 일치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하고 있다. 즉, HS 협약 발효(1988년 1월 1일) 이전에 공표한 HSK에서 HS 협약상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소호의 분류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소호, 소호 주 및 통칙6을 생략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¹⁸⁾

16) HS 협약 비준 동의안은 1987년 제137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때 HS 관세율표(안)도 동시에 통과되었다(정용화·홍영선, p. 27).

17) 이것을 약칭하여 품목분류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18) HS 협약 제3조(체약국의 의무)에서 “관세·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체약국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HS 품목표의 소호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 4단위 기준으로 분류된 관세율표 만으로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정확한 통계과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세율표로서 관리할 수 없는 탄력관세의 적용,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의 관세부분과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적용, 무역통계 작성 등과 같은 무역정책 분야에 HSK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도 체계적인 품목분류를 위한 일반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iff Schedule)을 두고 있다. 관세율표 통칙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칙1부터 통칙5까지는 HS 품목표 통칙과 동일하고 통칙6은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국내 추가 통칙 6호와 7호를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의 구조를 비교하면 <표 2-8>과 같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HS 품목분류표는 부로 대분류 한 다음 6단위까지 류, (절), 호, 소호로 세분류하고 있으며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및 통칙을 두고 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부로 대분류 한 다음 4단위까지 류, (절), 호로 소분류하고 있으며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및 통칙을 두고 있다. HSK는 6단위까지는 HS 품목분류 구조와 동일하며,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절하도록 세세분류하고 있다. 7단위 이하의 코드를 통계부호 혹은 부호라고 한다.

표 2-8. HS,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의 구조 비교

	품목번호						주		
	대분류	중분류 (2단위)	절	소분류 (2단위)	세분류 (2단위)	세세분류 (4단위)	부의 주	류의 주	소호 주
	부	류		호	소호	통계 부호			
HS	○	○	○	○	○	×	○	○	○
별표 관세율표	○	○	○	○	×	×	○	○	×
HSK	○	○	○	○	○	○	○	○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HSK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0101을 예를 들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품명에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로 나타낼 뿐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HSK에는 품목번호 0101의 품명을 “말·당나귀·노새와 버새”라고 명시하고, 그것을 소호 11(종마), 19(기타), 20(당나귀·노새와 버새)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호 19(기타)를 다시 통계부호 1000(경주말), 9000(기타)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한편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의 구성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부의 제8류에

분류되어 있는 신선한 배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표 2-9>에는 상단에 류의 표제와 류의 수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품목번호는 중분류의 류와 소분류의 호를 의미하는 4단위의 코드번호(0808) 아래에 세분류 단위를 의미하는 2단위의 소호 번호(20)가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080820)는 HS 품목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선한 배 및 마르멜로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이것을 국내사정에 따라 7단위부터 10단위까지의 부호를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배(0808201000)와 마르멜로(0808202000)로 세분류하고 있다.

표 2-9.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의 구성 예(신선한 배의 경우)

품목번호		품명	세율			단위	Description	참조 (부·류주)
류, 호, 소호	부호		기본 (잠정)	양허관세 (WTO, 기타)	한·칠레 FTA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	50%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제8류주2
10	0000	사과		45.0%		kg	Apples	
20		배 및 마르멜로				kg	Pears and quinces	
	1000	배		45.0%			Pears	
	2000	마르멜로		45.0%			Quinces	

주: 1. 2. 3.(가),(나) Notes. 1. 2. 3.(a),(b)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율표」, 2004. 12. 29.

다. HSK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통계부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는 HS 품목분류표의 국제공통단위 품목을 얼마나 세분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소호 수와 통계부호 수를 대비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6단위 소호 수는 국제공통 품목 수이며 통계부호는 국내에서 분류한 품목 수이기 때문이다.

HSK에서 분류한 전체 품목 수(통계부호 수)는 11,167개이며 전체 소호 수는 5,230개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공통 품목 1개당 평균 2.1개의 품목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농·수·임산물의 경우 국제공통 품목 1개당 2.3개로 세분하고 있는 반면 비농·수·임산물의 그것은 2.1개인 것으로 나타나 농·수·임산물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세분화되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수·임산물 내에서는 제4부(조제식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

배대용물)의 국제공통품목 1개당 통계부호 수가 평균 2.6개로서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HSK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추정 결과

		소호 수 (개, A)	통계부호 수 (개, B)	소호당 통계부호 수 (B/A)
농·수·임산물	제 1 부	219	525	2.4
	제 2 부	265	575	2.2
	제 3 부	46	98	2.1
	제 4 부	195	504	2.6
	소 계	725	1,702	2.3
비농·수·임산물		4,505	9,465	2.1
합 계		5,230	11,167	2.1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2004. 12. 29.)」로부터 집계하여 산출한 것임.

6. 농산물 품목분류체계 수정의 제도적 근거

가.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품목분류체계는 경제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그 상품의 품목번호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술개발로 인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된다면 별도의 품목분류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품목분류의 수정 대상, 수정 사유 및 수정 주체는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 등)의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표 2-11>. 품목분류의 수정 대상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가 포함된다(관세법 제84조). 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외에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수정 사유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WCO)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변경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품목분류표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¹⁹⁾. 즉, 세율 변경이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정 주체가 되며,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하게 된다.

수정 사유 중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HS협약 제16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표 2-11. 품목분류 수정의 제도적 근거

	내 용	법 조항
수정 사유	① HS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4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수정 대상	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②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	관세법 제84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수정 주체	재정경제부 장관(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반영 의무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HS 협약이 정한 기한 내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해야 함.	HS 협약 제16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법령집」, 2005.

19) 세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절차를 거친 다음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한다. 세율은 입법사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변경

만일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고시해야 한다.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1항²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능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변경토록 할 수도 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다.

20)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각 국은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세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이한 관세 구조를 나타낸다. 관세의 형태 측면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용되고 있으며 각 국마다 다양한 특혜 세율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산업부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진관세나 역관세가 채택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의약품, 건설장비, 철강, 가구, 농기계 등 투입재에 대해서는 무관세(zero-for-zero)를 적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WTO 체제 아래에서 많은 나라들은 양허관세율(bind rates)을 낮추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양허관세율이 실제로 적용하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보다 높지만, WTO 체제에서 양허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는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에 농산물은 쿼터와 변동 부과금(variable levies) 등의 국경조치가 관세로 전환되는 이른바 관세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교역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새로운 최소한의 교역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TRQ는 정해진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쿼터 내 또는 할당 내 관세율: in-quota rates)을 적용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쿼터 초과 또는 할당 초과 관세율: out-of-quota rates)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쿼터 초과 관세율과 많은 쿼터 내 관세율이 종량세의 형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1. 한국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1980년대 이후에 차등관세율제도에서 균등관세율제도로 이행하였다는 점과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높은 관세율을 통한 산업보호를 축소하고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를 줄여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 관세율 인하시제를 통해 균등관세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중심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평균관세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누진적 체계를 가지는 차등관세제도에 따른 특정산업 보호효과를 없애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자생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킨다는 취지로 균등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관세율의 급격한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세율을 중심세율 위주로

책정하여 중심세율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한편, 중심세율 자체를 연차적으로 2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관세율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비경쟁 원자재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과보호되었던 투입재와 생산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재에 대한 높은 보호세율도 인하하여 내수 위주의 산업보호를 완화하였다.

관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며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 및 제43조 8의 제3항에서는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할 관세의 종류와 순서를 명시하고 있다. 관세의 적용 순서를 종합해 보면 먼저 1순위에는 관세법 제10조의 덤핑방지관세, 제11조의 보복관세, 제12조의 긴급관세, 제12조의 3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그리고 제13조에 규정된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들로 구성된다.

2순위에 속하는 관세는 제14조의 편익관세와 제43조의 8에 규정된 국제협력관세가 있다. 특히 국제협력관세 가운데 WTO 양허관세 규정에 의한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포함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와 “일반양허관세”,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가입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도 2순위에 속한다. 국제협력관세는 3순위와 5순위 그리고 6순위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입회원국만을 상대로 적용된다.

3순위에는 제12조의 2에 따른 조정관세와 제15조의 물가평형관세, 그리고 제15조의 2에 의한 계절관세와 제16조에 규정된 할당관세가 포함된다. 4순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서 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별표 3의 다 “녹차의 일반양허관세”가 여기에 포함된다. 5순위는 제7조에 의한 잠정관세로서 농림축산물 가운데 밀과 메슬린, 사료용 및 팝콘용 옥수수, 대두, 유채, 그리고 콩깻묵 등이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순위는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제1차(1984~88)와 2차(1989~93) 관세율 인하여시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수입품 전체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983년 23.7%에서 1988년에는 18.1%로 하락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8%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1983년 31.4%에서 1988년 25.2%로 인하되었다. 또한 중심세율 위주의 균등관세율체계를 도입하여 산업간 차등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 중심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원자

재에는 1~3%, 1차 가공품에는 5%의 낮은 관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두 차례 관세 인하 결과 농가 소득작물과 그 대체품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만성적 할당관세 및 잠정세율 품목 등 278개 농축산물 품목은 1988년의 관세수준이 유지되었다. 농업 투입재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그리고 사치성 식품 등 1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그러나 국내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대두유, 후추, 설탕 등 가공식품의 관세는 1988년 20%에서 1993년 8%로 인하하고, 초콜릿도 30%에서 8%로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관세가 높은 원료농산물과 중심세율을 적용받는 가공식품간에 역관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 8%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들이다. 특히 축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곡물과 박류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자류는 대부분 0%, 공업용 원료인 양모, 면, 원피, 당류, 코코아두 등은 3%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도 과수묘목, 구근류, 종마 등 농업용 자재와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육류(냉장 돈육 제외), 채소(고추, 마늘, 양파 제외) 및 채두류와 그 종자(녹두, 팥 등), 버섯, 열대과실, 은행 등 견과류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3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 등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다. 그 밖에 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냉장돈육, 과일류 및 그 가공품(주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국내 생산이 많거나 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및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균등관세율체계와 관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8%의 중심세율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중간재 성격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낮았기 때문이다.

과자류와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대부분의 품목에 8%의 관세가 책정되었고 참기름과 들기름, 유채유, 낙화생유 등과 같이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당류와 팜유, 코코아 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일부 중간재에는 5% 이하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유가공품, 육가공품, 조제채소 및 과일주스 등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양허관세는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의 일종으로 GATT 양허관세, ESCAP 양허관세,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등이 있다. 협정관세란 일국이 타국과의 조약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여 당해 조약의 유효 기간에 협정된 세율을 변경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적용순서에서 협정세율은 국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다양한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율의 관세율 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관세에는 종가종량선택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본관세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종가종량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이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²¹⁾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6%~946.6%이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실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볼 수 있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사료와 가공용 곡물은 낮은 관세율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

21)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실주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2. 일본

일본은 관세법과 관세 정률법을 근간으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이 적용하는 관세율 종류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기본세율로 관세 정률법이 정한 세율로서 관세행정에서 기본이 되며, 장기간 적용된다. 둘째, 잠정세율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정한 세율로 단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셋째, 협정세율로 WTO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말한다. 단 협정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끝으로 특혜세율은 개도국이나 개도국 지역이 원산지인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혜세율의 수준은 보통 선진국 물품에 징수하는 세율보다 낮다. 특혜세율은 잠정관세조치법(TTML) 제8조 2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 순서이다. 관세율표는 1988년부터 일본,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HS 조약' 또는 '상품의 명칭 및 분류를 통일하는 국제조약'에 기초한다. 이 조약의 부속서인 'HS 품목표'는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관세 평가제도 하의 과세가격은 도매가격에 운반비와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이 된다.

특혜관세 제도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이 속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득 증대, 공업화 촉진,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보통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다.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목록(positive list)' 방식에 따라 73개 품목(HS 4단위 기준)을 선정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실행세율보다 10~100% 인하된 수준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세율 공여는 면책조항(escape clause)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특정 시기에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해 일본의 국내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에는 특혜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관세율을 설정해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관세청 2000). 첫째, 종가세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의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가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 격차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품목들이다. 일본의 실행 세율표에 따르면 종가세 적용대상 품목의 비중은 88%이다. 둘째,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과 수입가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종량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셋째,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으로 선택세와 복합세로 나뉜다. 선택세는 같은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해 이 가운데 보통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차액관세는 수입 품목의 가격과 정해진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을 세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섯째, 슬라이드(slide) 관세는 국제시황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큰 품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등 과실류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낙농제품, 쌀과 기타 곡물, 채소 및 서류, 생사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비슷한 지방 함유율의 제품이라도 급식용, 사료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쿼터가 적용된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0~35% 정도의 종가세 형태로 결정되며, 여기에다가 kg당 400~1,200엔 정도의 종량세를 더해 쿼터 초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쌀의 제외한 곡물과 채소의 경우 0~40% 정도의 쿼터 내 관세율을 적용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곡물의 경우 kg당 50~120엔, 채소의 경우 350엔이 부과된다. 생사, 땅콩, 서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7.5~40%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kg 당 600~7,000엔이다.

쌀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되면서 수입물량 제한이 사라졌다. 적용 관세율은 톤당 1999년에 351,170엔(2,922 달러), 2000년에 341,000엔(2,837달러)으로 정해졌다. OECD와 WTO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ad valorem equivalents: AVEs)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낙농제품의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각각 250%와 476%이며, 곡류와 채소의 경우 각각 248%와 490%로 나타났다.

3. 미국

미국 관세제도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Tariff Act)’ 제402조와 1979년 ‘무역 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제2장에 근거한다. 관세체제는 1989년에 공식 채택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에 따라 분류되고 여기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분류 가운데 앞의 6단위 숫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나머지 세항 분류는 이전에 사용하던 관세율표(TUSA)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표는 부문(section)과 장(chapter)으로 나뉜다. 부문은 동물, 식물, 기초재료, 화학물질, 기계, 전자제품, 기타로 물품을 구분하고, 장은 부문에서 분류

한 제품을 종류와 제조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세율을 제시한다.

관세 평가제도 아래 과세가격(관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과세가격은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출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기초하며, 이는 GATT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평가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운임과 보험료가 관세 부과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수입품목은 종가세 대상이다.²²⁾ 종가세율의 범위는 보통 2~7% 수준이며 평균 관세율은 4%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가공단계가 낮은 품목의 경우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특혜관세는 모든 WTO 회원국과 대부분의 나라에 공여된다. 무역 대상국이 MFN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따라 국민의 이주권 인정, 미국과 양자 통상협정 체결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개도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호혜적이지 않은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는 중미와 카리브 연안의 24개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 체결한 무역협정(NAFTA, US-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협정)의 대상국에 대해서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제조한 원료를 사용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에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HTS 9802로서 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에서 더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6년 기준으로 총 수입품의 8.5%는 이 규정에 의해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5%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평균 쿼터 내 관세율은 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모든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인 4%보다는 높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로 적용된다. UR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과 최종 양허세율의 격차가 15%로 설정됐으나 이 감소 폭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설탕제품 그룹의 경우에 관세율이 설탕 함유량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세율의 종가세 부분만 감축되게 된다.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29%이지만 견과와 땅콩 및 땅콩버터의 관세율은 각각 150%와 135%에 이른다. 산출된 세계가격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설탕뿐이다.

22) <http://usinfo.state.gov/journals/ites/0697/ijee/ej7f&f.htm#remedy>

4.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관세제도는 1958년에 6개 회원국이 시작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모태로 발전해 왔다. 역내 회원국 사이의 물품이동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제3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 CCT)를 적용한다.²³⁾ CCT는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관세율은 수입품의 특성이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통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나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의 원료 및 반가공 수입품에 대해서는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세 부과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체제는 국제관세기구(WCO)가 관장하는 HS(Harmonized System)에 기초해 운용된다. 관세의 종류는 표준관세와 양허관세가 있다.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혜관세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카리브해안 국가들, 태평양군도 국가들(ACP 국가)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특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한편 양허관세는 WTO 협정에 의해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WTO 틀에서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협정 등의 수단으로 개별국 또는 국가 그룹과 특혜협정을 맺고 있다.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EEA에 포함되지 않은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역내 경제권의 확대를 대비해 유럽연합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앙 및 동구권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상호 관세양허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특혜관세도 있다. Lomé 협정의 당사국인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태평양 연안국들(ACP)에서 수입되는 모든 산업재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과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공여한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특혜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아래 유럽연합은 GSP 대상국의 제조품과 가공 농산물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농산물에 대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를 설정해 적용한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0%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종량세 가운데 최저 관세율 대상 품목은 곡물 잔류물(residue)로 톤당 30 ECU이고 최대 관세율 적용 품목은 치즈로 톤당 1,000 ECU이다. 일부 품목(HS 100590, 100700)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이행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아 관계기관 자의로 쿼터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

23) http://europa.eu.int/comm/dg10/publications/brochures/move/douane/customs/txt_en.html

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증가세로 환산된) 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쿼터 내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냉동 돼지 허릿살고기와 햄(HS 02032957)의 경우 일부국에서 수입되는 34,000톤에는 톤당 250 ECU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톤당 434 ECU가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81개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평균 관세율(증가세로 환산된)은 45% 정도로 모든 관세대상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 수준인 7.2%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 적용 품목의 관세가 높은 품목은 육류(HS 02, 80%), 잔류물(HS 23, 67%) 등이고 낙농제품과 지방 및 기름(HS 15)도 평균 수준 이상을 나타낸다. 산출한 세계 평균가격 수준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보리, 설탕, 쇠고기 등이다.

5. 중국

관세청(CGA)이 관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17%의 부가가치세도 징수한다. 관세의 종류는 현재 일반관세와 최소관세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관행에 따라 국가 그룹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ASEAN 개도국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관세평가는 2002년에 수출입관세법을 개정해 이전의 최소가격 방식에서 WTO 협정이 제시하는 거래가격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소가격 방식은 신고된 수입가격을 관세최소가격 데이터베이스 상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관세 평가방식은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관세 평가방식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용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율을 감축하고 있다.²⁴⁾ 가입 첫해인 2002년에 관세품목의 73%에 해당하는 5,300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관세율 평균이 12%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2002년에 15.8%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할 때에 40~60%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약속했다(Carter and Rozelle 2002).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곡물, 면화, 식용유, 양모,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 TRQ로 양허했다. TRQ 품목의 쿼

24)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01/07/eng20020107_88176.shtml

터 내 관세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국의 농산물 양허관세는 평균 38%로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양허세율은 40%이며, 최고 세율은 135%이다. 농산물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품목이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은 37개로 전체의 4%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곡물, 곡물 가공품, 식용유, 주류, 담배 등이다. 중국은 농산물 과 관련하여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서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하여 관세할당(TRQ) 물량을 설정하였다. 관세할당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정하고, 국영기업이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별 TRQ 물량은 다음과 같다. ① 밀: 730만톤(2000년)에서 960만톤으로 확대(2005년), ② 쌀: 266만톤에서 532만톤으로 확대, ③ 옥수수: 450만톤에서 720만톤으로 확대, ④ 대두유: 170만톤에서 730만톤으로 확대하였다.

TRQ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점차 시장기능이 강화된다. ① 밀은 국영무역 비율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0% 수준 유지, ② 옥수수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75%에서 2004년 60%로 축소, ③ 쌀은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 수준 유지, ④ 대두유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50%에서 2004년 10%로 축소하였다.

6. 멕시코

멕시코는 모든 나라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 5월 현재 MFN 관세율에 포함된 세번수는 모두 11,387개이다. 단순평균 실행 MFN 관세율은 16.5%이다. 설탕이 포함된 일부 제품을 뺀 모든 품목에는 종가세 관세율이 적용된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은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적용되는데, 종량세의 수준은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톤당 395.86 달러이다.

종량세 대상 품목수는 설탕, 설탕 함유율이 90% 이상인 코코아, 시럽 등 10개이다. 그리고 혼합세 대상은 응축 우유, 과일, 과일주스, 조리된 식품 등 45개 품목이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 계산기준은 CIF 가격에서 보험조건을 제외한 C&F 가격이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보다 낮을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소비재와 원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비재와 식품류의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다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국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신발류,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이상 또는 고관세의 형태를 나타낸다.

UR 이후 단순 평균 양허관세율은 36%이며 농산물이 43%, 산업재가 35% 정도이다. 평균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 수준보다 크게 낮아 전체의 경우 17%이고, 농산물의 관세율은 25%이다.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있어 대상국과 관세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코스타리카('94), 볼리비아('94), NAFTA('94),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95), 칠레, 우루과이 등이며 협정 체결국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 이외에도 멕시코는 통관절차(customs processing)의 방편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0.8%의 부과금을 매긴다. NAFTA 회원국과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2003년부터 적용)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부과금이 면제된다.

TRQ 제도 아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총 221개 품목에 설정된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50개 품목에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22%는 종량세 형태인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41%로 쿼터 내 관세율의 49%보다도 낮은데, 이는 종가세율만 평균치 산출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이다.

46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된다. 이 방식은 밀, 보리, 설탕,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많은 주요 식품에 적용되는데 보통 관세율 수준이 높으며 최소 관세율이 100% 이상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돼지기름의 경우 최소 관세율이 254%로 가장 높게 설정돼 있다. 쿼터 내 관세율은 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분유의 경우 쿼터 내 물량에 대해 관세율은 0%이다. 쿼터 내 물량은 100% 충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에 배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를 캐나다가 차지한다.

7. 호주

호주의 관세율 체계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일반 관세는 1999년 현재 5% 수준이다. 특혜관세는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에 적용하는 것과 개도국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로 구성된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분류 방식이다. 관세 평가는 GATT 제7장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FOB 가격이므로 CIF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²⁵⁾

관세는 호주의 중요한 무역정책 수단이지만,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낮으며 관세율도 낮다(WTO 2002). 실행 MFN 관세율은 현재 4.3%이고 2005년까지 계속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4.7%인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1.2%로 다른 나라와 달리 농산물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다. 약 86%의 관세율이 0~5%이다. 양허 MFN 관세율의 평균은 10.5%로 실행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25) 우리나라의 경우 CIF 가격에 기초한다.

이를 상한으로 유연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99% 이상의 관세율이 종가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관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세는 모두 10개의 세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관세 부과 방식은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등이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누진관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TRQ는 5개 치즈 품목과 가공되지 않은 담배에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TRQ 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농산물에 대해 가장 낮은 평균 TRQ 관세율을 설정한 나라이다. TRQ가 적용되는 세번수는 9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치즈와 치즈 관련 품목이고 그 나머지는 담배와 켈런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27%이고 쿼터 내 관세율은 7%이다. 치즈에 대한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인 반면 담배의 경우에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쿼터 내 관세는 모두 종량세이다.

8. 캐나다

캐나다 관세제도의 주요 근거 법령은 관세법과 관세율법이다. 관세법(Customs Act)은 통관과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출입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규정의 집행방식 등을 규정한다. 관세율법(Customs Tariff)은 관세 부과와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이다. 관세율의 기본 구조는 일반특혜관세(GPT)와 최혜국관세(MFN), 특별관세 등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저율의 일반 특혜관세의 수혜 대상이 되며 이 밖의 품목은 최혜국관세가 적용된다.²⁶⁾ 일반특혜관세는 최혜국 관세율의 1/2 수준이며,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다. 특별관세는 영연방국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관세부과 상품분류는 HS 분류 방식에 기초하며,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 형태의 관세가 주로 부과된다.

캐나다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구조를 가지며 관세율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종가세 관세율의 단순 평균은 7.5%이고 표준편차는 26.6%이다. 그러나 섬유, 신발,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관련 제품 등의 관세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과 식품, 음료와 담배의 1/4~1/3 정도가 종량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누진관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의 경우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관세율은 각각 1.1%, 9.3%, 15.4%이다. 전체 품목에서 15% 이상의 고관세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이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매우

26) 일반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GPT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수혜국에서 직접 캐나다로 선적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덧붙여야 한다.

높은 실정이다.

TRQ 제도 아래 쿼터 내 관세율은 대부분 종가세로 0~9%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도 주로 종가세이나, 최소 관세율이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세번수 가운데 37%가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를 띠는데, 특히 시리얼과 맥아 등 조리된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200~300%로 높게 설정된 품목은 가금육(HS 01, HS 16)과 낙농제품(HS 04, HS 18, HS 19, HS 21) 등이다. 종가세 기준으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우유와 크림으로 293%이며, 가장 낮은 품목은 쇠고기로 27%이다. 이에 따라 탈지 및 전지분유와 버터 등 낙농제품은 세계가격보다 2.5배 정도 되는 관세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반면에 밀, 보리, 쇠고기 등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세계가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9. 태국

태국의 관세는 크게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특혜관세는 GATT 협정세율, GSTP, 태국-라오스 사이의 협정세율, ASEAN 국가와 협정세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부과 형태로는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 분류는 HS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관세 평가 방식은 실거래가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 CIF 가격에 기초한다. 그러나 부당한 가격조작과 세수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거 일정 기간에 수입된 동종 동질 품목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태국은 1990년 이후 본격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3,908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율구조를 39개에서 6단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세율은 0%, 1%, 5%, 10%, 20%, 30% 등 6단계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아직까지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는 1,498개 정도이다. 양허세율이 15% 이상인 세번수는 4,512개에 달하여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태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율은 35% 정도이다.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생사 226%, 분유 216%, 식물성 기름과 케이크 133~143%, 양파 142%, 종자 125%, 생사 94%, 커피와 차 90%, 콩 80%, 담배 72% 등이다. TRQ는 총 농산물의 7%에 해당하는 55개 품목에 대해 설정돼 있으며,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93% 정도이다.

제4장 품목분류의 국제비교

제1절 분석대상국 및 분석방법

분석 대상 국가는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와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국가는 북미지역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지역의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며, 단일 관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EU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모두 37개 국가이다.

관세율 자료는 2004년 국별 관세율표를 이용하였다. WTO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관세율표는 HS 6단위 또는 8단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별 관세율표를 입수하여 국가별로 그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를 엑셀에 입력한 것을 이용하였다. 국제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이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이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HS 10단위 수준의 관세율표가 이용되었다. 분석은 국가별로 입력된 자료를 엑셀에 의해 제표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균, 분포, 품목 수, 관세율 적용 방법 등을 계산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절 분석결과(평균관세율)

평균 관세율의 분석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관세율은 분석 대상 국가들의 HS 2단위 품목이다. 미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46%이고, 육류(2류), 낙농품(4류), 채소(07류) 및 과일(8류)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7.21%, 12.36%, 9.69% 및 5.45%이다.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수는 2,476개이고 평균 관세율은 4.21%이다. 농산물 유별로 보면 육류는 7.69%, 낙농품 6.04%, 곡물 11.32% 그리고 육류 조제품 14.62%이다. 멕시코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25.15%이고, 육류, 낙농품, 채소, 과일 및 곡물의 유별 평균 관세율은 각각 79.7%, 38.84, 21.8%, 22.46% 및 49.65%를 나타낸다. MERCOSUR(남미 공동시장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포함)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0.45%이다. 육류와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은 9.89%, 14.75%이고, 채소, 과일 및 곡물의 관세율은 9.01%, 9.94%, 그리고 8.24%이다.

EU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8.0%이다.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각각 5.15%, 5.34%이고, 채소와 과일의 관세율은 8.93%, 6.85%이다. 그리고 곡물 전분 및 밀가루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11.75%이다. 인도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43.49%로 분석 대상국가 중 한국, 태국 다음으로 높다. 인도의 농산물 품목군별에서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32.84%, 35.19%이고, 채소, 과일 및 곡물의 관세율은 31.43%, 38.75, 53.32%이다. 그리고 커피 및 향신료의 평균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64.46%이다.

일본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0.68%이고,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각각 10.85%, 24.23%를 나타낸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의 관세율은 6.08%, 7.07%로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낮다. 중국의 농산물 품목수는 1,766개이고 전체 평균 관세율은 15.19%이다. 유별에서 육류와 낙농품은 18.89%, 15.67%, 채소와 과일은 각각 11.74%, 18.03%이다.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군으로 곡물과 옥수수 및 전분은 33.6%와 27.11%로 나타난다. 태국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44.5%로 분석대상 국가중 한국 다음으로 높으며, 육류와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은 60%, 35.8%이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60%의 관세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율은 분석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55%이다. 품목군별에서 육류와 낙농품의 관세율은 22.37%, 61.79%이고, 채소와 과일은 116.7%, 62.68%이다. 그리고 곡물, 옥수수 및 전분, 유지작물의 평균 관세율은 215.8%, 311.77%, 113.79%로 유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 국별 평균 관세율

단위: %

국별	평균 관세율	국별	평균 관세율
미국	13.46	인도	43.49
캐나다	4.21	일본	10.68
멕시코	25.12	중국	15.19
MERCOSUR	10.45	태국	44.5
EU	8.0	한국	55.0

제3절 국가별 분석결과

1. 미국

미국의 농산물 품목 수는 2,689개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125개 품목), 4류(낙농품, 264개 품목), 7류(채소, 232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150개 품목), 12류(채유용 종자 등, 144개 품목), 16류(육·어류 조제품, 157개 품목), 20류(채소·과실 조제품, 257개 품목), 21류(기타

조제식료품, 114개 품목), 22류(음료 등, 100개 품목), 24류(연초 및 담배, 187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식물 생산품, 산수목, 커피 및 향신료, 곡물,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7.21%), 낙농품(12.36%), 채소류(9.69%), 유지작물(7.11%), 당류·설탕과자(6.17%), 담배(170.27%) 등이다.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군은 산동물, 기타 동식물 생산품, 커피 및 향신료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과실조제품 그리고 관세율이 높은 담배, 곡물조제품, 당류, 낙농품 등이 미국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류, 낙농품 등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 분류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 체	2,689	13.46	18류	83	5.65
01류	57	0.65	19류	96	6.82
02류	125	7.21	20류	257	10.70
04류	264	12.36	21류	114	6.93
05류	37	0.54	22류	100	1.13
06류	49	3.63	23류	60	1.74
07류	232	9.69	24류	187	170.27
08류	150	5.45	29류	2	4.75
09류	54	0.62	33류	40	220.69
10류	59	1.96	35류	22	22.50
11류	48	3.80	38류	2	4.90
12류	144	7.11	41류	46	1.46
13류	24	0.59	43류	18	0.28
14류	15	0.92	50류	4	0.63
15류	94	5.00	51류	45	0.29
16류	157	4.47	52류	22	1.69
17류	76	6.17	53류	6	0.76

자료: U.S.A.,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으로 세분하여 볼 때, 품목 수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육류 중에는 쇠고기(HS 0201, 0202)로 42개 품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HS 0203)가 14개 품목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세분화된 분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류 가운데 HS 0406(치즈)는 156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13(건조 채두류)은 51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65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35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51개 품목과 17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7개 품목과 19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일),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53개 품목, 87개 품목, 49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2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는 품목은 HS 1202(땅콩류, 147.8%), 2401, 2403(담배류, 135.48, 350%) 등이다. 그밖에 육류, 낙농품, 양파, 양배추, 열대과일(HS 0804) 등의 평균 관세율이 높다.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복합세 등의 적용으로 평균 관세율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많은 것도 미국 관세제도의 특징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관세에 의한 시장보호 장벽이 높을 경우가 많다.

표 4-3.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7	1.61	0602	14	2.18	0908	4	0.00
0102	21	0.00	0603	16	6.13	0909	5	0.00
0103	6	0.00	0604	7	1.00	0910	13	1.27
0104	2	0.00	0701	7	-	1001	25	2.80
0105	8	-	0702	14	-	1002	3	0.00
0106	13	0.78	0703	7	20.00	1003	3	-
0201	22	15.31	0704	7	13.17	1004	3	0.00
0202	20	13.47	0705	6	-	1005	5	0.00
0203	14	0.00	0706	7	5.90	1006	13	11.20
0204	19	0.00	0707	8	-	1007	2	-
0205	1	0.00	0708	10	0.00	1008	5	0.73
0206	9	0.00	0709	26	13.23	1101	4	-
0207	19	10.00	0710	36	11.26	1102	6	7.27
0208	8	4.57	0711	12	6.03	1103	9	3.00
0209	1	3.20	0712	26	9.54	1104	8	2.23
0210	12	1.92	0713	51	0.00	1105	2	-
0401	9	-	0714	15	7.93	1106	5	5.80
0402	30	17.50	0801	7	0.00	1107	2	-
0403	25	19.00	0802	18	0.00	1108	10	0.65
0404	14	12.00	0803	4	0.35	1109	2	4.30
0405	17	9.49	0804	17	29.80	1201	3	0.00
0406	156	12.11	0805	11	0.80	1202	12	147.80
0407	3	-	0806	8	0.00	1203	1	0.00
0408	4	-	0807	11	12.85	1204	3	-
0409	5	-	0808	4	0.00	1205	6	-
0410	1	1.10	0809	8	0.00	1206	6	0.00
0501	1	1.40	0810	16	0.37	1207	10	0.00
0502	2	0.00	0811	21	7.87	1208	2	1.65
0503	1	0.00	0812	7	11.20	1209	65	0.00
0504	3	0.00	0813	15	9.59	1210	3	-
0505	7	0.66	0814	3	0.00	1211	15	0.69
0506	3	0.00	0901	9	0.00	1212	7	0.00
0507	3	0.00	0902	7	1.83	1213	1	0.00
0508	1	0.00	0903	1	0.00	1214	10	0.70
0509	1	3.00	0904	11	0.00	1301	9	0.14
0510	4	1.28	0905	1	0.00	1302	15	0.87
0511	11	0.50	0906	2	0.00	1401	6	1.60
0601	12	3.08	0907	1	0.00	1402	2	0.00

자료: U.S.A., Customs Tariff, 2004.

표 4-3. 미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3	1.15	1901	51	11.65	2401	137	135.48
1404	4	0.00	1902	17	3.39	2402	8	-
1501	4	-	1903	2	0.00	2403	42	350.00
1502	3	-	1904	7	9.24	2905	2	4.75
1503	1	-	1905	19	0.71	3301	40	0.69
1504	7	0.83	2001	14	8.56	3501	4	3.00
1505	2	2.40	2002	8	11.83	3502	4	0.00
1506	1	2.30	2003	9	0.00	3503	6	-
1507	4	14.33	2004	9	8.80	3504	2	4.50
1508	2	-	2005	53	7.30	3505	6	-
1509	4	-	2006	7	8.90	3506	-	-
1510	3	0.00	2007	21	5.54	3809	1	-
1511	2	0.00	2008	87	15.12	3824	1	4.00
1512	7	-	2009	49	0.00	4101	25	1.87
1513	4	0.00	2101	24	5.71	4102	10	0.40
1514	10	4.80	2102	5	3.20	4103	11	1.47
1515	12	2.10	2103	17	5.92	4301	18	0.28
1516	3	7.70	2104	4	3.03	5001	1	0.00
1517	16	13.00	2105	7	19.40	5002	1	0.00
1518	2	8.00	2106	57	7.20	5003	2	1.25
1520	1	0.00	2201	2	0.00	5101	34	0.00
1521	5	0.96	2202	13	17.33	5102	8	0.20
1522	1	3.80	2203	3	0.00	5103	3	7.00
1601	7	3.28	2204	24	-	5104	-	-
1602	35	4.13	2205	5	-	5201	12	1.40
1603	3	2.83	2206	5	-	5202	6	0.72
1604	64	6.44	2207	3	2.20	5203	4	4.77
1605	48	2.29	2208	44	0.00	5301	4	1.27
1701	22	5.82	2209	1	-	5302	2	0.00
1702	36	5.49	2301	3	0.00			
1703	4	-	2302	8	0.18			
1704	14	7.68	2303	6	0.70			
1801	1	0.00	2304	1	-			
1802	1	0.00	2305	1	-			
1803	2	0.00	2306	10	-			
1804	1	0.00	2307	1	0.00			
1805	1	-	2308	5	1.22			
1806	77	6.15	2309	25	3.08			

자료: U.S.A., Customs Tariff, 2004.

2. 캐나다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 수는 2,476개로 우리나라보다 1.7배 정도 많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187개 품목), 4류(낙농품, 129개 품목), 7류(채소, 198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143품목), 12류(채유용 종자 등, 118품목), 16류(육·어류 조제품, 135개 품목), 19류(곡물 조제품, 255개 품목), 20류(채소·과실 조제품, 229개 품목), 22류(음료 등, 145개 품목)등이다. 반면 동식물 생산품, 산수목, 커피 및 향신료, 곡물,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7.69%), 낙농품(6.04%), 곡물(11.32%), 육류 조제품(14.62%), 담배(7.14%) 등이다.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군은 산동물, 기타 동식물 생산품, 커피 및 향신료 등이다. 품목 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과실조제품 그리고 담배, 곡물조제품, 당류, 낙농품 등이 캐나다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캐나다는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류, 낙농품, 곡물 등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 분류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 체	2,476	4.21	18류	27	4.48
01류	53	0.52	19류	255	4.05
02류	187	7.69	20류	229	5.27
04류	129	6.04	21류	82	6.41
05류	40	0.00	22류	145	4.70
06류	80	2.20	23류	124	1.49
07류	198	2.02	24류	28	7.14
08류	143	0.69	29류	2	2.75
09류	56	0.87	33류	19	0.47
10류	49	11.32	35류	44	4.15
11류	74	3.13	38류	2	2.75
12류	118	0.43	41류	24	0.00
13류	16	0.00	43류	16	0.00
14류	11	0.00	50류	4	0.00
15류	96	5.01	51류	11	0.00
16류	135	14.62	52류	9	0.56
17류	64	5.75	53류	6	0.00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캐나다의 품목분류가 많은 품목으로 육류중에 쇠고기(HS 0201, 0202)는 76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돼지고기(HS0203)는 1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육류 중에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48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은 61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36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은 각각 30개, 39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가 각각 22개, 20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이 가장 많은 1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15개, 16개 및 1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파종용 종자, 58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54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60개 품목과 65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48개 품목과 81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일), 2009(과실쥬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33개 품목, 59개 품목, 79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2309)은 82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비종가세 부과 품목이 적어 대부분의 품목군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산출할 수 있다.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밀, 보리, 소시지, 조제 가금육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육류, 낙농품, 냉동채소, 감자분 등의 관세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낮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많은 품목에 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 4-5.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6	0.00	0602	36	0.67	0908	6	1.50
0102	4	0.00	0603	10	7.55	0909	10	1.50
0103	3	0.00	0604	8	2.00	0910	13	1.00
0104	5	0.00	0701	2	-	1001	9	65.50
0105	20	2.69	0702	10	0.00	1002	2	0.00
0106	15	0.00	0703	12	0.00	1003	5	45.50
0201	36	13.25	0704	15	0.00	1004	2	0.00
0202	40	13.25	0705	10	0.00	1005	9	0.00
0203	11	0.00	0706	18	0.00	1006	12	0.00
0204	13	0.50	0707	4	0.00	1007	1	0.00
0205	1	0.00	0708	10	0.00	1008	9	0.00
0206	9	0.00	0709	30	0.00	1101	1	-
0207	48	5.65	0710	18	9.00	1102	7	3.20
0208	7	0.00	0711	7	4.93	1103	15	1.36
0209	6	11.00	0712	12	4.00	1104	16	3.95
0210	16	0.25	0713	39	0.60	1105	2	9.50
0401	6	7.50	0714	11	2.59	1106	6	1.20
0402	14	6.50	0801	5	0.00	1107	8	0.00
0403	7	7.00	0802	15	0.00	1108	17	4.58
0404	14	8.43	0803	2	0.00	1109	2	7.50
0405	6	7.25	0804	9	0.00	1201	3	0.00
0406	61	-	0805	13	0.00	1202	2	0.00
0407	9	0.00	0806	4	1.50	1203	1	0.00
0408	9	8.50	0807	5	0.00	1204	1	0.00
0409	2	0.00	0808	22	0.42	1205	6	0.00
0410	1	11.00	0809	20	2.30	1206	5	0.00
0501	1	0.00	0810	17	0.00	1207	11	0.00
0502	2	0.00	0811	14	2.92	1208	4	3.00
0503	1	-	0812	7	1.50	1209	58	0.38
0504	4	0.00	0813	8	0.75	1210	3	0.00
0505	5	0.00	0814	2	0.00	1211	12	0.00
0506	4	0.00	0901	6	0.00	1212	6	1.08
0507	2	0.00	0902	9	0.00	1213	2	0.00
0508	3	0.00	0903	1	0.00	1214	4	2.50
0509	1	0.00	0904	6	1.00	1301	3	0.00
0510	3	0.00	0905	1	0.00	1302	13	0.00
0511	14	0.00	0906	2	1.50	1401	3	0.00
0601	26	2.31	0907	2	1.50	1402	1	0.00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표 4-5.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3	0.00	1901	60	5.61	2401	13	6.08
1404	4	0.00	1902	65	3.07	2402	5	9.50
1501	3	0.00	1903	1	0.00	2403	10	7.35
1502	3	2.50	1904	48	4.34	2905	2	2.75
1503	1	7.50	1905	81	3.78	3301	19	0.47
1504	7	3.00	2001	8	3.00	3501	5	0.00
1505	3	0.00	2002	7	11.50	3502	6	7.17
1506	2	7.00	2003	7	14.57	3503	12	4.00
1507	3	4.67	2004	12	9.46	3504	1	6.50
1508	2	7.00	2005	33	6.82	3505	7	3.21
1509	4	0.00	2006	5	6.90	3506	13	5.50
1510	1	0.00	2007	19	7.92	3809	1	0.00
1511	4	4.25	2008	59	4.86	3824	1	5.50
1512	6	7.25	2009	79	2.12	4101	13	0.00
1513	5	6.80	2101	12	0.00	4102	5	0.00
1514	4	8.50	2102	4	4.25	4103	6	0.00
1515	18	5.86	2103	12	10.08	4301	16	0.00
1516	9	8.56	2104	3	7.67	5001	1	0.00
1517	7	7.40	2105	7	7.25	5002	1	0.00
1518	6	7.42	2106	44	7.32	5003	2	0.00
1520	1	0.00	2201	3	2.17	5101	5	0.00
1521	6	0.00	2202	14	8.68	5102	3	0.00
1522	1	0.00	2203	6	0.00	5103	3	0.00
1601	15	67.50	2204	51	-	5104	-	-
1602	54	15.70	2205	9	16.00	5201	4	0.00
1603	4	4.50	2206	32	3.00	5202	3	0.00
1604	37	4.93	2207	5	6.50	5203	2	2.50
1605	25	3.36	2208	24	0.00	5301	4	0.00
1701	18	0.00	2209	1	9.50	5302	2	0.00
1702	26	4.11	2301	13	0.60			
1703	6	4.17	2302	9	0.00			
1704	14	8.89	2303	7	0.36			
1801	1	0.00	2304	1	0.00			
1802	1	0.00	2305	1	0.00			
1803	2	0.00	2306	9	0.00			
1804	1	0.00	2307	1	0.00			
1805	1	6.00	2308	1	0.00			
1806	21	5.58	2309	82	2.11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3. 멕시코

멕시코의 농산물 품목 수는 1,264개이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 되는 품목군은 12류(채유용 종자 등, 115개 품목)가 유일하다. 그 밖에 비교적 많은 품목이 분포된 품목군은 2류(육류, 80개 품목), 4류(낙농품, 52개 품목), 7류(채소, 89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70개 품목), 16류(육·어류 조제품, 43개 품목), 19류(곡물 조제품, 28개 품목), 20류(채소·과실 조제품, 84개 품목), 22류(음료 등, 48개 품목)등이다.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79.70%), 낙농품(38.84%), 곡물(49.65%), 육류 조제품(22.76%), 담배(51.29%)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낙농품, 곡물 등이 멕시코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멕시코는 육류, 낙농품, 곡물 등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 분류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멕시코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 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 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 체	1,264	25.15	18류	14	18.83
01류	60	16.51	19류	28	15.45
02류	80	79.70	20류	84	23.28
04류	52	38.84	21류	38	32.76
05류	32	12.37	22류	48	28.16
06류	70	15.79	23류	39	14.15
07류	89	21.80	24류	14	51.29
08류	70	22.46	29류	2	11.50
09류	35	25.89	33류	29	14.86
10류	28	49.65	35류	23	15.13
11류	37	20.86	38류	2	18.00
12류	115	6.72	41류	18	7.88
13류	37	13.74	43류	12	13.00
14류	9	13.00	50류	4	10.00
15류	70	22.90	51류	33	5.65
16류	43	22.76	52류	9	8.75
17류	30	92.25	53류	10	3.33

자료: Mexico,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멕시코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23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육류 중에 쇠고기(HS 0201, 0202)는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도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26개 품목으로 육류 중에서 가장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12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28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는 각각 14개, 13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이 각각 3개, 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7개, 8개 및 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37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14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11개 품목과 5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4개 품목과 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일),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11개 품목, 23개 품목, 25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13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7. 멕시코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6	18.00	0602	28	9.43	0908	3	23.00
0102	8	7.20	0603	15	30.00	0909	5	16.00
0103	8	17.25	0604	8	27.50	0910	7	20.14
0104	5	9.00	0701	2	127.00	1001	3	67.00
0105	10	17.50	0702	2	13.00	1002	1	10.00
0106	23	19.09	0703	5	13.00	1003	3	82.00
0201	3	20.00	0704	6	13.00	1004	2	10.00
0202	3	25.00	0705	4	13.00	1005	7	104.00
0203	6	20.00	0706	2	13.00	1006	5	16.00
0204	9	10.00	0707	1	13.00	1007	3	7.50
0205	1	10.00	0708	3	13.00	1008	4	23.75
0206	12	13.64	0709	14	13.00	1101	1	15.00
0207	26	195.62	0710	13	18.38	1102	4	15.00
0208	7	10.00	0711	8	17.38	1103	7	10.00
0209	2	260.00	0712	9	22.44	1104	8	10.00
0210	11	10.45	0713	13	38.00	1105	2	15.00
0401	6	10.00	0714	7	18.71	1106	5	15.00
0402	9	66.20	0801	6	23.00	1107	2	161.00
0403	2	20.00	0802	11	18.91	1108	7	15.00
0404	3	15.00	0803	1	23.00	1109	1	15.00
0405	6	15.00	0804	7	24.71	1201	5	5.00
0406	12	74.58	0805	7	23.00	1202	6	0.00
0407	4	33.00	0806	2	34.00	1203	1	45.00
0408	7	20.00	0807	4	23.00	1204	4	0.00
0409	1	20.00	0808	3	23.00	1205	4	0.00
0410	2	20.00	0809	4	23.00	1206	4	0.00
0501	1	23.00	0810	7	23.00	1207	24	1.54
0502	2	8.00	0811	3	-	1208	5	15.00
0503	1	13.00	0812	4	18.00	1209	37	3.51
0504	1	13.00	0813	10	23.00	1210	2	3.00
0505	2	13.00	0814	1	18.00	1211	10	13.00
0506	2	13.00	0901	7	51.00	1212	9	16.67
0507	3	13.00	0902	4	23.00	1213	1	13.00
0508	2	13.00	0903	1	23.00	1214	3	18.00
0509	1	30.00	0904	4	23.00	1301	4	7.20
0510	4	13.00	0905	1	23.00	1302	33	17.25
0511	13	9.73	0906	2	8.00	1401	3	9.00
0601	19	9.00	0907	1	12.00	1402	1	17.5

자료: Mexico, Customs Tariff, 2004.

표 4-7. 멕시코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1	13.00	1901	11	24.14	2401	6	52.33
1404	4	13.00	1902	5	12.00	2402	3	59.67
1501	1	260.00	1903	1	10.00	2403	5	45.00
1502	1	10.00	1904	4	10.00	2905	2	11.50
1503	2	10.00	1905	7	10.00	3301	29	14.86
1504	6	8.00	2001	5	23.00	3501	5	16.40
1505	4	10.00	2002	2	23.00	3502	4	15.50
1506	3	13.33	2003	3	23.00	3503	5	15.40
1507	2	15.00	2004	4	23.00	3504	7	13.00
1508	2	15.00	2005	11	23.00	3505	2	18.00
1509	5	16.00	2006	4	23.00	3506	-	-
1510	1	10.00	2007	7	23.00	3809	1	18.00
1511	2	15.00	2008	23	23.96	3824	1	18.00
1512	4	15.00	2009	25	23.00	4101	8	7.38
1513	4	45.00	2101	6	101.67	4102	3	5.33
1514	4	15.00	2102	6	16.33	4103	7	9.83
1515	12	11.67	2103	6	23.00	4301	12	13.00
1516	2	155.00	2104	2	13.00	5001	1	10.00
1517	4	20.00	2105	1	-	5002	1	10.00
1518	3	11.67	2106	17	16.08	5003	2	10.00
1520	1	10.00	2201	5	23.20	5101	18	2.00
1521	6	17.50	2202	6	27.50	5102	6	10.00
1522	1	10.00	2203	1	30.00	5103	9	7.14
1601	2	18.00	2204	8	30.00	5104	-	-
1602	14	22.62	2205	4	30.00	5201	4	10.00
1603	2	23.00	2206	2	30.00	5202	4	10.00
1604	19	23.00	2207	2	-	5203	1	10.00
1605	6	23.00	2208	19	28.05	5301	8	-
1701	12	-	2209	1	30.00	5302	2	3.33
1702	13	92.25	2301	3	18.00			
1703	3	-	2302	5	13.00			
1704	2	-	2303	4	11.75			
1801	1	18.00	2304	1	18.00			
1802	1	18.00	2305	1	18.00			
1803	2	18.00	2306	9	18.00			
1804	1	18.00	2307	1	13.00			
1805	1	23.00	2308	2	13.00			
1806	8	-	2309	13	11.46			

자료: Mexico, Customs Tariff, 2004.

4. MERCOSUR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농산물 품목 수는 2,281개이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147개 품목), 7류(채소, 131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207개 품목), 12류(채유용 종자 등, 124개 품목), 15류(동물성 유지, 134개 품목), 20류(채소·과실 조제품, 193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식물 생산품, 산수목, 커피 및 향신료,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9.89%), 낙농품(14.75%), 곡물(8.24%), 육류 조제품(16%), 담배(16%) 등이다.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군은 산동물, 산수목 및 꽃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 그리고 담배, 당류, 낙농품 등이 메르코수르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8.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 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 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 체	2,281	10.45	18류	50	18.12
01류	78	2.46	19류	73	16.82
02류	147	9.89	20류	193	14.00
04류	93	14.75	21류	99	16.20
05류	106	6.13	22류	76	20.00
06류	51	4.12	23류	71	6.56
07류	131	9.01	24류	21	16.00
08류	207	9.94	29류	2	14.00
09류	54	10.00	33류	63	9.68
10류	76	8.24	35류	31	13.23
11류	53	10.60	38류	4	10.50
12류	124	4.35	41류	71	2.00
13류	37	7.41	43류	8	10.00
14류	13	6.00	50류	4	4.00
15류	134	9.78	51류	58	7.86
16류	76	16.00	52류	21	6.00
17류	48	17.92	53류	8	6.00

자료: MERCOSUR,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남미공동시장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27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육류 중에 쇠고기(HS 0201, 0202)는 20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0203)도 1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20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28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27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는 각각 14개, 4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이 각각 12개, 20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33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8개, 9개 및 6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44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22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15개 품목과 1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13개 품목과 32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37개 품목, 55개 품목, 31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11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9. 남미공동시장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10	2.20	0602	27	1.41	0908	3	10.00
0102	16	1.50	0603	14	10.00	0909	6	10.00
0103	11	1.45	0604	4	8.00	0910	7	10.00
0104	7	2.14	0701	3	6.67	1001	11	8.18
0105	7	2.57	0702	3	10.00	1002	3	5.33
0106	27	3.85	0703	10	4.00	1003	6	8.33
0201	10	10.40	0704	3	10.00	1004	3	5.33
0202	10	10.40	0705	4	10.00	1005	7	6.86
0203	12	10.00	0706	2	10.00	1006	33	10.36
0204	17	10.00	0707	1	10.00	1007	3	5.33
0205	9	10.00	0708	4	10.00	1008	10	4.80
0206	20	10.00	0709	14	10.00	1101	3	12.00
0207	20	10.00	0710	17	10.00	1102	7	10.00
0208	31	10.00	0711	9	10.00	1103	8	10.00
0209	6	6.00	0712	12	10.00	1104	9	10.00
0210	12	10.00	0713	45	8.67	1105	3	12.00
0401	10	13.20	0714	4	10.00	1106	11	10.00
0402	18	15.78	0801	10	10.00	1107	5	14.00
0403	6	16.00	0802	19	9.37	1108	6	10.00
0404	2	14.00	0803	2	10.00	1109	1	10.00
0405	6	16.00	0804	24	10.00	1201	3	5.33
0406	28	16.00	0805	31	10.00	1202	6	8.00
0407	3	2.67	0806	15	10.00	1203	1	8.00
0408	4	10.00	0807	6	10.00	1204	3	5.33
0409	12	16.00	0808	12	10.00	1205	10	6.40
0410	4	14.00	0809	20	10.00	1206	5	6.40
0501	1	8.00	0810	24	10.00	1207	17	4.24
0502	15	8.00	0811	10	10.00	1208	2	10.00
0503	6	8.00	0812	2	10.00	1209	44	0.00
0504	30	7.20	0813	29	10.00	1210	3	8.00
0505	6	8.00	0814	3	10.00	1211	20	8.00
0506	2	8.00	0901	17	10.00	1212	5	8.00
0507	5	8.00	0902	6	10.00	1213	2	8.00
0508	3	8.00	0903	4	10.00	1214	3	8.00
0509	1	4.00	0904	7	10.00	1301	12	7.33
0510	20	2.30	0905	1	10.00	1302	25	7.44
0511	17	4.71	0906	2	10.00	1401	6	6.00
0601	6	0.00	0907	1	10.00	1402	1	6.00

자료: MERCOSUR, Customs Tariff, 2004.

표 4-9. 남미공동시장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2	6.00	1901	15	15.73	2401	11	13.64
1404	4	6.00	1902	12	16.00	2402	5	20.00
1501	2	8.00	1903	1	16.00	2403	5	17.20
1502	7	6.00	1904	13	16.00	2905	2	14.00
1503	4	8.00	1905	32	18.00	3301	63	9.68
1504	5	7.60	2001	12	14.00	3501	7	14.00
1505	2	7.00	2002	22	14.00	3502	5	11.60
1506	2	6.00	2003	10	14.00	3503	7	12.29
1507	8	11.25	2004	12	14.00	3504	7	14.00
1508	7	10.00	2005	37	14.00	3505	5	14.00
1509	10	10.00	2006	2	14.00	3506	-	-
1510	2	10.00	2007	12	14.00	3809	4	10.50
1511	2	10.00	2008	55	14.00	3824	-	-
1512	14	10.86	2009	31	14.00	4101	51	2.00
1513	6	10.00	2101	22	15.55	4102	12	2.00
1514	8	10.00	2102	11	14.00	4103	8	2.00
1515	29	10.00	2103	25	17.44	4301	8	10.00
1516	6	10.00	2104	17	17.18	5001	1	4.00
1517	8	12.00	2105	2	17.00	5002	1	4.00
1518	2	10.00	2106	22	15.73	5003	2	4.00
1520	2	9.00	2201	5	20.00	5101	6	8.00
1521	5	10.00	2202	13	20.00	5102	48	8.00
1522	3	10.00	2203	16	20.00	5103	3	6.00
1601	2	16.00	2204	9	20.00	5104	1	6.00
1602	22	16.00	2205	4	20.00	5201	17	6.00
1603	2	16.00	2206	5	20.00	5202	3	6.00
1604	34	16.00	2207	3	20.00	5203	1	6.00
1605	16	16.00	2208	20	20.00	5301	6	6.00
1701	4	16.00	2209	1	20.00	5302	2	6.00
1702	19	16.00	2301	6	6.00			
1703	2	16.00	2302	8	6.00			
1704	23	20.00	2303	3	6.00			
1801	4	10.00	2304	5	6.00			
1802	1	10.00	2305	5	6.00			
1803	2	12.00	2306	30	6.00			
1804	2	12.00	2307	1	6.00			
1805	1	14.00	2308	2	6.00			
1806	40	19.85	2309	11	9.64			

자료: MERCOSUR, Customs Tariff, 2004.

5. EU

유럽연합(EU)의 농산물 품목 수는 2,141개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수준의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232개 품목), 4류(낙농품, 174개 품목), 7류(채소, 107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128개 품목), 15류(동물성 유지, 125개 품목), 20류(채소·과실 조제품, 311개 품목), 22류(음료 등, 177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식물 생산품, 산수목, 커피 및 향신료, 곡물,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5.15%), 낙농품(5.34%), 채소(8.93%), 과일(6.85%), 밀가루 및 전분(11.75%), 육류 조제품(15.60%), 당류(11.40%), 담배(41.76%) 등이다.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군은 산동물, 기타 동식물 생산품, 커피 및 향신료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과실조제품, 담배, 곡물조제품, 당류, 낙농품 등이 EU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10. EU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체	2,141	8.00	18류	27	6.13
01류	55	2.05	19류	51	10.65
02류	232	5.15	20류	311	17.53
04류	174	5.34	21류	42	8.38
05류	21	0.24	22류	177	0.88
06류	42	5.34	23류	66	1.51
07류	107	8.93	24류	30	41.76
08류	128	6.85	29류	5	-
09류	42	3.05	33류	31	2.87
10류	55	3.36	35류	25	4.50
11류	83	11.75	38류	8	-
12류	77	1.25	41류	19	0.00
13류	18	2.21	43류	9	0.00
14류	8	0.00	50류	4	0.00
15류	125	5.99	51류	17	0.00
16류	92	15.60	52류	6	0.00
17류	47	11.40	53류	7	0.00

자료: EU,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유럽연합(EU)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2(소, 물소포함)가 15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육류 중에 쇠고기(HS 0201, 0202)는 1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는 2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92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50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18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는 각각 23개, 11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이 각각 7개, 7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34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16개, 37개 및 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12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42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6개 품목과 1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10개 품목과 23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일),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18개 품목, 137개 품목, 101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28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1. EU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6	6.30	0602	18	6.28	0908	3	0.00
0102	15	0.00	0603	7	10.00	0909	5	0.00
0103	6	0.00	0604	9	3.10	0910	14	4.00
0104	5	1.60	0701	4	7.27	1001	4	12.80
0105	13	-	0702	1	-	1002	1	-
0106	10	1.02	0703	5	9.80	1003	2	-
0201	6	-	0704	4	12.00	1004	1	-
0202	8	-	0705	4	10.40	1005	6	0.00
0203	22	0.00	0706	4	12.80	1006	34	7.70
0204	27	-	0707	2	12.80	1007	2	6.40
0205	2	5.10	0708	3	11.20	1008	5	0.00
0206	19	0.75	0709	23	7.71	1101	3	-
0207	92	3.84	0710	16	13.92	1102	7	-
0208	14	5.96	0711	11	8.50	1103	16	-
0209	4	-	0712	11	11.09	1104	37	-
0210	38	12.83	0713	11	0.58	1105	2	12.20
0401	12	-	0714	8	-	1106	5	8.97
0402	28	-	0801	6	0.00	1107	5	-
0403	30	-	0802	14	2.47	1108	7	19.20
0404	30	-	0803	3	16.00	1109	1	-
0405	10	-	0804	6	5.42	1201	2	0.00
0406	50	7.70	0805	13	12.80	1202	3	0.00
0407	4	7.70	0806	8	2.40	1203	1	0.00
0408	8	0.00	0807	3	5.87	1204	2	0.00
0409	1	17.30	0808	7	7.20	1205	3	0.00
0410	1	7.70	0809	7	12.00	1206	3	0.00
0501	1	0.00	0810	15	6.09	1207	17	0.00
0502	2	0.00	0811	20	14.03	1208	2	2.25
0503	1	0.00	0812	9	8.33	1209	22	2.31
0504	1	0.00	0813	16	5.18	1210	3	5.80
0505	3	0.00	0814	1	1.60	1211	6	0.50
0506	2	0.00	0901	6	6.05	1212	9	1.82
0507	2	0.00	0902	4	0.80	1213	1	0.00
0508	1	0.00	0903	1	0.00	1214	3	1.93
0509	2	2.55	0904	5	3.72	1301	4	0.00
0510	1	0.00	0905	1	6.00	1302	14	2.84
0511	5	0.00	0906	2	0.00	1401	3	0.00
0601	8	5.19	0907	1	8.00	1402	1	0.00

자료: EU, Customs Tariff, 2004.

표 4-11. EU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1	0.00	1901	6	12.80	2401	21	-
1404	3	0.00	1902	11	8.50	2402	4	37.80
1501	3	5.75	1903	1	-	2403	5	44.92
1502	2	1.60	1904	10	-	2905	5	-
1503	4	2.88	1905	23	-	3301	31	2.87
1504	7	4.27	2001	12	12.26	3501	5	5.38
1505	2	1.60	2002	8	14.40	3502	10	2.35
1506	1	0.00	2003	4	16.40	3503	2	7.70
1507	4	6.08	2004	8	16.53	3504	1	3.40
1508	4	5.28	2005	18	15.86	3505	7	7.70
1509	3	-	2006	6	10.83	3506	-	-
1510	2	-	2007	17	20.86	3809	4	-
1511	6	6.93	2008	137	18.01	3824	4	-
1512	9	6.11	2009	101	18.37	4101	9	-
1513	16	9.16	2101	11	9.59	4102	4	0.00
1514	8	6.08	2102	8	7.52	4103	6	0.00
1515	25	5.50	2103	7	4.94	4301	9	0.00
1516	7	9.36	2104	3	12.37	5001	1	0.00
1517	6	11.13	2105	3	-	5002	1	0.00
1518	6	5.57	2106	10	12.80	5003	2	0.00
1520	1	0.00	2201	4	0.00	5101	5	0.00
1521	4	0.63	2202	5	9.60	5102	6	0.00
1522	5	2.33	2203	3	0.00	5103	6	0.00
1601	3	15.40	2204	94	32.00	5104	-	0.00
1602	42	12.79	2205	4	-	5201	2	0.00
1603	2	6.40	2206	7	-	5202	3	0.00
1604	34	18.40	2207	2	-	5203	1	0.00
1605	11	16.29	2208	54	0.00	5301	5	0.00
1701	7	-	2209	4	-	5302	2	0.00
1702	24	10.40	2301	2	0.00			
1703	2	-	2302	9	5.10			
1704	14	13.40	2303	7	0.00			
1801	1	0.00	2304	1	0.00			
1802	1	0.00	2305	1	0.00			
1803	2	9.60	2306	11	0.00			
1804	1	7.70	2307	3	0.00			
1805	1	8.00	2308	4	0.53			
1806	21	8.00	2309	28	5.58			

자료: EU, Customs Tariff, 2004.

6. 일본

일본의 농산물 품목 수는 1,832개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113개 품목), 4류(낙농품, 148개 품목), 7류(채소, 119개 품목), 19류(곡물 조제품, 142개 품목), 20류(채소·과실 조제품, 259개 품목), 21류(기타 조제식료품 등, 105개 품목)등이다. 반면 동물 생산품, 산수목, 커피 및 향신료, 곡물,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일본의 농산물 전체 평균 실행관세율은 10.68%이고,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10.85%), 낙농품(24.23%), 채소(6.08%), 과일(7.07%), 밀가루 및 전분(17.38%), 육류조제품(17.78%), 당류(11.99%), 담배(5.09%) 등이다.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품목군은 산동물, 기타 동 식물 생산품, 산수목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과실조제품, 담배, 곡물조제품, 당류, 낙농품 등이 일본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12. 일본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실행관세	구분	품목수	실행관세
전체	1,832	10.68	18류	30	18.82
01류	51	0.38	19류	142	20.22
02류	113	10.85	20류	259	15.88
04류	148	24.23	21류	105	17.38
05류	19	0.24	22류	54	6.29
06류	21	0.43	23류	40	0.52
07류	119	6.08	24류	11	5.09
08류	94	7.07	29류	2	9.90
09류	71	3.47	33류	24	1.45
10류	45	1.50	35류	17	6.07
11류	94	17.38	38류	1	-
12류	61	2.16	41류	40	3.30
13류	21	2.79	43류	10	0.35
14류	16	1.94	50류	19	0.00
15류	81	3.89	51류	12	0.00
16류	51	17.78	52류	5	0.00
17류	49	11.99	53류	7	0.00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일본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26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육류중에 쇠고기(HS 0201, 0202)는 13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는 2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육류중에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22개 품목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10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7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는 각각 15개, 29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가 각각 2개, 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8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22개, 25개 및 19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12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47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80개 품목과 19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26개 품목과 16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35개 품목, 93개 품목, 72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1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3. 일본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8	0.00	0602	7	0.00	0908	9	1.20
0102	4	0.00	0603	7	0.00	0909	15	3.00
0103	4	5.67	0604	3	3.00	0910	19	2.33
0104	2	0.00	0701	2	3.65	1001	8	5.00
0105	6	0.00	0702	1	3.00	1002	3	2.80
0106	26	0.00	0703	6	4.83	1003	4	0.00
0201	7	38.50	0704	4	3.00	1004	2	0.00
0202	6	38.50	0705	4	3.00	1005	9	0.50
0203	24	2.15	0706	3	2.83	1006	8	0.00
0204	9	0.00	0707	1	3.00	1007	3	1.00
0205	1	0.00	0708	3	3.00	1008	8	1.71
0206	22	12.66	0709	15	3.46	1101	2	18.75
0207	22	8.00	0710	12	8.10	1102	9	22.10
0208	7	0.00	0711	12	8.50	1103	22	20.04
0209	1	6.00	0712	14	8.89	1104	25	19.41
0210	10	6.35	0713	29	5.32	1105	2	20.00
0401	11	23.61	0714	12	8.40	1106	7	11.41
0402	25	24.17	0801	6	2.00	1107	6	0.00
0403	22	28.82	0802	14	4.85	1108	19	14.58
0404	31	21.06	0803	3	3.00	1109	1	21.30
0405	8	35.00	0804	10	5.12	1201	2	0.00
0406	10	24.79	0805	8	7.33	1202	6	5.00
0407	3	12.77	0806	3	1.20	1203	1	0.00
0408	5	20.47	0807	3	4.67	1204	1	0.00
0409	1	22.50	0808	2	10.90	1205	2	0.00
0410	2	5.25	0809	4	6.63	1206	1	0.00
0501	1	0.00	0810	8	5.80	1207	9	0.00
0502	2	0.00	0811	16	11.46	1208	2	4.20
0503	1	0.00	0812	11	11.27	1209	12	0.00
0504	3	0.00	0813	10	8.19	1210	3	3.87
0505	2	0.00	0814	1	1.50	1211	13	2.75
0506	3	0.00	0901	6	6.00	1212	20	7.86
0507	-	-	0902	8	10.38	1213	1	0.00
0508	-	-	0903	1	12.00	1214	3	0.00
0509	-	-	0904	7	1.71	1301	6	2.83
0510	3	1.00	0905	1	0.00	1302	15	2.77
0511	8	0.38	0906	2	0.00	1401	5	5.00
0601	4	0.00	0907	3	1.20	1402	1	0.00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표 4-13. 일본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1	0.00	1901	80	22.03	2401	3	0.00
1404	9	0.67	1902	19	16.73	2402	3	6.47
1501	3	3.20	1903	1	9.60	2403	5	7.32
1502	3	0.00	1904	26	19.82	2905	2	9.90
1503	1	4.30	1905	16	16.88	3301	23	1.45
1504	4	-	2001	12	11.28	3501	2	2.70
1505	2	2.10	2002	7	9.06	3502	4	5.45
1506	1	6.40	2003	9	11.19	3503	5	8.80
1507	3	-	2004	12	13.29	3504	3	4.37
1508	3	-	2005	35	13.47	3505	3	6.80
1509	2	0.00	2006	3	16.20	3506	-	-
1510	1	0.00	2007	16	21.63	3809	-	-
1511	3	3.17	2008	93	14.91	3824	-	-
1512	10	-	2009	72	20.31	4101	15	8.40
1513	7	1.60	2101	25	18.89	4102	5	0.00
1514	6	-	2102	4	6.20	4103	20	0.30
1515	17	1.42	2103	11	10.89	4301	10	0.35
1516	3	3.67	2104	3	9.13	5001	2	0.00
1517	6	14.64	2105	8	24.50	5002	9	0.00
1518	1	2.50	2106	54	18.60	5003	6	0.00
1520	2	5.00	2201	2	1.50	5101	5	0.00
1521	5	4.52	2202	4	11.50	5102	3	0.00
1522	2	2.25	2203	1	0.00	5103	4	0.00
1601	1	10.00	2204	9	22.53	5104	-	-
1602	47	17.94	2205	3	19.10	5201	1	0.00
1603	-	-	2206	5	0.00	5202	3	0.00
1604	-	-	2207	7	11.84	5203	1	0.00
1605	-	-	2208	21	1.05	5301	5	0.00
1701	8	0.00	2209	1	7.50	5302	2	0.00
1702	27	14.97	2301	2	0.00			
1703	6	1.50	2302	5	0.00			
1704	5	19.80	2303	3	0.00			
1801	1	0.00	2304	1	0.00			
1802	1	0.00	2305	1	0.00			
1803	2	7.50	2306	9	0.00			
1804	1	0.00	2307	1	0.00			
1805	1	12.90	2308	1	0.00			
1806	24	22.68	2309	15	1.45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7. 중국

중국의 농산물 품목 수는 1,766개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품목 수가 100개 이상되는 품목군은 2류(육류, 223개 품목), 7류(채소, 210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155개 품목), 12류(유지작물 등, 143개 품목) 등이다. 반면 낙농품, 동물 생산품, 기타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중국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율은 15.19%이고,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18.89%), 낙농품(15.67%), 채소(11.74%), 과일(18.03%), 곡물(33.60%), 밀가루 및 전분(27.11%), 육류조제품(13.19%), 당류(32.19%), 담배(32.31%)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 과일 그리고 유지작물 등이 중국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14.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 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 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 체	1,766	15.19	18류	13	12.69
01류	98	6.22	19류	22	19.59
02류	223	18.89	20류	98	20.46
04류	45	15.67	21류	21	22.23
05류	77	11.02	22류	36	27.58
06류	33	7.58	23류	32	5.34
07류	210	11.74	24류	16	32.31
08류	155	18.03	29류	2	11.00
09류	43	14.23	33류	25	19.15
10류	58	33.60	35류	14	10.79
11류	56	27.11	38류	2	12.00
12류	143	9.52	41류	51	8.16
13류	29	14.07	43류	14	19.64
14류	11	10.36	50류	10	8.40
15류	81	19.03	51류	39	13.09
16류	64	13.19	52류	7	16.00
17류	32	32.19	53류	6	5.67

자료: China,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중국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45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쇠고기(HS 0201, 0202)는 2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는 3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육류중에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57개 품목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18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은 각각 50개, 18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이 각각 5개, 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30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18개, 10개 및 6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14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33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3개 품목과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4개 품목과 6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21개 품목, 26개 품목, 23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4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5. 중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12	5.00	0602	18	6.11	0908	3	6.33
0102	6	5.00	0603	2	16.50	0909	6	15.83
0103	12	7.50	0604	3	14.33	0910	7	13.14
0104	8	5.00	0701	4	13.00	1001	9	44.67
0105	15	6.00	0702	3	13.00	1002	2	1.50
0106	45	6.67	0703	26	13.00	1003	2	1.50
0201	15	14.67	0704	9	12.00	1004	2	1.00
0202	9	16.33	0705	12	11.50	1005	6	29.83
0203	32	17.00	0706	6	13.00	1006	30	44.97
0204	36	17.22	0707	3	13.00	1007	2	1.00
0205	5	20.00	0708	9	13.00	1008	5	1.80
0206	19	16.74	0709	50	12.76	1101	3	46.30
0207	56	19.80	0710	15	12.60	1102	11	27.36
0208	25	21.20	0711	19	13.00	1103	18	29.28
0209	7	21.71	0712	21	13.00	1104	10	32.80
0210	19	25.11	0713	18	2.97	1105	2	15.00
0401	3	15.00	0714	15	10.33	1106	3	16.67
0402	5	13.26	0801	15	12.26	1107	2	10.00
0403	2	15.00	0802	49	19.27	1108	6	17.50
0404	2	13.00	0803	3	10.00	1109	1	18.00
0405	3	15.00	0804	21	18.24	1201	5	2.40
0406	5	12.60	0805	21	14.29	1202	3	10.00
0407	14	15.71	0806	2	11.50	1203	1	15.00
0408	4	20.00	0807	5	17.20	1204	1	15.00
0409	1	15.00	0808	5	12.00	1205	4	18.22
0410	6	19.17	0809	4	13.75	1206	2	7.50
0501	1	15.00	0810	14	22.21	1207	16	8.44
0502	7	20.00	0811	4	30.00	1208	2	12.00
0503	4	15.00	0812	2	30.00	1209	14	0.00
0504	8	19.14	0813	9	23.67	1210	2	15.00
0505	7	10.00	0814	1	25.00	1211	52	7.61
0506	16	12.00	0901	6	14.33	1212	37	17.11
0507	7	9.20	0902	10	15.00	1213	2	12.00
0508	4	12.00	0903	1	10.00	1214	2	7.00
0509	1	15.00	0904	6	20.00	1301	10	12.60
0510	10	5.10	0905	1	15.00	1302	19	14.84
0511	12	4.00	0906	2	10.85	1401	6	10.00
0601	10	6.40	0907	1	3.00	1402	1	15.00

자료: China, Customs Tariff, 2004.

표 4-15. 중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1	15.00	1901	3	16.67	2401	5	10.00
1404	3	8.00	1902	8	17.63	2402	5	25.00
1501	1	1.00	1903	1	15.00	2403	6	57.00
1502	2	8.00	1904	4	28.75	2905	2	11.00
1503	1	10.00	1905	6	18.33	3301	25	19.15
1504	3	12.80	2001	5	25.00	3501	2	10.00
1505	1	20.00	2002	4	20.80	3502	4	10.00
1506	3	21.00	2003	10	25.00	3503	4	12.00
1507	6	27.10	2004	2	19.00	3504	2	5.50
1508	2	10.00	2005	21	23.10	3505	2	16.00
1509	2	10.00	2006	3	30.00	3506	-	-
1510	1	10.00	2007	4	17.50	3809	1	10.00
1511	10	25.19	2008	26	17.81	3824	1	14.00
1512	8	9.48	2009	23	17.43	4101	27	6.09
1513	4	10.00	2101	4	28.58	4102	5	10.20
1514	15	27.10	2102	3	25.00	4103	19	19.64
1515	9	14.67	2103	6	20.17	4301	14	19.64
1516	2	15.00	2104	2	23.50	5001	2	6.00
1517	4	26.25	2105	1	19.00	5002	6	9.00
1518	1	10.00	2106	5	18.10	5003	2	9.00
1520	1	20.00	2201	4	18.13	5101	10	19.50
1521	4	20.00	2202	4	31.25	5102	16	9.00
1522	1	20.00	2203	1	-	5103	13	13.19
1601	3	15.00	2204	6	20.50	5104	-	-
1602	33	14.45	2205	2	65.00	5201	2	20.50
1603	3	23.60	2206	3	53.60	5202	3	10.00
1604	15	11.07	2207	4	33.00	5203	2	20.20
1605	10	8.65	2208	11	18.36	5301	4	6.00
1701	18	40.67	2209	1	20.00	5302	2	5.00
1702	10	26.00	2301	6	3.50			
1703	2	8.00	2302	5	4.60			
1704	2	11.00	2303	3	5.00			
1801	1	8.00	2304	2	5.00			
1802	1	10.00	2305	1	5.00			
1803	2	10.00	2306	9	5.00			
1804	3	22.00	2307	1	5.00			
1805	1	15.00	2308	1	5.00			
1806	5	8.20	2309	4	10.48			

자료: China, Customs Tariff, 2004.

8. 태국

태국의 농산물 품목 수는 1,065개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1류(산동물, 55개 품목), 2류(육류, 60개 품목), 4류(낙농품, 43개 품목), 7류(채소, 81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79개 품목), 10류(곡물, 76개 품목), 12류(유지작물 등, 63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물 생산품, 기타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태국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율은 44.5%로 분석대상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60%), 낙농품(35.8%), 채소(60%), 과일(60%), 밀가루 및 전분(44.4%), 육류조제품(60%), 당류(46.8%), 담배(60%)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육류조제품, 채소, 과일 등이 태국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16. 태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체	1,065	44.5	18류	14	45.7
01류	55	18.4	19류	29	53.6
02류	60	60.0	20류	76	60.0
04류	43	35.8	21류	24	60.0
05류	26	33.3	22류	32	53.1
06류	14	60.0	23류	29	10.0
07류	81	60.0	24류	15	60.0
08류	79	60.0	29류	2	30.0
09류	34	35.9	33류	19	34.7
10류	76	-	35류	14	35.0
11류	34	44.4	38류	2	32.5
12류	63	40.9	41류	14	20.0
13류	28	21.1	43류	6	30.0
14류	11	32.3	50류	4	10.0
15류	92	31.1	51류	10	30.0
16류	40	60.	52류	5	5.0
17류	28	46.8	53류	6	30.0

자료: Thailand,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호) 수준에서 태국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29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쇠고기(HS 0201, 0202)는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는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육류중에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13개 품목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6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은 각각 13개, 16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가 각각 2개, 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62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3개, 6개 및 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14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10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6개 품목과 9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4개 품목과 8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 2009(과실쥬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15개 품목, 24개 품목, 18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3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7. 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3	16.67	0602	6	60.00	0908	4	30.00
0102	4	20.00	0603	3	60.00	0909	5	30.00
0103	3	26.67	0604	3	60.00	0910	7	30.00
0104	4	20.00	0701	2	60.00	1001	2	-
0105	12	20.00	0702	1	60.00	1002	1	-
0106	29	16.55	0703	4	60.00	1003	1	-
0201	3	60.00	0704	3	60.00	1004	1	-
0202	3	60.00	0705	4	60.00	1005	2	-
0203	6	60.00	0706	2	60.00	1006	62	-
0204	9	60.00	0707	1	60.00	1007	1	-
0205	1	60.00	0708	3	60.00	1008	6	-
0206	9	60.00	0709	13	60.00	1101	1	40.00
0207	13	60.00	0710	9	60.00	1102	5	40.00
0208	7	60.00	0711	6	60.00	1103	3	40.00
0209	1	60.00	0712	11	60.00	1104	6	40.00
0210	8	60.00	0713	16	60.00	1105	2	40.00
0401	3	40.00	0714	6	60.00	1106	7	60.00
0402	10	26.50	0801	6	60.00	1107	2	-
0403	3	40.00	0802	11	60.00	1108	7	40.00
0404	4	32.50	0803	4	60.00	1109	1	40.00
0405	4	51.25	0804	8	60.00	1201	2	47.50
0406	5	60.00	0805	10	60.00	1202	4	47.50
0407	7	17.14	0806	2	60.00	1203	1	-
0408	4	30.00	0807	4	60.00	1204	1	35.00
0409	1	65.00	0808	2	60.00	1205	2	35.00
0410	2	47.50	0809	4	60.00	1206	2	47.50
0501	1	35.00	0810	11	60.00	1207	12	39.17
0502	2	35.00	0811	7	60.00	1208	2	60.00
0503	1	35.00	0812	2	60.00	1209	14	40.00
0504	1	35.00	0813	7	60.00	1210	3	40.00
0505	2	35.00	0814	1	60.00	1211	7	31.25
0506	2	35.00	0901	5	40.00	1212	10	44.44
0507	6	35.00	0902	4	60.00	1213	1	30.00
0508	4	35.00	0903	1	60.00	1214	2	30.00
0509	1	35.00	0904	4	30.00	1301	16	15.00
0510	1	35.00	0905	1	30.00	1302	12	30.00
0511	5	26.00	0906	2	30.00	1401	5	35.00
0601	2	60.00	0907	1	30.00	1402	1	35.00

자료: Thailand, Customs Tariff, 2004.

표 4-17. 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1	35.00	1901	6	29.17	2401	8	60.00
1404	4	27.50	1902	9	60.00	2402	3	60.00
1501	2	30.00	1903	2	60.00	2403	4	60.00
1502	2	30.00	1904	4	60.00	2905	2	30.00
1503	2	30.00	1905	8	60.00	3301	19	34.74
1504	6	30.00	2001	4	60.00	3501	2	35.00
1505	1	30.00	2002	2	60.00	3502	4	35.00
1506	2	30.00	2003	3	60.00	3503	4	-
1507	2	-	2004	2	60.00	3504	2	35.00
1508	2	-	2005	15	60.00	3505	2	35.00
1509	2	-	2006	5	60.00	3506	-	-
1510	1	-	2007	3	60.00	3809	1	30.00
1511	2	-	2008	24	60.00	3824	1	35.00
1512	6	30.00	2009	18	60.00	4101	5	20.00
1513	4	-	2101	7	60.00	4102	3	20.00
1514	6	30.00	2102	3	60.00	4103	6	20.00
1515	15	30.00	2103	9	60.00	4301	6	30.00
1516	16	30.00	2104	2	60.00	5001	1	10.00
1517	2	60.00	2105	1	60.00	5002	1	10.00
1518	13	30.00	2106	2	60.00	5003	2	10.00
1520	1	35.00	2201	5	0.00	5101	5	30.00
1521	4	30.00	2202	2	60.00	5102	2	30.00
1522	1	30.00	2203	1	60.00	5103	3	30.00
1601	1	60.00	2204	5	60.00	5104	-	-
1602	10	60.00	2205	2	60.00	5201	1	5.00
1603	1	60.00	2206	2	60.00	5202	3	5.00
1604	11	60.00	2207	4	-	5203	1	5.00
1605	17	60.00	2208	10	60.00	5301	4	30.00
1701	10	65.00	2209	1	60.00	5302	2	30.00
1702	12	40.00	2301	3	10.00			
1703	4	65.00	2302	5	10.00			
1704	2	60.00	2303	4	10.00			
1801	1	30.00	2304	1	10.00			
1802	1	30.00	2305	1	10.00			
1803	2	30.00	2306	10	10.00			
1804	1	30.00	2307	1	10.00			
1805	1	30.00	2308	1	10.00			
1806	8	57.50	2309	3	10.00			

자료: Thailand, Customs Tariff, 2004.

9. 인도

인도의 농산물 품목 수는 1,513개 이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2류(육류, 62개 품목), 7류(채소, 84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87개 품목), 9류(커피 및 향신료, 138개 품목), 12류(유지작물 등, 110개 품목), 15류(동물성 유지, 120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물 생산품, 기타 식물성 생산품, 산수목,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인도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율은 43.49%이고,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32.84%), 낙농품(35.19%), 채소(31.43%), 과일(38.75%), 곡물(53.32%), 밀가루 및 전분(37.68%), 육류조제품(42.96%), 당류(47.12%)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커피 및 향신료, 채소, 과일 등이 인도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18. 인도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전체	1,513	43.49	18류	15	46.47
01류	35	30.60	19류	33	49.37
02류	62	32.84	20류	69	30.82
04류	43	35.19	21류	42	93.69
05류	72	30.60	22류	64	70.66
06류	20	18.36	23류	70	30.60
07류	84	31.43	24류	44	-
08류	87	38.75	29류	2	40.38
09류	138	64.46	33류	79	40.38
10류	35	53.32	35류	16	44.82
11류	36	37.68	38류	3	40.38
12류	110	29.67	41류	25	0.00
13류	58	48.88	43류	6	12.75
14류	27	30.60	50류	12	20.40
15류	120	80.00	51류	17	17.10
16류	34	42.96	52류	11	13.45
17류	38	47.12	53류	6	41.42

자료: India, Customs Tariff, 2005-2006.

HS 4단위(호) 수준에서 인도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10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쇠고기(HS 0201, 0202)는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는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육류중에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13개 품목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은 5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10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은 각각 16개, 12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이 각각 2개, 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0류에서 HS 1006(쌀)은 7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5개, 6개 및 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과종용 종자, 19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10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5개 품목과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7개 품목과 12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9개 품목, 26개 품목, 17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7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9. 인도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6	30.60	0602	10	10.20	0908	11	60.27
0102	7	30.60	0603	2	61.20	0909	16	30.60
0103	3	30.60	0604	3	30.60	0910	34	30.60
0104	3	30.60	0701	2	30.60	1001	6	102.00
0105	6	30.60	0702	1	30.60	1002	2	0.00
0106	10	30.60	0703	4	47.95	1003	2	0.00
0201	3	30.60	0704	3	30.60	1004	2	0.00
0202	3	30.60	0705	4	30.60	1005	2	66.30
0203	6	30.60	0706	5	30.60	1006	7	75.71
0204	9	30.60	0707	1	30.60	1007	2	81.60
0205	1	30.60	0708	3	30.60	1008	12	35.70
0206	11	30.60	0709	16	30.60	1101	1	30.60
0207	13	41.28	0710	9	30.60	1102	4	30.60
0208	7	30.60	0711	8	30.60	1103	5	30.60
0209	1	30.60	0712	12	30.60	1104	6	30.60
0210	8	30.60	0713	12	30.60	1105	2	30.60
0401	3	30.60	0714	4	30.60	1106	8	30.60
0402	12	42.20	0801	10	46.92	1107	2	58.17
0403	3	30.60	0802	13	62.15	1108	7	59.14
0404	4	30.60	0803	1	30.60	1109	1	30.60
0405	5	40.16	0804	13	30.60	1201	2	30.60
0406	5	32.64	0805	5	33.56	1202	6	30.60
0407	3	30.60	0806	3	80.27	1203	1	71.40
0408	4	30.60	0807	3	30.60	1204	2	30.60
0409	1	30.60	0808	2	42.85	1205	2	30.60
0410	3	30.60	0809	4	29.20	1206	2	30.60
0501	2	30.60	0810	13	30.60	1207	18	32.87
0502	5	30.60	0811	8	30.60	1208	2	30.60
0503	1	30.60	0812	3	30.60	1209	19	20.94
0504	8	30.60	0813	8	30.60	1210	2	30.60
0505	9	30.60	0814	1	30.60	1211	41	30.60
0506	12	30.60	0901	28	102.00	1212	10	30.60
0507	10	30.60	0902	20	102.00	1213	1	30.60
0508	6	30.60	0903	1	102.00	1214	2	30.60
0509	2	30.60	0904	16	71.40	1301	34	46.51
0510	5	30.60	0905	3	33.67	1302	24	52.24
0511	12	30.60	0906	5	35.20	1401	4	30.60
0601	5	10.20	0907	4	71.40	1402	1	30.60

자료: India, Customs Tariff, 2005-2006.

표 4-19. 인도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2	30.60	1901	5	51.74	2401	19	-
1404	20	30.60	1902	8	52.24	2402	11	-
1501	1	30.60	1903	1	51.00	2403	14	-
1502	4	15.19	1904	7	52.24	2905	2	40.38
1503	1	30.60	1905	12	44.65	3301	79	40.38
1504	8	30.60	2001	2	30.60	3501	2	40.38
1505	3	30.60	2002	2	30.60	3502	4	40.38
1506	2	30.60	2003	3	30.60	3503	4	40.38
1507	3	45.90	2004	2	30.60	3504	3	40.38
1508	4	102.00	2005	9	30.60	3505	3	64.10
1509	3	45.90	2006	1	30.60	3506	-	-
1510	3	45.90	2007	7	30.60	3809	1	40.38
1511	4	102.00	2008	26	30.60	3824	2	40.38
1512	10	102.00	2009	17	31.50	4101	9	0.00
1513	8	102.00	2101	12	46.83	4102	8	0.00
1514	13	76.50	2102	5	52.24	4103	8	0.00
1515	18	101.89	2103	8	46.83	4301	6	12.75
1516	9	102.00	2104	3	30.60	5001	1	30.60
1517	9	108.35	2105	1	52.24	5002	3	30.60
1518	7	110.16	2106	13	194.62	5003	8	15.30
1520	1	52.24	2201	4	44.13	5101	5	21.42
1521	6	52.24	2202	7	47.60	5102	6	15.30
1522	3	52.24	2203	1	-	5103	6	15.30
1601	1	110.16	2204	8	-	5104	-	-
1602	10	45.90	2205	2	-	5201	7	10.20
1603	3	38.76	2206	1	-	5202	3	15.30
1604	12	38.76	2207	4	151.38	5203	1	30.60
1605	8	38.76	2208	34	-	5301	4	30.60
1701	7	-	2209	3	52.24	5302	2	41.42
1702	23	46.92	2301	5	30.60			
1703	3	-	2302	8	30.60			
1704	5	47.80	2303	3	30.60			
1801	1	30.60	2304	4	30.60			
1802	1	30.60	2305	3	30.60			
1803	2	30.60	2306	38	30.60			
1804	1	52.24	2307	1	30.60			
1805	1	52.24	2308	1	30.60			
1806	9	52.24	2309	7	30.60			

자료: India, Customs Tariff, 2005-2006.

10. 한국

한국의 농산물 품목 수는 1,452개 이다. HS 2단위 품목군별로 2류(육류, 94개 품목), 7류(채소, 131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78개 품목), 12류(유지작물 등, 92개 품목), 15류(동물성 유지, 91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물 생산품, 기타 식물성 생산품, 산수목,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한국의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율은 55%이고,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이 5% 이상 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육류(22.37%), 낙농품(61.79%), 채소(116.7%), 과일(72.71%), 곡물(215.8%), 밀가루 및 전분(311.77%), 육류조제품(32.63%) 등이다. 품목분류가 다양하고 관세율도 높은 육류, 낙농품, 채소, 과일 등이 한국의 주요 시장보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4-20. 한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구분	품목수	평균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관세율
전체	1,452	55	18류	33	10.88
01류	48	15.49	19류	50	10.91
02류	94	22.37	20류	108	33.87
04류	51	61.79	21류	64	33.48
05류	53	9.28	22류	52	29.17
06류	74	10.97	23류	44	12.53
07류	131	116.70	24류	25	30.91
08류	78	72.71	29류	2	8.00
09류	36	62.68	33류	30	32.81
10류	32	215.80	35류	28	83.94
11류	45	311.77	38류	2	8.00
12류	92	113.79	41류	28	2.00
13류	25	99.36	43류	12	3.00
14류	21	4.95	50류	16	18.61
15류	91	17.65	51류	11	1.00
16류	24	32.63	52류	10	1.00
17류	33	19.70	53류	9	2.00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및 관세율」, 2005.

HS 4단위(호) 수준에서 한국의 유별 품목분류를 보면 1류의 산동물에서 HS 0106(기타 산동물)이 19개로 가장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리고 쇠고기(HS 0201, 0202)는 6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돼지고기(HS 0203)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육류중에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HS 0207)은 33개 품목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다. 4류에서 HS 0406(치즈)는 6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6류 중에서는 기타 산식물, 버섯의 종균(HS 0602)이 40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7류 가운데 HS 0709(기타 채소)와 HS 0713(건조 채두류)은 각각 20개, 13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8류 중에서는 HS 0808(사과, 배 등)과 HS 0809(복숭아, 살구 등)가 각각 3개, 5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1류에서는 HS 1103(곡물의 분쇄물), HS 1104(기타 가공곡물), HS 1108(전분과 이눌린)이 각각 10개, 11개 및 7개 품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밖에 HS 1209(파종용 종자, 22개 품목), HS 1602(기타 조제 육·설육, 20개 품목) 등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다.

19류의 경우 HS 1901, 1902는 곡물 조제품과 파스타로 각각 9개 품목과 1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1904(콘플레이크류)와 HS 1905(빵, 비스킷 등)는 각각 9개 품목과 14개 품목으로 세분화 된다. 20류 가운데에서는 HS 2005(조제 저장처리 기타채소), 2008(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일), 2009(과실주스)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 각각 18개 품목, 22개 품목, 28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사료용 조제품(HS 2309)은 16개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HS 4단위 수준에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표 4-21. 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0101	5	8.00	0602	40	9.30	0908	3	8.00
0102	6	57.90	0603	10	25.00	0909	5	8.00
0103	3	18.00	0604	5	8.00	0910	7	60.80
0104	3	8.00	0701	2	304.00	1001	6	4.20
0105	12	10.50	0702	1	45.00	1002	2	55.90
0106	19	8.00	0703	6	156.00	1003	4	359.10
0201	3	30.00	0704	5	27.00	1004	2	278.90
0202	3	40.00	0705	4	26.50	1005	4	403.50
0203	8	23.80	0706	5	28.20	1006	-	-
0204	10	22.50	0707	1	27.00	1007	2	391.20
0205	2	27.00	0708	3	27.00	1008	6	180.60
0206	12	18.00	0709	20	52.70	1101	2	4.60
0207	33	21.00	0710	15	27.40	1102	5	267.60
0208	6	20.30	0711	14	69.20	1103	10	426.80
0209	2	3.00	0712	27	71.00	1104	11	404.70
0210	15	23.90	0713	13	176.90	1105	2	304.00
0401	4	36.00	0714	15	437.30	1106	4	8.00
0402	10	141.20	0801	6	22.70	1107	3	188.30
0403	7	43.60	0802	14	128.10	1108	7	432.70
0404	8	47.80	0803	1	30.00	1109	1	8.00
0405	3	62.00	0804	7	30.00	1201	2	487.00
0406	6	36.00	0805	8	89.50	1202	2	230.50
0407	3	27.00	0806	2	33.00	1203	1	3.00
0408	5	29.90	0807	3	40.00	1204	1	3.00
0409	1	243.00	0808	3	45.00	1205	2	20.00
0410	4	8.00	0809	5	40.80	1206	1	25.00
0501	1	3.00	0810	11	97.40	1207	10	69.40
0502	4	3.00	0811	6	30.00	1208	2	3.00
0503	3	3.00	0812	3	30.00	1209	22	0.00
0504	4	27.00	0813	7	122.80	1210	3	30.00
0505	3	3.00	0814	2	30.00	1211	33	238.50
0506	6	5.00	0901	6	5.20	1212	8	8.30
0507	10	7.80	0902	4	276.80	1213	1	8.00
0508	-	11.60	0903	1	25.00	1214	4	57.30
0509	-	-	0904	4	139.00	1301	5	3.00
0510	9	8.00	0905	1	8.00	1302	20	123.40
0511	13	0.00	0906	4	8.00	1401	7	8.00
0601	19	8.00	0907	1	8.00	1402	1	3.00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및 관세율」, 2005.

표 4-21. 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품목 수 및 평균 관세율<계속>

단위: 개, %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품목군	품목수	평균 관세
1403	1	3.00	1901	9	20.20	2401	11	20.00
1404	12	3.50	1902	12	8.00	2402	6	40.00
1501	3	3.00	1903	2	8.00	2403	8	39.10
1502	3	2.30	1904	9	10.70	2905	2	8.00
1503	2	3.00	1905	14	8.00	3301	30	32.80
1504	-	-	2001	10	30.00	3501	3	20.00
1505	2	3.00	2002	3	7.00	3502	5	8.00
1506	2	3.00	2003	6	20.00	3503	4	8.00
1507	3	6.30	2004	3	26.00	3504	7	8.00
1508	3	27.00	2005	18	19.70	3505	9	240.30
1509	2	8.00	2006	13	23.50	3506	-	-
1510	1	8.00	2007	5	30.00	3809	1	8.00
1511	4	2.30	2008	22	46.80	3824	1	8.00
1512	9	8.10	2009	28	46.40	4101	16	2.00
1513	8	6.10	2101	8	16.00	4102	3	2.00
1514	8	25.00	2102	13	8.00	4103	9	2.00
1515	12	62.20	2103	14	8.00	4301	12	3.00
1516	13	18.80	2104	4	21.00	5001	1	51.00
1517	4	8.00	2105	4	8.00	5002	7	33.00
1518	3	8.00	2106	21	80.10	5003	8	2.00
1520	1	8.00	2201	3	8.00	5101	5	1.00
1521	5	8.00	2202	6	8.20	5102	3	1.00
1522	3	8.00	2203	1	30.00	5103	3	1.00
1601	2	24.00	2204	8	30.00	5104	-	-
1602	20	33.80	2205	2	30.00	5201	6	1.00
1603	2	30.00	2206	9	30.00	5202	3	1.00
1604	-	-	2207	4	79.50	5203	1	1.00
1605	-	-	2208	17	30.00	5301	5	2.00
1701	6	18.70	2209	2	8.00	5302	4	2.00
1702	17	28.10	2301	2	7.00			
1703	4	3.00	2302	5	5.00			
1704	6	8.00	2303	3	3.30			
1801	2	5.00	2304	1	1.80			
1802	2	8.00	2305	1	5.00			
1803	2	5.00	2306	11	9.40			
1804	1	5.00	2307	1	5.00			
1805	1	5.00	2308	4	15.40			
1806	23	12.70	2309	16	20.40			

자료: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및 관세율」, 2005.

제4절 주요국의 품목분류 현황 비교분석

1. HS 2단위 품목분류 현황

우리나라의 HS 코드 품목 분류 현황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분석 대상국가들의 HS 코드 품목 분류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와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북미지역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지역의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며, 단일 관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EU를 선택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9개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농산물 관련 품목군별 품목분류 수가 비교적 덜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EU의 품목분류 수가 무려 2,000여개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수는 전체 10개국 평균(1,848개)에도 못 미치는 1,4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국 중 태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으며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군별 품목분류 중에서는 채소류(7류)와 채소·과실의 조제품류(20류)가 가장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7류)의 경우 13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채소·과실의 조제품류(20류)는 10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산수목과 절화류(6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류(14류)의 경우 절대적인 품목분류 수는 적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목과 절화류(6류)는 74개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캐나다(80개)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분화된 것이다. 기타 식물성 생산품류(14류)의 경우에도 2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가장 세분화된 인도(27개)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견류(50류)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절대적으로 단순한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차별적 관세 부과를 통한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HS 코드 중 비교적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채소류(7류)와 채소·과실의 조제품류(20류)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채소·과실의 조제품류(20류)의 경우 EU가 311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일본(259개), 미국(257개), 캐나다(229개)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7류)의 경우에도 미국이 232개 코드로 되어 있어 131개의 코드로 되

어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중국(210개)과 캐나다(198개)도 우리나라보다 약 70~80여개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24개류 중 육·어류 조제품류(16류)에서 9개국 중 가장 적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육류제품류(2류), 낙농제품류(4류), 과일·견과류(8류), 커피·향신료류(9류), 당류·설탕과자류(17류),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 음료·알콜류(22류)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2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많은 품목분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5류, 6류, 14류, 18류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가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은 2류, 4류, 8류, 9류, 10류, 16류, 19류, 20류, 22류 등이다. 특히 16류는 분석 대상국 평균의 1/3 정도에 불과한 품목분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류, 곡물류,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가공품도 원료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품목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표 4-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분류 현황(2단위 기준)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평균
1류	57	60	35	51	98	53	55	55	48	78	59.0
2류	125	80	62	113	223	187	60	232	94	147	132.3
4류	264	52	43	148	45	129	43	174	51	93	104.2
5류	37	32	72	19	77	40	26	21	53	106	48.3
6류	49	70	20	21	33	80	14	42	74	51	45.4
7류	232	89	84	119	210	198	81	107	131	131	138.2
8류	150	70	87	94	155	143	79	128	78	207	119.1
9류	54	35	138	71	43	56	34	42	36	54	56.3
10류	59	28	35	45	58	49	76	55	32	76	51.3
11류	48	37	36	94	56	74	34	83	45	53	56.0
12류	144	115	110	61	143	118	63	77	92	124	104.7
13류	24	37	58	21	29	16	28	18	25	37	29.3
14류	15	9	27	16	11	11	11	8	21	13	14.2
15류	94	70	120	81	81	96	92	125	91	134	98.4
16류	157	43	34	51	64	135	40	92	24	76	71.6
17류	76	30	38	49	32	64	28	47	33	48	44.5
18류	83	14	15	30	13	27	14	27	33	50	30.6
19류	96	28	33	142	22	255	29	51	50	73	77.9
20류	257	84	69	259	98	229	76	311	108	193	168.4
21류	114	38	42	105	21	82	24	42	64	99	63.1
22류	100	48	64	54	36	145	32	177	52	76	78.4
23류	60	39	70	40	32	124	29	66	44	71	57.5
24류	187	14	44	11	16	28	15	30	25	21	39.1
29류	2	2	2	2	2	2	2	5	2	2	2.3
33류	40	29	79	24	25	19	19	31	30	63	35.9
35류	22	23	16	17	14	44	14	25	28	31	23.4
38류	2	2	3	1	2	2	2	8	2	4	2.8
41류	46	18	25	40	51	24	14	19	28	71	33.6
43류	18	12	6	10	14	16	6	9	12	8	11.1
50류	4	4	12	19	10	4	4	4	16	4	8.1
51류	45	33	17	12	39	11	10	17	11	58	25.3
52류	22	9	11	5	7	9	5	6	10	21	10.5
53류	6	10	6	7	6	6	6	7	9	8	7.1
합계	2,689	1,264	1,513	1,832	1,766	2,476	1,065	2,141	1,452	2,281	1,847.9

2. HS 4단위 품목분류 현황

우리나라의 세부품목 분류 실태는 품목별 4단위 기준의 HS 코드 세분화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HS 1류에서 24류에 포함되는 4단위 HS 코드 기준 세부품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임산물 24류 중 우리나라는 육류제품(2류), 낙농제품(4류), 과일·견과류(8류), 커피·향신료류(9류), 육·어류 조제품류(16류), 당류·설탕과자류(17류),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 음료·알콜류(22류) 등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4단위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 세부품목 별로 살펴보면 채소류(7류), 코코아류(18류), 채소·과일의 조제품류(20류), 음료·알콜류(22류), 사료류(23류), 담배류(24류) 등에 속하는 일부 세부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세부품목 분류수는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세부 품목 분류 수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류제품류(2류)의 경우 특히 쇠고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매우 단순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에 있어서 캐나다가 각각 36개와 40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각각 22개와 20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를 합하여 6개 품목의 코드로 세분되어 있어 멕시코, 인도, 태국과 더불어 조사대상국 중 가장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제품류(4류)의 경우에도 치즈와 커드(0406호)에 있어서 가장 세분화된 미국이 15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쳐 무려 2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61개)와 EU(50개)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같은 류에 속하는 버터(0405호)의 경우 국가간의 차이가 치즈와 커드(0406호)에 비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17개), 일본(13개), 인도(13개), EU(10개)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3개의 HS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소류(7류)는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세분화가 많이 된 품목이고 세부품목들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서 품목 중요도에 비해 품목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토마토(0702호)의 경우 가장 많이 세분화된 미국이 14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파·마늘류(0703호)의 경우에도 중국이 2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6개보다 4배 이상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단순화 문제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국제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쌀(1006호)에도 나타나고 있다. 쌀(1006호)의 경우 태국이 6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와 중국도 30여개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쳐 이들 국가와 세분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1006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분화 수준은 미국(13개), 캐나다(12개)에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타피오카(1903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의 세부 품목에 있어서 가장 세분화가 잘된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는 품목분류 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세부 품목에 있어서 미국, 일본,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곡물·밀크의 조제품(1901호)의 경우 일본, 캐나다, 미국이 각각 80개, 60개, 51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쳐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이들 국가와 최소 5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천연꿀(0409호), 오이류(0707호),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호), 차류(0902호), 낙화생(1202호), 해바라기씨(1206호), 락·천연검·수지류(1301호), 소시지류(1601호) 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2008류), 맥주(2203호), 포도주(2204호), 사료용 조제품(2309호), 잎담배(2401호) 등의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품목에 비해 4단위 HS 코드 분류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세분화된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품목분류의 정도가 절대적·상대적으로 상당히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포도주(2204호)의 경우 EU는 94개 품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8개에 비해 약 12배나 품목분류 수가 많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이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편이다. 캐나다는 5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2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잎담배(2401호)의 경우에도 미국이 가장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 무려 137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EU와 인도도 약 20여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이 천연꿀(0409호), 오이류(0707호), 해바라기씨(1206호)에서 각각 5개, 7개,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서 1개씩의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맥주(2203호)의 경우에도 캐나다가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EU 등이 2,000여개 이상의 품목을 가지고 있어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중국이 약 1,800여개의 품목분류 수로 중간 수준의 세분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 멕시코, 태국 등의 품목분류 수는 1,500여개 또는 1,500개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 등의 5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의 품목분류 세분화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품목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 EU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육류제품(2류)과 밀크와 크림, 버터, 치즈 등을 포함하는 낙농제품류(4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들 국가는 대부분의 육·어류 조제품(16류)과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그리고 음료·알콜류(22류) 중에서 특히 포도주 등의 조제식품류에 있어서도 품목 세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용설육(0206호), 밀크와 크림(0402호, 농축·설탕 첨가), 유장(0404호), 곡물의 분쇄물·조분·펠리트(1103호), 전분과 이눌린(1108호), 곡분·밀크의 조제품(1901호), 커피·차·마태의 조제품(2101호) 등의 세부품목에서 세분화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

중국의 경우 일부 산 동물류(01류)와 육류제품(2류)에 속하는 세부품목에서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국은 말(0101호), 돼지(0103호), 기타의 산 동물(0106호, 소, 돼지, 말, 양, 가금류를 제외), 돼지고기(0203호), 양고기(0204호), 기타육류(0208호) 등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과실·견과류(08류) 중 기타 견과류(0802호), 대추야자(0804호), 감귤류(0805호)와 채소류(7류) 중 파·마늘류(0703호), 기타 신선채소류(0709호), 일시 저장처리 채소(0711호)에서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껍질이 붙은 조란(0407호), 빵와 혼코어(0506호), 동물성 향료·의약품의 기타생산품(0510호), 향료·의료용 식물성 생산품(1211호), 채유용 종자·인삼(1212호), 유채유·겨자유(1514호) 등도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은 기타의 산 식물(0602호), 건조채소(0712호), 설탕 처리한 채소·과실(2006호), 호모·베이킹 파우더(2102호) 등의 일부 품목에서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많은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5개국(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세부 품목간 세분화 정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민감품목의 분류 현황

각국의 HS 품목코드는 6단위까지 공통이고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자국의 실정에 맞게 품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7단위 이하의 HS 품목코드 분류현황을 다른 나라의 분류현황과 비교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서는 우리나라의 7단위 이하의 HS 품목코드 분류현황을 전반적인 HS 품목군별 품목분류 세분화 정도가 높은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최세균 외(2006)에 의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의 가정하에 선정된 우리나라의 민감 농산물²⁷⁾과 앞서 파악된 2단위와 4단위 HS 품목분류 현황에 의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품목분류 세분화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품목을 바탕으로 7단위 이하의 HS 품목코드 세부품목 분류현황을 살펴보았다.

쌀(1006호)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농산물 시장개방을 위한 국제 협상시에 관세 철폐 예외가 고려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쌀(1006호)의 HS 코드 품목분류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나라는 HS 10단위 코드에서 쌀(1006호)을 그 종류와 도정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세부품목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분류되어진 품목으로는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쇠미 등이 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8단위 기준의 HS 코드에서 쌀(1006호)을 도정 정도(예; Rice in the husk, Husked Rice, Semi milled 등), 모양(예; Round grain, Long grain 등), 크기(예;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가공 방법(예; parboiled rice) 등의 기준을 고려하면서 34개 품목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최세균 외(2006)는 다양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총 33개의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품목선정에 고려된 기준으로는 부가가치, 지역집중도, 경쟁력, 시장보호 정도, 자급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품목별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피해액의 비율, 교역가능성 등이 있다. 33개 민감품목중 초민감품목으로 미곡이 선정되었으며, 고민감품목으로는 쇠고기, 고추, 인삼, 낙농품, 마늘, 감귤, 포도, 사과, 배가 선정되었다. 또한, 돼지고기, 닭고기, 대두, 복숭아, 딸기, 참깨, 단감, 천연꿀, 양파, 엽연초가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고, 토마토, 느타리 버섯, 감자, 배추, 오이, 수박, 무, 파, 호박, 고구마, 참외, 상추, 시유가 포함되었다.

표 4-23. 한국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1006100000	벼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찹쌀
1006400000	쇄미

표 4-24. EU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8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100610 Rice in the husk(paddy or rough)	10061010	For sowing
	10061021	Other: Parboiled:Round grain
	10061023	Other: Parboiled:Medium grain
	10061025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1027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1092	Other: Round grain
	10061094	Other: Medium grain
	10061096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20 Husked (Brown) Rice	10061098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2011	Parboiled: Round grain
	10062013	Parboiled: Medium grain
	10062015	Parboiled: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2017	Parboiled: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2092	Other: Round grain
	10062094	Other: Medium grain
	10062096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2098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표 4-24. EU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10063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10063021	Semi-milled rice: Parboiled: Round grain
	10063023	Semi-milled rice: Parboiled: Medium grain
	10063025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3027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3042	Other: Round grain
	10063044	Other: Medium grain
	10063046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3048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3061	Wholly milled rice: Parboiled: Round grain
	10063063	Wholly milled rice: Parboiled: Medium grain
	10063065	Wholly milled rice: Parboiled: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3067	Wholly milled rice: Parboiled: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3092	Other: Round grain
	10063094	Other: Medium grain
10063096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10063098	Other: Long grain: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100640	10064000	Broken rice

축산물 중 쇠고기는 고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져 있다. 쇠고기의 2단위와 4단위 기준의 HS 코드 품목분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품목 분류 세분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단위 기준 HS 코드 품목 분류에서 쇠고기는 크게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로 분류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의 각각의 품목군에서 3개의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대상국 중 가장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에 대해 각각 36개와 40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10단위 HS 코드 세부품목 분류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 모두 절단방식과 뼈의 포함여부를 주요 기준(예; 도체와 이분도체, 뼈채로 절단한 것)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류한 반면, 캐나다의 경우 도축 대상 소의 연령(예; Veal), 도축부위(예; rib, hip, loin 등), 뼈의 포함여부(예; bone in, boneless)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표 4-25. 한국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120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01300000	뼈없는 것

표 4-26. 한국의 냉동 쇠고기(0202)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220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02300000	뼈없는 것

표 4-27. 캐나다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201101010	Veal,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esh or chilled
0201101090	Bovine carcasses and half-carcasses, except veal, fresh or chilled, w/a commitment
0201102010	Veal,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102090	Bovine carcasses and half-carcasses, except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201010	Veal cuts, bone in, fresh or chilled, within access commitment
0201201020	Bovine cuts, bone in, processed, except veal, fresh or chilled, within access commitment
0201201091	Bovine rib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201092	Bovine hip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201093	Bovine loin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201099	Bovine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chilled, nes, w/a
0201202010	Veal cuts, bone in,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202020	Bovine cuts, bone in, processed, exc veal, fresh or chilled, o/a commitment
0201202091	Bovine rib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o/a commitment
0201202092	Bovine hip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o/a commitment
0201202093	Bovine loin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o/a commitment
0201202099	Bovine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chilled, nes, w/a
0201301010	Veal cuts, boneless, fresh or chilled, within access commitment
0201301020	Bovine cuts, boneless processed, except veal, fresh or 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30	Bovine fore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40	Bovine hind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91	Bovine brisket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92	Bovine chuck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93	Bovine rib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94	Bovine hip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95	Bovine loin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1099	Bovine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chilled w/a commitment
0201302010	Veal cuts, boneless,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20	Bovine cuts, boneless, processed, except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30	Bovine fore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40	Bovine hind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91	Bovine brisket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92	Bovine chuck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93	Bovine rib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94	Bovine hip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95	Bovine loin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0201302099	Bovine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esh or chilled, over access commitment

표 4-28. 캐나다의 냉동 쇠고기(0202)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세부 품목
0202101010	Veal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ozen, within access commitment
0202101090	Bovine carcasses and half-carcasses, except 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102010	Veal,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102090	Bovine carcasses and half-carcasses, except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201010	Veal cuts, bone in, frozen, within access commitment
0202201020	Bovine cuts, bone in, processed, except veal, frozen, within access commitment
0202201091	Bovine rib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201092	Bovine hip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201093	Bovine loin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201099	Bovine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nes, w/a
0202202010	Veal cuts, bone in,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202020	Bovine cuts, bone in, processed, exc veal, frozen, o/a commitment
0202202091	Bovine rib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ozen, o/a commitment
0202202092	Bovine hip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ozen, o/a commitment
0202202093	Bovine loin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veal, frozen, o/a commitment
0202202099	Bovine cuts, bone in,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nes, w/a
0202301010	Veal cuts, boneless, frozen, within access commitment
0202301020	Bovine cuts, boneless processed, except 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30	Bovine fore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40	Bovine hind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1	Bovine brisket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2	Bovine chuck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3	Bovine rib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4	Bovine flank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5	Bovine eye/outside/inside round, outside flat & sirlion tip, boneless,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6	Bovine hip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7	Bovine loin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w/a commitment
0202301099	Bovine cuts, boneless, except precessed or veal, frozen, nes, within access commitment
0202302010	Veal cuts, boneless, frozen, over aces commitment
0202302020	Bovine cuts, boneless, processed, except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30	Bovine fore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40	Bovine hindquarter,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1	Bovine brisket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2	Bovine chuck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3	Bovine rib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4	Bovine flank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5	Bovine eye/inside/outside round, outside flat & sirloin tip,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6	Bovine hip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nes,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7	Bovine loin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over access commitment
0202302099	Bovine cuts, boneless, except processed or veal, frozen, nes, over access commitment

이러한 품목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품목의 경우 HS 코드를 1개만 보유하고 있어 품목분류의 절대적 단순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민감품목에 분류된 천연꿀(0409호)은 토마토(0702호)와 오이(0707호)처럼 저민감품목에 속한 품목과 같이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 있어서 각각 1개씩의 HS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천연꿀(0409호), 오이류(0707호), 토마토(0702호)에서 각각 5개, 7개, 12개의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천연꿀(0409호)의 경우 색깔에 따라(예; Amber or darker, White or lighter), 오이류(0707호)의 경우 시기별, 재배지별(예; Greenhouse), 토마토의 경우 시기별, 품종별(예; cherry tomato) 등을 고려하면서 품목들을 보다 세분화 하고 있다.

표 4-29. 미국의 천연꿀(0409)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409000025	comb honey and honey packaged for retail sale
0409000042	White or lighter
0409000044	Extra light amber
0409000062	Light amber
0409000064	Amber or darker

표 4-30. 미국의 오이류(0707)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70700200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1 in any year to the last day of the following February, inclusive
070700400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to April 30, inclusive, in any year
0707005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May 1 to June 30, inclusive, or the period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0, inclusive, in any year
0707005010	Greenhouse
0707005090	Other
0707006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 to August 31, inclusive, in any year
0707006010	Greenhouse
0707006090	Other

표 4-31. 미국의 토마토(0702)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702002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to July 14, inclusive, or the period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14, inclusive, in any year
0702002010	Greenhouse/other
0702002035	Cherry
0702002045	Grape
0702002065	Roma (plum type)
0702002099	Other
0702004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5 to August 31, inclusive, in any year
0702004030	Cherry
0702004045	Grape
0702004060	Roma (plum type)
0702004099	Other
07020060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November 15, in any year, to the last day of the following February, inclusive
0702006010	Greenhouse/other
0702006035	Cherry
0702006045	Grape
0702006065	Roma (plum type)
0702006099	Other

낙농제품류(4류) 중에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파악된 대표적 품목으로는 치즈와 커드(0406호)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치즈와 커드(0406호)에서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15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치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10단위 HS 코드에서 치즈의 품종(예; cheddar, colby, swiss 등)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세밀히 분류를 하고 있다.

표 4-32. 한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40610100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
0406102000	커드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
0406900000	기타 치즈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분류 현황(8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4061002	Chongos, 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1004	Chongos, 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 subject to add. US note 16 to Ch. 4
04061008	Chongos, 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ote 16 to Ch. 4
04061012	Fresh (unripened/uncured) cheese (ex chongos), incl whey cheese and curd, subj to gen. note 15 of the HTS, not GN15
04061014	Fresh (unripened/uncured) blue-mold cheese, cheese/subs for cheese cont or procd fr blue-mold cheese, subj to Ch4 US note 17, not GN15
04061018	Fresh (unripened/uncured) blue-mold cheese, cheese/subs for cheese cont or proc fr blue-mold cheese, not subj to Ch4 US note 17 or GN15
04061024	Fresh (unripened/uncured) cheddar cheese, cheese/subs for cheese cont or proc from cheddar cheese, subj to Ch 4 US note 18, not GN15
04061028	Fresh (unripened/uncured) cheddar cheese, cheese/subs for cheese cont or proc from cheddar cheese, not subj to Ch4 US note 18, not GN15
04061034	Fresh (unripened/uncured) american-type cheese, cheese cont or proc. fr american-type, subj to add. US note 19 to Ch.4, not GN15
04061038	Fresh (unripened/uncured) american-type cheese, cheese cont or proc. fr american-type, not subj to add. US note 19 to Ch.4, not GN15
04061044	Fresh (unripened/uncured) edam and gouda cheeses, cheese/subs for cheese cont or processed therefrom, subj to Ch4 US note 20, not GN15
04061048	Fresh (unripened/uncured) edam and gouda cheeses, cheese/subs for cheese cont or processed therefrom, not sub to Ch4 US note 20, not GN15
04061054	Fresh (unripened/uncured) Italian-type cheeses from cow milk, cheese/substitutes cont or proc therefrom, subj to Ch4 US nte 21, not GN15
04061058	Fresh (unrip./uncured) Italian-type cheeses from cow milk, cheese/substitutes cont or proc therefrom, not subj to Ch4 US note 21 or GN15
04061064	Fresh (unrip./uncured) Swiss/emmentaler cheeses w/o eyes, gruyere-process and cheese cont/proc. from, subj to Ch4 US note 22, not GN15
04061068	Fresh (unripened/uncured) Swiss/emmentaler cheeses exc eye formation, gruyere-process cheese and cheese cont or proc. from such, not subj ..
04061074	Fresh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neosi, w/0.5% or less by wt. of butterfat, descr in add US note 23 to Ch 4, not GN15
04061078	Fresh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neosi, w/0.5% or less by wt. of butterfat, not descr in add US note 23 to Ch 4, not GN15
04061084	Fresh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 cont. cows milk, neosi, o/0.5% by wt. of butterfat, descr in add US note 16 to Ch 4, not GN15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 분류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04061088	Fresh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 cont. cows milk, neosi, o/0.5% by wt. of butterfat, not descr in add US note 16 to Ch 4, not GN 15
04061095	Fresh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 not cont. cows milk, neosi, o/0.5% by wt. of butterfat
04062010	Roquefort cheese, grated or powdered
04062015	Stilton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4 to Ch. 4
04062022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or Stilton),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2024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or Stilton),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4
04062028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or Stilton),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te 15 or add. US note 17 to Ch.4
04062029	Cheddar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2031	Cheddar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8 to Ch. 4
04062033	Cheddar cheese,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ote 18 to Ch. 4
04062034	Colby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2036	Colby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04062039	Colby cheese, grated or powdered, not describ. in gen. note 15 or add. US note 19 to Ch. 4
04062043	Edam and gouda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2044	Edam and gouda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 4
04062048	Edam and gouda cheese,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te 20 to Ch. 4
04062049	Romano (cows milk), reggiano, provolone, provoletti, sbrinz and goya,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to HTS
04062051	Romano, reggiano, provolone, provoletti, sbrinz and goya, made from cow's milk,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4
04062053	Romano, reggiano, provolone, provoletti, sbrinz and goya, made from cow's milk, grated or powdered, not subj to Ch4 US nte 21 or GN15
04062054	Reggiano, provolone, provoletti, sbrinz and goya cheeses, not made from cow's milk, grated or powdered
04062055	Cheeses made from sheep's milk, including mixtures of such cheeses, grated or powdered
04062056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2057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bryndza, gjetost, gammelost, nokkelost or roquefort cheeses, grated or powdered
04062061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4
04062063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4
04062065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cheddar cheese,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8 to Ch. 4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 분류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04062067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cheddar cheese,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8 to Ch. 4
04062069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american-type cheese (except cheddar),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04062071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american-type cheese (except cheddar),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04062073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edam or gouda cheeses,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4
04062075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edam or gouda cheeses,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 4
04062077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italian-type cheeses made from cow's milk,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2079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italian-type cheeses made from cow's milk,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2081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swiss, emmentaler or gruyere-process cheeses,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te 22 to Ch.4
04062083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swiss, emmentaler or gruyere-process cheeses,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te 22 to Ch. 4
04062085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n/o 0.5% by wt. of butterfa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3 to Ch. 4
04062087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n/o 0.5% by wt. of butterfa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23 to Ch. 4
04062089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o/0.5% by wt of butterfat, w/cow's milk,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6 to Ch. 4
04062091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o/0.5% by wt of butterfat, w/cow's milk,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6 to Ch. 4
04062095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o/0.5% by wt of butterfat, not containing cow's milk, grated or powdered
04063005	Stilton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4 to Ch. 4
04063012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3014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 4
04063018	Blue-veined cheese (except roquefort),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ote 17 to Ch. 4
04063022	Cheddar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3024	Cheddar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8 to Ch. 4
04063028	Cheddar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in add US note 18 to Ch. 4
04063032	Colby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3034	Colby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 분류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04063038	Colby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ote 19 to Ch. 4
04063042	Edam and gouda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3044	Edam and gouda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 4
04063048	Edam and gouda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ote 20 to Ch. 4
04063049	Gruyere-process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3051	Gruyere-process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2 to Ch. 4
04063053	Gruyere-process cheese,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add. US note 22 to Ch. 4
04063055	Processed cheeses made from sheep's milk, including mixtures of such cheeses, not grated or powdered
04063056	Cheese (including mixtures) nesoi, processed,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3057	Processed cheese containing or processed from bryndza, gjetost, gammelost, nokkelost or roquefort, not grated or powdered, not GN15
04063061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blue-veined cheese (ex roquefort), not 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 4, not GN15
04063063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blue-veined cheese (ex roquefort), not 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 4, not GN15
04063065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cheddar cheese, not 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8, not GN15
04063067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cheddar cheese, not 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8, not GN15
04063069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american-type cheese (ex cheddar), not 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not GN15
04063071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american-type cheese (ex cheddar), not 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not GN15
04063073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 edam or gouda, not 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 4, not GN15
04063075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om edam or gouda, not 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 4, not GN15
04063077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om italian-type, not 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not GN15
04063079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om italian-type, not 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not GN15
04063081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om swiss, emmentaler or gruyere-process, n/grated/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22 to Ch. 4, not GN15
04063083	Processed cheese cont/procd from swiss/emmentaler/gruyere-process, n/grated/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22 to Ch. 4, not GN15
04063085	Processed cheese (incl. mixtures), nesoi, n/o 0.5% by wt. butterfat,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Ch4 US note 23, not GN15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 분류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04063087	Processed cheese (incl. mixtures), nesoi, n/o 0.5% by wt. butterfat,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 to Ch 4 US note 23 or not GN15
04063089	Processed cheese (incl. mixtures), nesoi, w/cow's milk, not grated or powdered, subject to add US note 16 to Ch. 4, not GN15
04063091	Processed cheese (incl. mixtures), nesoi, w/cow's milk, not grated or powdered, not subject to add US note 16 to Ch. 4, not GN15
04063095	Processed cheese (incl. mixtures), nesoi, w/o cows milk, not grated or powdered, not GN15
04064020	Roquefort cheese in original loaves, not grated or powdered, not processed
04064040	Roquefort cheese, other than in original loaves, not grated or powdered, not processed
04064044	Stilton cheese, nesoi, in original loaves, subject to add. US note 24 to Ch. 4
04064048	Stilton cheese, nesoi, not in original loaves, subject to add. US note 24 to Ch. 4
04064051	Blue-veined cheese, nesoi, in original loaves,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4052	Blue-veined cheese, nesoi, not in original loaves,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4054	Blue-veined cheese, nesoi, in original loaves,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 4
04064058	Blue-veined cheese, nesoi, not in original loaves, subject to add. US note 17 to Ch. 4
04064070	Blue-veined cheese,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or to add. US note 17 to Ch. 4
04069005	Bryndza cheese, not grated or powdered, not processed
04069006	Cheddar cheese, neos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04069008	Cheddar cheese, neosi, subject to add. US note 18 to Ch. 4
04069012	Cheddar cheese,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or to add. US note 18 to Ch. 4
04069014	Edam and gouda cheese, neso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9016	Edam and gouda cheese, nesoi, subject to add. US note 20 to Ch. 4
04069018	Edam and gouda cheese,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or to add. US note 20 to Ch. 4
04069020	Gjetost cheese from goat's milk, whey or whey obtained from a mixture of goat's & n/o 20% cow's milk, not grated, powdered or processed
04069025	Gjetost cheese, made from goats' milk, whey or whey obtained from a mixture of goats' & n/o 20% cows milk, not grated, powdered or processed
04069028	Goya cheese, neso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9031	Goya cheese from cow's milk, not in original loaves, nesoi,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9032	Goya cheese from cow's milk, not in original loaves,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to add. US note 21 to Ch. 4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 분류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04069033	Goya cheese not from cow's milk,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9034	Sbrinz cheese, neso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9036	Sbrinz cheese from cow's milk, nesoi,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9037	Sbrinz cheese from cow's milk,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9038	Sbrinz cheese not from cow's milk,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9039	Romano from cows milk, Reggiano, Parmeson, Provolne, and Provoletti cheese, neso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9041	Romano, Reggiano, Parmeson, Provolne, and Provoletti cheese, nesoi, from cow's milk, subject to add. US note 21 to Ch. 4
04069042	Romano, Reggiano, Parmeson, Provolne, and Provoletti cheese, nesoi, from cow's milk, not subj to GN 15 or Ch4 US note 21
04069043	Reggiano, Parmeson, Provolne, and Provoletti cheese, nesoi, not from cow's milk, not subject to gen. note 15
04069044	Swiss or emmenthaler cheese with eye formation, neso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04069046	Swiss or emmenthaler cheese with eye formation, nesoi, subject to add. US note 25 to Ch. 4
04069048	Swiss or emmenthaler cheese with eye formation,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to add. US note 25 to Ch. 4
04069049	Gammelost and nokkelost cheese, nesoi
04069051	Colby cheese, nesoi, subject to gen. note 15 of the HTS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04069052	Colby cheese, nesoi, subject to add. US note 19 to Ch.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04069054	Colby cheese, nesoi, not subject to gen. note 15 or to add. US note 19 to Ch. 4
04069056	Cheeses, nesoi, from sheep's milk in original loaves and suitable for grating
04069057	Pecorino cheese, from sheep's milk, in original loaves, not suitable for grating
04069059	Cheeses, substitute for cheese (including mixtures of cheeses), nesoi, made from sheep's milk
04069061	Cheeses & substitutes for cheese (incl. mixtures) w/romano/reggiano/parmesan/provolone/etc from cows milk, subj. to gen. note 15
04069063	Cheeses & substitutes for cheese (incl. mixtures) not cont. romano/reggiano/parmesan/provolone/etc from cows milk, subj. to gen. note 15
04069066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romano/reggiano/parmesan/provolone/etc, f/cow milk, subj. Ch4 US note 21, not GN15

표 4-33. 미국의 치즈·커드(0406) 품목 분류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04069068	Cheeses & subst. for cheese(incl. mixt.), nesoi, w/romano/reggiano/parmesan/provolone/etc, f/cow milk, not subj. Ch4 US note 21, not GN15
04069072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blue-veined cheese, subj. to add. US note 17 to Ch.4, not GN15
04069074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blue-veined cheese, not subj. to add. US note 17 to Ch.4, not GN15
04069076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cheddar cheese, subj. to add. US note 18 to Ch.4, not GN15
04069078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cheddar cheese, not subj. to add. US note 18 to Ch.4, not GN15
04069082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Am. cheese except cheddar, subj. to add. US note 19 to Ch.4, not GN15
04069084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Am. cheese except cheddar, not subj. to add. US note 19 to Ch.4, not GN15
04069086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edam or gouda cheese, subj. to add. US note 20 to Ch.4, not GN15
04069088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edam or gouda cheese, not subj. to add. US note 20 to Ch.4, not GN15
04069090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swiss, emmentaler or gruyere, subj. to add. US note 22 to Ch.4, not GN15
04069092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 or from swiss, emmentaler or gruyere, not subj. Ch4 US note 22, not GN15
04069093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butterfat n/o 0.5% by wt, subject to add. US note 23 to Ch. 4, not GN15
04069094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butterfat n/o 0.5% by wt, not subject to add. US note 23 to Ch. 4, not GN15
04069095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 including mixtures containing/processed from siss/emmentaler/etc, see addl U.S. note 22 (chap.4) & Prov.
04069097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cows milk, w/butterfat o/0.5% by wt, not subject to Ch4 US note 16, not GN15
04069099	Cheeses & subst. for cheese (incl. mixt.), nesoi, w/o cows milk, w/butterfat o/0.5% by wt, not GN15

신선 과일 중에서 사과와 배는 같은 품목군(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 0808호)에 속해 있으며 모두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하지만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호)를 10단위 기준 HS 코드에서 3개 품목으로만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캐나다는 22개의 HS 코드로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10단위 HS 코드에서 사과

표 4-34. 한국의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808100000	사과(신선)
0808201000	배(신선)
0808202000	마르멜로(신선)

표 4-35. 캐나다의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808101011	Apples, Empire,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2	Apples, Golden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3	Apples, Granny Smit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4	Apples, Ida red,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5	Apples, Mckintos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6	Apples, Red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7	Apples, Gala,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9	Apples, Gala, fresh, nes,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91	Apples, Empire,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2	Apples, Golden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3	Apples, Granny Smit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4	Apples, Ida red,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5	Apples, Mckintos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6	Apples, Red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7	Apples, Gala,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9	Apples, Gala, fresh, nes,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9000	Apples, fresh, nes, except in their natural state
0808201000	Pears, fresh, for processing
0808202100	Pears, fresh, except for processing
0808202900	Pears, fresh, nes
0808203000	Quinces, fresh

와 배를 각각 1개의 단일 세부품목으로만 분류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10단위 HS 코드에서 품종(예; Golden Delicious, Gala 등), 가공유무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고민감 품목인 포도(0806)가 신선 포도(080610)와 건조포도(080620)로 나뉘어서 각각 1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고, 민감품목인 복숭아(080930)에서 1개의 HS 코드, 저민감품목인 수박(080711)에서 1개의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등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주요 과일들을 전반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마늘류(0703호)는 고민감품목인 마늘, 민감품목인 양파, 저민감품목인 파를 포함한다. 과·마늘류(0703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6개의 HS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12개)와 중국(26개)의 세분화 정도에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부품목별로 살펴보면 마늘의 경우 10단위 HS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캐나다 보다 1개의 HS 코드를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마늘을 탈피한 것(0703201000)과 기타(0703209000)로 하여 2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캐나다는 마늘(0703200000)을 단일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10단위 HS 코드에서 주로 마늘 뿌리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마늘의 줄기 부분도 포함하여 8단위 HS 코드에서 마늘을 부위별로 보다 세밀하게 마늘 뿌리(Bulb)와 대(Stems and seedling) 부분 그리고 기타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양파와 쪽파(070310)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단순히 양파와 쪽파의 두 품목으로 나누어서 2개의 10단위 HS 코드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캐나다는 양파 및 샬럿(Shallot)을 보다 세분화하여 총 9개의 10단위 HS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양파와 샬럿(070310)에 대해 중국은 8단위 HS 코드 분류에서 우리나라의 10단위 HS 코드와 동일한 분류를 하고 있다.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070390)의 경우에도 10단위 HS 코드에서 단순히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로 나누어서 2개 품목으로 세부 분류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부추류(Scallion, 07039020)를 별도로 분류하여 8단위 HS 코드에서 3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8개의 과·마늘류(0703호) 8단위 기준 HS 코드를 보다 더 세분하여 최종적으로 26개의 10단위 HS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표 4-36. 한국의 과·마늘류(0703)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70310 (양파와 쪽파)	0703101000	양파
	0703102000	쪽파
070320 (마늘)	0703201000	탈피한 것
	0703209000	기타
07039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0703901000	리크
	0703909000	기타

표 4-37. 캐나다의 파·마늘류(0703)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703101000 Onion sets, fresh or chilled
	0703102100 Onions, Spanish-type, for processing: fresh or chilled
	0703102900 Other
070310 (Onions and Shallots)	0703103100 Onions or shallots, green: fresh or chilled (imported during such period which may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periods specified by order of the Minister or the Deputy Minister, not exceeding a total of 22 weeks in any 12 month period ending 31st March)
	0703103200 Onions or shallots, green: fresh or chilled (Imported during such period, which may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periods, specifi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or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not exceeding a total of 22 weeks in any 12 month period ending 31st March)
	0703103300 Onions or shallots, green: fresh or chilled, o/t Mexico tariff (Other, imported during such period, which may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periods, specifi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or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not exceeding a total of 22 weeks in any 12 month period ending 31)
	0703103900 Other
	0703104100 Dry shallots
	0703104900 Other
	0703109100 Other, for Mexico tariff
	0703109200 Other, for Chile tariff
	0703109300 Other, o/t Chile tariff
	0703109900 Other
0703200000	Garlic, fresh or chilled
070390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0703900010 Leeks, fresh or chilled
	0703900090 Other alliaceous vegetables

표 4-38. 중국의 파·마늘류(0703) 품목분류 현황(8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70310 (Onions and Shallots)	07031010	Onions, fresh or chilled
	07031020	Shallots, fresh or chilled
070320 (Garlic)	07032010	Bulbs of garlic, fresh or chilled
	07032020	Garlic stems and garlic seedlings, fresh or chilled
	07032090	Other garlic, fresh or chilled
070390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07039010	Leeks, fresh or chilled
	07039020	Scallion, fresh or chilled
	07039090	Other alliaceous vegetables, fresh or chilled

잎담배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이다. 잎담배(2401호)의 경우 조사대상국 중 미국이 가장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 무려 137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잎담배를 종자(예; 황색종, 버어리종 등)와 주맥제거 유무 등을 주로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8단위 HS 코드에서 품목을 분류하는데 있어 종자와 주맥제거 뿐만 아니라 품질(예; Wrapper tobacco)을 고려하고 있으며, 잎담배를 제외한 부산물(Tobacco refuse, 240130)도 출처(예; from cigar leaf, from oriental or turkish type 등)와 용도(예; for cigarette), 그리고 처리방법(예; cut, ground or pulverized)에 따라 보다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 단위 HS 코드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최종적으로 137개의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 4-39. 한국의 잎담배(2401)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2401101000	잎담배(황색종)
2401102000	잎담배(버어리종)
2401103000	잎담배(오리엔트종)
2401109000	잎담배(기타)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401202000	잎담배(버어리종/주맥제거)
2401203000	잎담배(오리엔트종/주맥제거)
2401209000	잎담배(기타/주맥제거)
2401301000	잎의 주맥
2401302000	잎부스러기
2401309000	담배부산물기타

표 4-40. 미국의 잎담배(2401) 품목분류 현황(8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24011021	Wrapper tobacco, not stemmed/stripped
24011029	Tobacco (o/t wrapper tobacco), cont ov 35% wrapper tobacco, not stemmed/stripped
24011044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oriental or turkish type, cigarette leaf
24011048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oriental or turkish type, other than cigarette leaf
24011053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cigar binder and filler
24011061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flue-cured burley etc, not for cigarettes
24011063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flue-cured burley, etc., described in addl US note 5 to chap 24
24011065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flue-cured burley, etc., other nesi
24011095	Tobacco, not stemmed or stripped, not or not over 35% wrapper tobacco, not flue-cured burley, etc., other nesi
24012005	Leaf tobacco, the product of two or more countries or dependencies, when mixed or packed together, partly or wholly stemmed, not threshed
24012014	Wrapper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 (stripped), not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24012018	Tobacco containing over 35% wrapper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 (stripped), not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24012023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or n/over 35% wrapper, oriental or turkish, cigarette lea
24012026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or n/over 35% wrapper, not cigarette leaf
24012029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or n/over 35% wrapper, cigar binder and filler
24012031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 not or n/over 35% wrapper, flue-cured burley etc, not for cigaret
24012033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 not or n/over 35% wrapper, des. in addl US note 5 to ch. 24
24012035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 not or n/over 35% wrapper, flue-cured burley etc, other nesi
24012057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n/threshed or similarly proc., not or n/over 35% wrapper, not flue-cured burley etc., other nesi

표 4-40. 미국의 잎담배(2401) 품목분류 현황(8단위)<계속>

HS 코드	세부 품목
24012060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 (stripped),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from cigar leaf
24012075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from cigar leaf , oriental or turkish
24012083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from cigar leaf ; not oriental or turkish, not for cigarett
24012085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from cigar leaf , described in addl US note 5 to chap 24
24012087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not from cigar leaf, not oriental or turkish, other nesi
24013003	Tobacco refuse, tobacco stems, not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06	Tobacco refuse, from cigar leaf, tobacco stems,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09	Tobacco refuse, from cigar leaf, other than tobacco stems
24013013	Tobacco refuse, from oriental or turkish type, tobacco stems, not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16	Tobacco refuse, from oriental or turkish type, tobacco stems,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19	Tobacco refuse, from oriental or turkish type, other than tobacco stems
24013023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other than for cigarettes, tobacco stems, not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25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other than for cigarettes, tobacco stems,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27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other than for cigarettes, other than tobacco stems
24013033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for cigarettes, described in addl US note 5 to chap 24, tobacco stems, not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35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for cigarettes, described in addl US note 5 to chap 24, tobacco stems, cut, ground or pulverized
24013037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for cigarettes, described in addl US note 5 to chap 24, not tobacco stems
24013070	Tobacco refuse, from other tobacco, for cigarettes, other nesi

이밖에도 민감품목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품목분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단순한 품목으로는 포도주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도주(2204호)의 경우 가장 세분화된 EU는 8단위 HS 코드 기준으로 94개 품목을 가

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HS 코드 기준으로 8개 품목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도주를 단순히 색깔 위주(예; 붉은 포도주, 흰포도주 등)로 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EU는 포도주의 색깔은 물론, 원산지(예; Alsace, Tuscany 등), 알콜도수(예; 13% 이하, 13%-18% 등)등을 고려하여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표 4-41. 한국의 포도주(2204)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220421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포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11000	붉은 포도주
	2204212000	흰 포도주
	2204219000	기타
220429(기타)	2204291000	붉은 포도주
	2204292000	흰 포도주
	2204299000	기타
2204300000		기타 포도즙

표 4-42. EU의 발포성 포도주(220410) 품목분류 현황(8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220410 (Sparkling wine)	22041011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not less than 8,5 % vol:Champagne
	22041019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not less than 8,5 % vol:Other
	22041091 Other:Asti spumante
	22041099 Other:Other

표 4-43. EU의 포도주(220429) 품목분류 현황(8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22042910	Wine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subheading 2204 10 in bottles with mushroom. Stoppers held in place by ties or fastenings; wine otherwise put up with an excess pressure due to carbon dioxide in solution of not less than 1 bar but less than 3 bar, measured at a temperature of 20 °C
22042912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White: Bordeaux
22042913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White: Bourgogne (Burgundy)
22042917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White: Val de Loire (Loire Valley)
22042918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White: Other
22042942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Bordeaux
22042943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Bourgogne (Burgundy)
22042944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Beaujolais
22042946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Cotes-du-Rhone
22042947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Languedoc-Roussillon
22042948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Val de Loire (Loire Valley)
22042958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Other
22042962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Other: White: Sicilia (Sicily)
22042964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Other: White: Veneto
22042965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Other: White: Other
22042971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Other: Other: Puglia (Apuglia)
22042972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Other: Other: Sicilia (Sicily)
22042975	Other: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3 % vol:Other: Other: Other

HS 코드	세부 품목	
220429 (Other)	22042981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3 % vol but not exceeding 15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White
	22042982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3 % vol but not exceeding 15 % vol:Quality wines produced in specified regions:Other
	22042983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3 % vol but not exceeding 15 % vol:Other:White
	22042984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3 % vol but not exceeding 15 % vol:Other:Other
	22042987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Marsala
	22042988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Samos and Muscat de Lemnos
	22042989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Port
	22042991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Madeira and Setubal muscatel
	22042992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Sherry
	22042993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Tokay (Aszu and Szamorodni)
	22042994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5 % vol but not exceeding 18 % vol:Other
	22042995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8 % vol but not exceeding 22 % vol:Port
	22042996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8 % vol but not exceeding 22 % vol:Madeira, sherry and Setubal muscatel
	22042997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8 % vol but not exceeding 22 % vol:Tokay (Aszu and Szamorodni)
	22042998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18 % vol but not exceeding 22 % vol:Other
22042999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22 % vol	
220430 (Other grape must)	22043010	In fermentation or with fermentation arrested otherwise than by the addition of alcohol
	22043092	Other:Of a density of 1,33 g/cm ³ or less at 20°C and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 % vol:Concentrated
	22043094	Other:Of a density of 1,33 g/cm ³ or less at 20°C and of an actual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1 % vol:Other
	22043096	Other:Concentrated
	22043098	Other:Other

제6절 종합분석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HS 코드는 10단위까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은 6단위까지이다. 따라서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품목의 분류가 매우 복잡한 국가가 있고 단순화된 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인도는 농산물 품목분류 수가 1,500여 개고, 미국, 캐나다 EU는 2,000개 이상이다. 멕시코의 경우 농산물 품목분류 수는 1,200여개, 태국은 약 1,000여 개이다. 이러한 품목분류 수의 차이는 HS 6단위 이하에서 얼마나 품목을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세부품목 분류 실태는 품목별 4단위 기준의 HS 코드 세분화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HS 1류에서 24류에 포함되는 4단위 HS 코드 기준 세부품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임산물 24류 중 우리나라는 육류제품(2류), 낙농제품류(4류), 과일·견과류(8류), 커피·향신료류(9류), 육·어류 조제품류(16류), 당류·설탕과자류(17류),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 음료·알콜류(22류) 등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4단위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 세부품목 별로 살펴보면 채소류(7류), 코코아류(18류), 채소·과일의 조제품류(20류), 음료·알콜류(22류), 사료류(23류), 담배류(24류) 등에 속하는 일부 세부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세부품목 분류수는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세부 품목 분류 수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류제품류(2류)의 경우 특히 쇠고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매우 단순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에 있어서 캐나다가 각각 36개와 40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각각 22개와 20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를 합하여 6개 품목의 코드로 세분되어 있어 멕시코, 인도, 태국과 더불어 조사대상국 중 가장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제품류(4류)의 경우에도 치즈와 커드(0406호)에 있어서 가장 세분화된 미국이 15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쳐 무려 2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61개)와 EU(50개)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같은 류에 속하는 버터(0405호)의 경우 국가간의 차이가 치즈와 커드(0406호)에 비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17개), 일본(13개), 인도(13개), EU(10개)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3개의 HS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소류(7류)는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중 비교적 세분화가 많이 된 품목이고 세부품목들

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서 품목 중요도에 비해 품목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토마토(0702호)의 경우 가장 많이 세분화된 미국이 14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파·마늘류(0703호)의 경우에도 중국이 2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6개보다 4배 이상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단순화 문제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국제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쌀(1006호)에도 나타나고 있다. 쌀(1006호)의 경우 태국이 62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와 중국도 약 30여개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쳐 이들 국가와 세분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1006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분화 수준은 미국(13개), 캐나다(12개)에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타피오카(1903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의 세부품목에 있어서 가장 세분화가 잘된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는 품목분류 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세부 품목에 있어서 미국, 일본,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곡물·밀크의 조제품(1901호)의 경우 일본, 캐나다, 미국이 각각 80개, 60개, 51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쳐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이들 국가와 최소 5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천연꿀(0409호), 오이류(0707호), 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호), 차류(0902호), 낙화생(1202호), 해바라기씨(1206호), 락·천연검·수지류(1301호), 소시지류(1601호) 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2008류), 맥주(2203호), 포도주(2204호), 사료용 조제품(2309호), 잎담배(2401호) 등의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품목에 비해 4단위 HS 코드 분류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세분화된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품목분류의 정도가 절대적·상대적으로 상당히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포도주(2204호)의 경우 EU는 94개 품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8개에 비해 약 12배나 품목분류 수가 많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이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편이다. 캐나다는 51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2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잎담배(2401호)의 경우에도 미국이 가장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 무려 137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EU와 인도도 약 20여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이 천연꿀(0409호), 오이류(0707호), 해바라기씨(1206호)에서 각각 5개, 7개,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서 1개씩의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EU 등이 2,000여개 이상의 품목을 가지고 있어 세

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중국이 약 1,800여개의 품목분류 수로 중간 수준의 세분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 멕시코, 태국 등의 품목 분류 수는 1,500여개 또는 1,500개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 등의 5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의 품목분류 세분화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품목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 EU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육류제품(2류)과 밀크와 크림, 버터, 치즈 등을 포함하는 낙농제품류(4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들 국가는 대부분의 육·어류 조제품(16류)과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그리고 음료·알콜류(22류) 중에서 특히 포도주 등의 조제 식품류에 있어서도 품목 세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용설육(0206호), 밀크와 크림(0402호, 농축·설탕 첨가), 유장(0404호), 곡물의 분쇄물·조분·펠리트(1103호), 전분과 이눌린(1108호), 곡분·밀크의 조제품(1901호), 커피·차·마태의 조제품(2101호) 등의 세부품목에서 세분화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

중국의 경우 일부 산 동물류(01류)와 육류제품(2류)에 속하는 세부품목에서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국은 말(0101호), 돼지(0103호), 기타의 산 동물(0106호, 소, 돼지, 말, 양, 가금류를 제외), 돼지고기(0203호), 양고기(0204호), 기타육류(0208호) 등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과실·견과류(08류) 중 기타 견과류(0802호), 대추야자(0804호), 감귤류(0805호)와 채소류(7류) 중 파·마늘류(0703호), 기타 신선채소류(0709호), 일시 저장처리 채소(0711호)에서도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껍질이 붙은 조란(0407호), 뼈와 혼코어(0506호), 동물성 향료·의약품의 기타생산품(0510호), 향료·의료용 식물성 생산품(1211호), 채유용 종자·인삼(1212호), 유채유·겨자유(1514호) 등도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은 기타의 산 식물(0602호), 건조채소(0712호), 설탕 처리한 채소·과실(2006호), 효모·베이킹 파우더(2102호) 등의 일부 품목에서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많은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5개국(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세부 품목간 세분화 정도가 대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분류는 관세 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목적과도 관련된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 관세행정적 측면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장점이 많다. 예를 들면 포도주(HS 2204번)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U는 실질적으로 9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양허된 품목분류는 20여 개에 불과하나 실행세율 품목분류는 통계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세분화 한 것임).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수입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물론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왜곡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 또는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입함(예, 찌판)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 못지않게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관세율 적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30%의 동일한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에도 미국, EU 등이 보다 세분화된 품목코드에 기초하여 차등화 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개로 단순하게 분류된 품목에 40%의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쇠고기가 우리나라 농산물 중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도가 높으며 개방의 요구 또한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 대비하여 민감 품목으로 선정한 돼지고기, 사과, 배, 쌀 등의 품목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품목체계의 단순화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체계의 단순화는 국제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좁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자유화 추세에 대비하여 국내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보호 하기위해서 세분화된 품목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관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EU,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품종, 품목 부위 등의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여 품목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우리나라는 채소류와 식물성유의 양허관세에 있어서 비교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품목군별 HS 분류를 보면 채소류(7류)가 131개로 가장 많다. 채소류의 품목분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분화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식물성유(15류) 91개,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108개 등이다. 우리나라는 낙농품의 HS 코드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일본은 20류가 259개로 구분되어 가장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HS 분류는 축산물, 채소, 과실, 곡물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세분화된 HS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축산물과 채소·과실 조제품이다. 육류의 경우 EU는 232개 코드로 되어 있어 미국(125개)이나 우리나라(94개)보다 2~3배 더 세분화되어 있다. 낙농품은 미국이 EU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은 낙농품에 있어서 264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174개보다 두 배, 우리나라의 51개보다는 다섯 배나 더 세분화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도 많다. 이러한 품목들은 곡물류를 비롯하여 기타 공업용 원료로 이용되는 농산물(주로 29류 이하에 속하는 농산물) 등이다.

품목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실품목 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품목은 앞에서 분석한 품목군별 분류 가운데

데 특별히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을 위주로 하였다. 따라서 육류, 유제품, 과일, 채소, 유지작물, 코코아 제품, 주류 등을 위주로 하였다. 분석 대상 25개 품목의 HS 코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546개 코드이다. 다음은 EU로 417개 코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분화가 잘 된 나라는 일본(267개) 캐나다(239개), 태국(161개), 한국(158개) 등의 순서이다. 한국은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는 미국이 가장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쇠고기 세번은 42개로 우리나라의 6개에 비해 7배나 많다. 우리나라의 가금육에 대한 HS 코드는 33개로 EU 다음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치즈와 커드의 경우 미국은 15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50개에 비해 3배나 많다. 우리나라는 이 품목에 대하여 불과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밀크, 크림, 버터 등 다른 유제품의 경우도 치즈와 유사하다. 밀은 미국이 25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았다. 다른 나라들은 밀을 2~8 품목으로 분류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쌀(HS 코드 1006)의 경우, 태국이 48개 품목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다. 쌀은 EU도 34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은 6개 품목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특히 축산물에 대한 HS 코드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류, 버터 밀크, 치즈와 커드류 등의 품목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포도주, 코코아 조제품, 초콜릿 등 조제식품에 있어서도 품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포도주를 9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도주 관련 HS 코드는 8개이다. 미국은 쇠고기 42개, 치즈와 커드 156개, 밀과 메슬린 25개, 초콜릿 함유 식품 77개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U는 가금육(42개), 치즈와 커드(50개), 감귤류(13개), 쌀(34개)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분화된 품목분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밀크와 크림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38개로 가장 많고, 중국은 차류의 품목 수가 10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다.

제5장 품목분류 관련 전문가 의견

제1절 설문조사 배경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 HS 10단위를 기준으로 1,452개의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입시 해당 품목은 각각의 기준에 맞춰 해당 HS 코드로 분류된다. HS 분류에 따라 수입 품목의 관세율이 결정되고, 이러한 관세율에 의거 관세부과 및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품목분류와 품목별 관세율은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해 어떠한 관세체계와 품목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냐에 따라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관세에 있어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역관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UR 당시 1차 농산물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농산물 가공기술이 발달하면서 1차 농산물에 의도적인 가공을 가함으로써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수입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단순 가공농산물의 수입 증가는 곧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자 했던 관세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부분의 채소류, 과일류, 곡류가 냉동이나 혼합물, 조제품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 저율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수입이 일반화됨으로써 국내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 2000년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발생과 이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역관세 체계로 인한 것이다.

현재의 농산물 관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의 관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가공기술의 발달과 신상품 출현 등으로 기존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의 출현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신상품의 출현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새로운 품목 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농산물 관세체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관련 업계, 관세청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2절 설문 주요 내용

1. 설문 대상자

설문은 조사원을 통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자는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 정부 관련부처, 관세청 및 세관, 농민단체, 농산물 수출입 관련 협회, 식품 관련 연구소 등 37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설문 내용별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이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표 5-1. 설문 대상자

생산자단체	정부부처	관세청	농민단체	기타	합계
17	3	7	5	5	37

2. 설문 주요 내용

설문은 현행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과 농산물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의견은 현재 역관세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인지도, 가공품에 대해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역관세 체계를 이용한 단순 가공농산물의 편법수입 품목, 역관세 체계가 미치는 영향, 역관세 체계의 개선 방향 등을 설문하였다.

농산물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은 현재 농산물 품목분류에 대한 인지도, 품목이 세분화되지 않은 '기타' 수입품목 품목, 신규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필요성 및 관세수준, 품목분류 체계 개선방안 등을 설문하였다.

제3절 설문결과

1. 관세체계 인지도 및 개선방안

농산물 관세 체계(역관세)에 대한 인지도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가 신선 형태의 1차 농산물의 관세에 비해 이를 단순 가공(냉동, 절입 등)한 농산물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냐는 질

문에 설문대상의 92.9%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해 높은 인지도가 있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전체의 7.1%에 불과하였다.

□ 역관세 체계를 이용한 단순 가공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설문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품목 중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1차 농산물에 비해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농산물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채소류, 곡류, 채소 과실 제조품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 형태에 있어서는 냉동이 가장 많았고, 이외 찌거나 초산조제, 혼합, 볶음, 분쇄, 튀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는 고추, 마늘, 쌀, 참깨, 들깨, 고구마, 옥수수, 꽃감, 양파 등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 단순 가공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냉동	초산조제	볶음	분쇄	찜	튀김	혼합	기타
고추 마늘 양파 당근 고구마 꽃감 브로콜리 부추 리크(파) 딸기 포도, 밤 과일쥬스 과일잼 조제분유 죽순	마늘 고추 생강	쌀 대두 수수 율무 은행 참깨 들깨 땅콩	참깨 들깨 땅콩 대두	쌀 팥 조 수수 대두 보리 고구마 옥수수	땅콩, 쌀	고추 마늘 참기름 들기름	마늘가루 생강가루 즉석식품

□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의 71.4%가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대상의 14.3%가 신선 농산물과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같게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현재의 관세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관세가 높은 신선농산물의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1%로 나타났다.

표 5-3.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

설문내용 : 귀하께서는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냉동하거나 찌는 등 단순 가공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1. 현재의 관세체계가 잘 되어있다	0.0
2. 관세가 높은 신선 농산물의 관세를 낮춰야 한다	7.1
3.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높여야 한다	71.4
4. 신선 농산물과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같게 해야 한다	14.3
5. 기타	7.1
합계	100.0

□ 향후 역관세 체계를 통한 수입 급증 예상 품목

설문 응답자는 고추, 마늘, 양파 등 현재 단순 가공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이 역관세 체계로 인해 향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외 냉동 딸기, 냉동 포도 등 과일류, 식물성 유지류 혼합물(예, 참기름에 다른 식물성 기름을 혼합), 가공 곡류(찜쌀, 볶음 곡류 등), 즉석식품류(즉석쌀밥, 갈비탕) 등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농산물 관세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설문 대상자 중 신선 농산물을 냉동하거나 찌는 등 단순 가공을 통해 수입하는 것은 신선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응답한 사람이 85.7%로 현재의

농산물 역관세 체계가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선 농산물의 관세가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와 같아질 경우 단순 가공농산물보다 신선 농산물 형태로 수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5.7%를 차지하여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가공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가 현재와 같은 역관세 체계가 지속될 경우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농산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현재의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편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신선 형태의 1차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통한 국내 농업 보호가 어렵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2.9%를 차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 역관세 체계로 인해 고율관세를 통한 산업보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5-4. 농산물 관세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

설 문 사 항	정말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1] 신선 농산물을 냉동하거나 찌는 등 가공을 통해 수입하는 것은 신선 농산물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50.0%	35.7%	14.3%	0.0%	0.0%
[2] 신선 농산물의 관세가 이를 냉동하거나 찌는 등 단순 가공한 농산물의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단순 가공 농산물보다 신선 상태의 1차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50.0%	35.7%	7.1%	7.1%	0.0%
[3] 현재와 같은 농산물 관세체계가 지속된다면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 농산물의 수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다	64.3%	35.7%	0.0%	0.0%	0.0%
[4]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신선 형태의 1차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42.9%	50.0%	7.1%	0.0%	0.0%

□ 농산물 역관세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설문 응답자 중 단순 가공농산물에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하여 신선 1차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높임으로써 신선과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가공을 통한 수입 농산물의 용도가 국내에서 신선형태로 사용되는 품목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동하거나 썰는 등 단순가공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수입 후 가공품의 형태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신선 농산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유통에 있어서 국산으로 둔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품목분류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에 대한 인지도

설문 응답자의 85.7%가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코드로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기타'라는 품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HS 품목 분류 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났다.

□ 관세품목분류상 기타 분류품목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코드로 정해지지 않아 '기타'라는 품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채소류(07류)와 과실류(08류),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등 많으며, 품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5. 관세품목분류상 '기타' 분류품목

채소류(07류)	과실류(08류)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기타
냉동두릅, 절임배추 마늘쫑(신선, 냉동) 냉동고사리, 냉동파 죽순(냉동, 초산) 냉동취나물, 냉동도라지 냉동브로콜리 냉동더덕, 냉동호박 냉동리크(파) 냉동부추, 냉동당근 냉동토마토 건조겨자, 건조취나물 건조천경채, 건조시금치 건조파슬리 일시저장무 일시저장고추잎 일시저장두릅 일시저장락교 일시저장깻잎 일시저장더덕 초산조제생강 초산조제오이 초산조제풋고추	파파야, 대추야자, 바나나(건조) 냉동대추 냉동블루베리 냉동복숭아 냉동배 냉동망고 냉동포도 냉동호두 냉동과인애플 냉동여지 건조딸기 건조매실	단무지(무) 설탕절임 밤 볶은 땅콩 호박 퓨레 간마늘 조제품 당근 조제품	대두콩(꼬투리 부착) 찐쌀

□ '기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필요성

현재 HS 세번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특정한 HS 세번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1.4%로 나타났으며, 독립된 세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8.6%로 나타났다. 독립된 HS 세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독립된 HS 세번을 부여하더라도 관세율의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들었으며, 통계목적에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HS 코드 신설보다는 국내적으로 수입신고서에 세부 품목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통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표 5-6. 기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필요성

설문내용 :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 등에 따라 동일한 농산물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28.6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71.4
합계	100.0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차이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특정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의 차이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할 경우 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1.4%가 기존 농산물의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7.1%가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7.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차이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설문내용 :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 등에 따라 동일한 농산물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한다면,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기존 농산물의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21.4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 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조정해야 한다	57.1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 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낮게 조정해야 한다	0.0
기타	21.4
합계	100.0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신상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품목분류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35.7%가 현재의 품목분류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별도의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다.

표 5-8.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신상품 출연에 따른 품목분류 필요성

설문내용 : 귀하께서는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품목분류를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현재의 품목분류에 포함해야 한다	35.7
별도의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64.3
기타	
합계	100.0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해 별도의 품목분류를 실시할 경우 관세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9%가 기존의 농산물 관세와 같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의 농산물 관세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8.6%, 기존의 농산물 관세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표 5-9. 기능성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의 관세 수준

설문내용 : 귀하께서는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기존의 농산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기존 농산물의 관세와 같아야 한다	42.9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의 관세를 기존의 농산물의 관세보다 높게 해야 한다	28.6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의 관세를 기존의 농산물의 관세보다 낮게 해야 한다	21.4
합계	92.9

농산물 품목분류 세분화에 대한 의견

설문 응답자의 78.6%가 농산물 품목분류에 있어서 현재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가능한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품목분류의 세분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

파가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50.0%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산물 품목분류를 가공 정도나 품목의 함량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새로운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71.4%를 차지하였으며, 품목분류를 세분화할 경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피해구제 제도를 통한 국내 농업보호가 유리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64.3%로 나타났다. 결국 농산물 품목분류가 세분화될 경우 일정부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더불어 수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0. 농산물 품목분류 세분화에 대한 의견

설문사항	정말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1] 현재의 농산물 품목분류에 있어 품목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은 가능한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35.7%	42.9%	14.3%	7.1%	0.0%
[2] 농산물 수출입시 품목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8.6%	21.4%	28.6%	14.3%	7.1%
[3] 농산물 품목분류를 가공정도나 함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새로운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1.4%	50.0%	7.1%	14.3%	7.1%
[4] 농산물 품목분류를 세분화할 경우 세이프가드 제도와 같은 수입피해구제제도 등을 통한 국내 농업 보호에 유리하다	28.6%	35.7%	28.6%	7.1%	0.0%

제6장 농산물 품목분류 개편 방향

1. 품목의 세분화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제 4장, 5장 참조). 이러한 품목분류의 단순함과 관세율 설정의 불합리성 등으로 관세회피를 위한 여러 가지 수입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회적 수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품목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분류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조정은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게 조정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WTO 회원국 등의 동의를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주요 품목별 품목분류 세분화의 예이다.

① 쌀: 품종, 가공정도를 고려하여 현재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쌀의 품종을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멥쌀, 찰쌀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공정도는 도정 정도와 가열 및 분쇄 정도를 추가하여 품목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EU나 태국 정도의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며, 교역 통계는 물론 관세의 적용 등에 있어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② 쇠고기: 송아지고기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송아지고기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송아지고기의 교역전망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도축부위별 분류는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수요가 많은 갈비살은 대표적으로 별도의 분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그밖에 엉덩이, 등, 다리와 같이 부위별로 분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분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낙농제품: 치즈 등 제품의 종류별로 가격 및 교역의 차이가 큰 낙농품은 품종별 분류가 필요하다. 분유 등 우유의 함량에 따라서도 품목분류를 다르게 설정하고 관세율은 원료의 함량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농제품은 품목 수가 많고 제품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분류에 있어서 특별히 낙농 및 교역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④ 과일: 품종별 분류가 추가되어야 한다. 과일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규제로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떠한 품종이 수입될지 불확실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과와 같은 경우 델리셔스 계통도 색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갈라, 후지 등 여러 품종이 존재하고 있다. 품종에 따라 맛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율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가공용이나 식탁용 등 용도에 따라서도 품목분류를 다

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채소: 마늘의 경우 중국이 뿌리, 대, 기타 등 부위별로 품목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다른 채소류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파, 양파 등 채소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가공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세분화하여 기타라는 모호한 분류에 속하는 품목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2.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차등화

관세율은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체계의 유지를 원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일 경우 원자재 수입을 촉진시키고 국내에서 가공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쌀의 관세율도 가열, 도정 등 가공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세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품목군 내에서도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차등화가 필요하다. 일부 품목은 대외 협상을 고려하여 수입 가능성을 고려한 품종 및 가공 상태에 따른 관세율 차별화가 필요하다. 원료 함량에 따른 관세율 차이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분야이다. 특히 낙농품과 설탕제품의 경우 원료 함량에 따른 관세율 차등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3. WTO/DDA 이행계획서 제출 대비

WTO에서 진행 중인 DDA 협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WTO/DDA 협상이 타결되면 회원국들은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양허 계획서를 제출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관세율표 상에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민감도에 따라 특별품목, 민감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관세감축 폭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품목의 범위와 순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세균 외(2006)는 부가가치, 재배면적, 지역집중도, 경쟁력, 시장보호 정도(관세율 등), 자급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품목별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피해액의 비율, 교역 가능성(검역 및 교역 비중 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의 순위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부가가치 기준 상위 33개 품목(이들 33개 품목이 농업 전체 부가가치의 86%를 차지)을 대상으로 미곡, 쇠고기, 고추, 인삼, 낙농품, 마늘, 감귤, 포도,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대두, 복숭아, 딸기, 참깨, 단감, 천연꿀, 양파, 엽연초토마토, 느타리버섯, 감자, 배추, 오이, 수박, 무, 파, 호박, 고구마, 참외, 상추, 시유 등의 순으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우선으로 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와 관세율 차등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WTO/DDA 협상 이행 및 농업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타로 분류된 품목의 실체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코드로 정해지지 않아 '기타'라는 품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는 품목이 많다. 신선 농산물이 기타로 분류될 경우 냉장, 냉동, 건조, 파쇄 등 단순 가공품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 가운데에서도 기타로 처리된 것 가운데 교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실 품목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품목의 가공품도 실품목의 가공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로 분류된 품목은 주로 채소류(07류)와 과실류(08류),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등에 많다. 이러한 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타채소(신선/냉장), 기타채소(냉동), 기타채소(건조),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기타버섯(건조), 기타버섯(신선/냉장), 기타과실(건조), 기타과실(신선), 기타곡물, 기타곡분 등이 있다. 냉동고추가 냉동채소의 일부로 분류된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HS 세번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특정한 HS 세번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1.4%로 나타났다. 독립된 HS 세번을 부여하더라도 관세율의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주요 품목의 경우 향후 시장개방 협상에서 관세율 감축/철폐의 차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급히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함량에 따른 품목 세분화 및 관세율 조정

혼합분유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76%(2006년 기준)임에 비해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하여 저세율로 수입한 뒤 다시 분유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율 코드를 세분화하고 포함된 성분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이다. 함유량 또는 성분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율을 원료 함유량 또는 성분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는 유럽연합(EU)이 가장 세분화된 기준과 품목분류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또는 이러한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낙농품, 설탕 등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 국가의 예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원료의 함량이 많을수록 원료 농산물에 가까운 관세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관세회피 등 우회적 수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특정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의 차이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71.4%에 달하였다. 관세율 수준은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농산물 품목 분류를 가공 정도나 품목의 함량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새로운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1.4%를 차지하였으며, 품목 분류를 세분화할 경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피해구제 제도를 통한 국내 농업보호가 유리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64.3%로 나타났다. 결국 농산물 품목분류가 세분화될 경우 일정부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더불어 수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6. 미래 지향적 품목분류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국제적 교역이 미미할지라도 점차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이 출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 및 품목분류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에 대하여는 전통적 농산물과 차별화가 요구된다. GM 농산물에 대하여는 현재 표시제도에 의해 교역과 유통에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계적 목적 및 국내 유통에 대한 경로 추적, 적정 관세율 부과 등에 있어서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GM 농산물은 생산비가 낮고 수입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고려한다면 GM 농산물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3%는 GM 농산물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관세수준은 응답자의 42.9%가 기존의 농산물 관세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농산물 관세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28.6%였다.

제7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 당초 계획한 1, 2차 연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관련기관 등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 품목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품목분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 관련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국제법(규정) 및 국내법과의 합치성 검증
 - 국내법(관세법, 고시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품목분류 규정의 배경 및 해석
 - 국내 품목분류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주요국의 품목분류 현황 비교 분석
 - 연구대상국 및 대상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품목별, 품목군별 품목분류 비교 분석
- 관세율표 분류 기준 및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관세회피 등 농산물 수입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방향 설정
 - 품목군별 관련 품목의 재배정 등 분류체계 조정
 - 국제적인 분류 방식,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품목분류표 재작성

제2절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기대효과

1. 관련 분야 기여도

-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분류체계(HSK) 개편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인 사례 분석,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 농업 관련 신상품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한 관세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 관세의 농업보호기능을 제고함.

2. 기대효과

- 이 연구는 관세정책, 수입관리 정책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요 대상국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 WTO 농업협상 등 농산물 관세협상에서 수입증가 우려 민감품목 선별 등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능성 농산물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미래 지향적 분류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관세회피 방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분류체계(HSK) 개편 방안에 활용함.
- WTO 농업협상 등 농산물 관세협상에서 수입증가 우려 민감품목 선별 등에 대한 자료로 활용
-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능성 농산물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미래 지향적 분류에 대한 자료로 활용

제9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해당사항 없음

제 10장 참고문헌

- 관세청, 2000,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 김동수, “국제상품분류제도에 관한 연구(기술혁신상품의 HS 분류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1.
- 김재식, “국제무역 상품의 제도적 분류에 관한 연구(HS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 김재식, “농산물에 대한 품목분류의 쟁점과 대책,” 「관세와 무역」, 11월호, 2001.
- 김재식, “관세율표상 농산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2002.
- 김재식, “무역상품의 품목분류,” 「관세법 강의」, 한국관세포럼, 2004.
- 김창길, “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무역상품 분류제도(HS)에 관한 연구(WTO 농업에 관한 협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998.
- 농림부, 2000, 「농림산물 품목분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9, 「주요국의 농수산물 수입제도」.
- 대한상공회의소, 1997, 「대외무역법」.
- 박상태, 1996, 「관세정책 요론: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 변윤규, “우리나라의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1.
- 송유철·박지현, 1999,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 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종훈, 「HS 상품분류」, 소망교육출판부, 1999.
- 유정호·홍성훈·이재호, 1993,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연구보고서 93-02, 한국개발연구원.
- 이강화, “전통 식료품의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에 관한 연구(국제무역상품에 관한 HS 분류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996.
- 이강화, 「관세율표 및 상품학」, 법경사, 2001.
- 이용근, 「무역실무」, 동성사, 2001.
- 이정길, 「수출입통관업무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3.
- 이종익, 「관세법 해설」, 도서출판 협동문고, 2005.
- 임정빈, 2000, “차기 WTO 농산물 관세 인하협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1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 정용화·홍영선,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2001.
- 천상덕·이건우 등, 1990, 「2000년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 211호, 산업연구원.
- 최낙균·신현수, 1993,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제 258호, 산업연구원.
- 최세균·권오복 등, 2006,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 연구보고 C200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어명근 등,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어명근,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분석,” 「농촌경제」 2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임송수 등,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연구보고 R4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1,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 감축 효과,” 「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율표(2005)」, 2004.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년 관세법령집」, 2005.
- 한국관세연구소, 1999, 「HS 종합편람 관세율표」.
- 한희영·한동철, 「상품학총론(제2판)」, 삼영사, 2002.
- 홍영선, “동식물성 1차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 Australi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Canada, 2000. 1, Customs Tariff.
- Chin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Carter, Colin A. and S. Rozelle, 2002, “Will China’s Agricultural Trade Reflect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F. Gale (ed.)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USDA/ERS Agricultural Information Bulletin No. 775, Washington DC.
- Choi, S.K. et al. 1998, “Effective Protection Rates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1(2), Korea Rural Economic Development.
- EU, 1999. 12. Common Customs Tariff.
- FAO, 200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 Japan,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OECD, 1999, Post-Uruguay Round Tariff Regimes: Achievements and Outlook, Paris.
- U.S.A. 2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http://lanic.utexas.edu/~sela/AA2K1/ENG/docs/Globalization/SPCLXXVIIDi2/spclxxviidi2-9.htm>

부록 1 : HS의 품목분류 구성 내용과 부·류별 품목배열 내용

부표 1-1. HS의 부별 품목분류체계

품목 부문	부	분류항 수				주 수		
		류	절	호	소호	부 주	류 주	소호 주
농·수·임산물	제1부	5	0	44	219	2	12	2
	제2부	9	0	79	265	1	26	2
	제3부	1	0	21	46	0	4	1
	제4부	9	0	57	195	1	23	7
광물 및 화공약품	제5부	3	0	66	152	0	10	6
	제6부	11	19	178	813	3	56	2
경공업제품	제7부	2	2	43	212	2	20	2
	제8부	3	0	21	74	0	10	0
	제9부	3	0	27	89	0	10	1
	제10부	3	0	41	150	0	19	7
	제11부	14	3	153	848	13	49	1
	제12부	4	0	20	55	0	11	1
	제13부	3	2	49	140	0	9	1
	제14부	1	3	18	53	0	11	3
기계·전기기기 및 비금속류, 수송기기	제15부	12	4	161	589	8	16	10
	제16부	2	0	134	800	5	15	4
	제17부	4	0	39	134	5	8	1
전자·정밀기구와 무기	제18부	3	0	58	239	0	15	0
	제19부	1	0	7	21	0	2	0
잡품 및 미술품	제20부	3	0	32	129	4	9	0
	제21부	1	0	6	7	0	5	0
계	21	97	33	1,254	5,230	44	340	51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율표(2004. 12. 29.)」로부터 집계한 것임.

부표 1-2. HS의 부·류별 품목배열 내용

부 및 부 표제	류	류별 품목분류 내용(류 표제)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산 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조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 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제3부 (류 표제와 동일)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제15류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제26류	광·슬랙 및 회
제 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의 생산품)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 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학품
	제30류	의료용품
	제31류	비료

부표 1-2. HS의 부·류별 품목배열 내용<계속>

부 목차	류	류별 품목분류 내용(류 목차)
제 6부 (계속)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의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메스틱 및 잉크
	제33류	정유와 제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제38류	각종 화학공업의 생산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커트(누에의 커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커트(누에의 커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제46류	짚·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제10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제49류	인쇄서적·신문·화학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및 도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지사 및 지사의 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부표 1-2. HS의 부·류별 품목배열 내용<계속>

부 목차	류	류별 품목분류 내용(류 목차)
제11부 (계속)	제55류	이니조스테플섬유
	제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냅마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유리제품)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	도자제품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류 내용과 동일)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4류	동과 그 제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부표 1-2. HS의 부·류별 품목배열 내용<계속>

부 목차	류	류별 품목분류 내용(류 목차)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양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류 표제와 동일)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프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완구·유의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잡품
제21부 (류 내용과 동일)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부록 2. 주요국의 품목분류 현황 비교분석

부표 2-1.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 분류 현황(2단위)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1류	57	60	35	51	98	53	55	55	48	78
2류	125	80	62	113	223	187	60	232	94	147
4류	264	52	43	148	45	129	43	174	51	93
5류	37	32	72	19	77	40	26	21	53	106
6류	49	70	20	21	33	80	14	42	74	51
7류	232	89	84	119	210	198	81	107	131	131
8류	150	70	87	94	155	143	79	128	78	207
9류	54	35	138	71	43	56	34	42	36	54
10류	59	28	35	45	58	49	76	55	32	76
11류	48	37	36	94	56	74	34	83	45	53
12류	144	115	110	61	143	118	63	77	92	124
13류	24	37	58	21	29	16	28	18	25	37
14류	15	9	27	16	11	11	11	8	21	13
15류	94	70	120	81	81	96	92	125	91	134
16류	157	43	34	51	64	135	40	92	24	76
17류	76	30	38	49	32	64	28	47	33	48
18류	83	14	15	30	13	27	14	27	33	50
19류	96	28	33	142	22	255	29	51	50	73
20류	257	84	69	259	98	229	76	311	108	193
21류	114	38	42	105	21	82	24	42	64	99
22류	100	48	64	54	36	145	32	177	52	76
23류	60	39	70	40	32	124	29	66	44	71
24류	187	14	44	11	16	28	15	30	25	21
29류	2	2	2	2	2	2	2	5	2	2
33류	40	29	79	24	25	19	19	31	30	63
35류	22	23	16	17	14	44	14	25	28	31
38류	2	2	3	1	2	2	2	8	2	4
41류	46	18	25	40	51	24	14	19	28	71
43류	18	12	6	10	14	16	6	9	12	8
50류	4	4	12	19	10	4	4	4	16	4
51류	45	33	17	12	39	11	10	17	11	58
52류	22	9	11	5	7	9	5	6	10	21
53류	6	10	6	7	6	6	6	7	9	8
합계	2,689	1,264	1,513	1,832	1,766	2,476	1,065	2,141	1,452	2,281

부표 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 분류 현황(4단위)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0101	7	6	6	8	12	6	3	6	5	10
0102	21	8	7	4	6	4	4	15	6	16
0103	6	8	3	5	12	3	3	6	3	11
0104	2	5	3	2	8	5	4	5	3	7
0105	8	10	6	6	15	20	12	13	12	7
0106	13	23	10	26	45	15	29	10	19	27
0201	22	3	3	7	15	36	3	6	3	10
0202	20	3	3	6	9	40	3	8	3	10
0203	14	6	6	24	32	11	6	22	8	12
0204	19	9	9	9	36	13	9	27	10	17
0205	1	1	1	1	5	1	1	2	2	9
0206	9	12	11	22	19	9	9	19	12	20
0207	19	26	13	22	56	48	13	92	33	20
0208	8	7	7	7	25	7	7	14	6	31
0209	1	2	1	1	7	6	1	4	2	6
0210	12	11	8	14	19	16	8	38	15	12
0401	9	6	3	12	3	6	3	12	4	10
0402	30	9	12	39	5	14	10	28	10	18
0403	25	2	3	25	2	7	3	30	7	6
0404	14	3	4	38	2	14	4	30	8	2
0405	17	6	13	13	3	6	4	10	3	6
0406	156	12	5	10	5	61	5	50	6	28
0407	3	4	3	3	14	9	7	4	3	3
0408	4	7	4	5	4	9	4	8	5	4
0409	5	1	1	1	1	2	1	1	1	12
0410	1	2	3	2	6	1	2	1	4	4
0501	1	1	2	1	1	1	1	1	1	1
0502	2	2	5	2	7	2	2	2	4	15
0503	1	1	1	1	4	1	1	1	3	6
0504	3	1	8	3	8	4	1	1	4	30
0505	7	2	9	2	7	5	2	3	3	6
0506	3	2	12	3	16	4	2	2	6	2
0507	3	3	10	-	7	2	6	2	10	5
0508	1	2	6	-	4	3	4	1	-	3
0509	1	1	2	-	1	1	1	2	-	1
0510	4	4	5	3	10	3	1	1	9	20
0511	11	13	12	4	12	14	5	5	13	17
0601	12	19	5	4	10	26	2	8	19	6
0602	14	28	10	7	18	36	6	18	40	27
0603	16	15	2	7	2	10	3	7	10	14
0604	7	8	3	3	3	8	3	9	5	4
0701	7	2	2	2	4	2	2	4	2	3

부표 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 분류 현황(4단위)<계속>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0702	14	2	1	1	3	10	1	1	1	3
0703	7	5	4	7	26	12	4	5	6	10
0704	7	6	3	4	9	15	3	4	5	3
0705	6	4	4	4	12	10	4	4	4	4
0706	7	2	5	3	6	18	2	4	5	2
0707	8	1	1	1	3	4	1	2	1	1
0708	10	3	3	3	9	10	3	3	3	4
0709	26	14	16	15	50	30	13	23	20	14
0710	36	13	9	12	15	18	9	16	15	17
0711	12	8	8	12	19	7	6	11	14	9
0712	26	9	12	14	21	12	11	11	27	12
0713	51	13	12	29	18	39	16	11	13	45
0714	15	7	4	12	15	11	6	8	15	4
0801	7	6	10	6	15	5	6	6	6	10
0802	18	11	13	14	49	15	11	14	14	19
0803	4	1	1	2	3	2	4	3	1	2
0804	17	7	13	10	21	9	8	6	7	24
0805	11	7	5	7	21	13	10	13	8	31
0806	8	2	3	2	2	4	2	8	2	15
0807	11	4	3	3	5	5	4	3	3	6
0808	4	3	2	2	5	22	2	7	3	12
0809	8	4	4	4	4	20	4	7	5	20
0810	16	7	13	8	14	17	11	15	11	24
0811	21	3	8	16	4	14	7	20	6	10
0812	7	4	3	9	2	7	2	9	3	2
0813	15	10	8	10	9	8	7	16	7	29
0814	3	1	1	1	1	2	1	1	2	3
0901	9	7	28	6	6	6	5	6	6	17
0902	7	4	20	8	10	9	4	4	4	6
0903	1	1	1	1	1	1	1	1	1	4
0904	11	4	16	7	6	6	4	5	4	7
0905	1	1	3	1	1	1	1	1	1	1
0906	2	2	5	2	2	2	2	2	4	2
0907	1	1	4	3	1	2	1	1	1	1
0908	4	3	11	9	3	6	4	3	3	3
0909	5	5	16	15	6	10	5	5	5	6
0910	13	7	34	19	7	13	7	14	7	7
1001	25	3	6	8	9	9	2	4	6	11
1002	3	1	2	3	2	2	1	1	2	3
1003	3	3	2	4	2	5	1	2	4	6
1004	3	2	2	2	2	2	1	1	2	3
1005	5	7	2	9	6	9	2	6	4	7
1006	13	5	7	8	30	12	62	34	6	33
1007	2	3	2	3	2	1	1	2	2	3
1008	5	4	12	8	5	9	6	5	6	10

부표 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 분류 현황(4단위)<계속>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1101	4	1	1	3	3	1	1	3	2	3
1102	6	4	4	9	11	7	5	7	5	7
1103	9	7	5	22	18	15	3	16	10	8
1104	8	8	6	25	10	16	6	37	11	9
1105	2	2	2	2	2	2	2	2	2	3
1106	5	5	8	7	3	6	7	5	4	11
1107	2	2	2	6	2	8	2	5	3	5
1108	10	7	7	19	6	17	7	7	7	6
1109	2	1	1	1	1	2	1	1	1	1
1201	3	5	2	1	5	3	2	2	2	3
1202	12	6	6	6	3	2	4	3	2	6
1203	1	1	1	1	1	1	1	1	1	1
1204	3	4	2	1	1	1	1	2	1	3
1205	6	4	2	2	4	6	2	3	2	10
1206	6	4	2	1	2	5	2	3	1	5
1207	10	24	18	9	16	11	12	17	10	17
1208	2	5	2	2	2	4	2	2	2	2
1209	65	37	19	12	14	58	14	22	22	44
1210	3	2	2	3	2	3	3	3	3	3
1211	15	10	41	11	52	12	7	6	33	20
1212	7	9	10	8	37	6	10	9	8	5
1213	1	1	1	1	2	2	1	1	1	2
1214	10	3	2	3	2	4	2	3	4	3
1301	9	4	34	6	10	3	16	4	5	12
1302	15	33	24	15	19	13	12	14	20	25
1401	6	3	4	5	6	3	5	3	7	6
1402	2	1	1	1	1	1	1	1	1	1
1403	3	1	2	1	1	3	1	1	1	2
1404	4	4	20	9	3	4	4	3	12	4
1501	4	1	1	3	1	3	2	3	3	2
1502	3	1	4	3	2	3	2	2	3	7
1503	1	2	1	1	1	1	2	4	2	4
1504	7	6	8	-	3	7	6	7	-	5
1505	2	4	3	2	1	3	1	2	2	2
1506	1	3	2	1	3	2	2	1	2	2
1507	4	2	3	3	6	3	2	4	3	8
1508	2	2	4	3	2	2	2	4	3	7
1509	4	5	3	2	2	4	2	3	2	10
1510	3	1	3	1	1	1	1	2	1	2
1511	2	2	4	3	10	4	2	6	4	2
1512	7	4	10	10	8	6	6	9	9	14
1513	4	4	8	7	4	5	4	16	8	6
1514	10	4	13	6	15	4	6	8	8	8
1515	12	12	18	17	9	18	15	25	12	29
1516	3	2	9	3	2	9	16	7	13	6

부표 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 분류 현황(4단위)<계속>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1517	16	4	9	6	4	7	2	6	4	8
1518	2	3	7	1	1	6	13	6	3	2
1520	1	1	1	2	1	1	1	1	1	2
1521	5	6	6	5	4	6	4	4	5	5
1522	1	1	3	2	1	1	1	5	3	3
1601	7	2	1	1	3	15	1	3	2	2
1602	35	14	10	50	33	54	10	42	20	22
1603	3	2	3	-	3	4	1	2	2	2
1604	64	19	12	-	15	37	11	34	-	34
1605	48	6	8	-	10	25	17	11	-	16
1701	22	12	7	8	18	18	10	7	6	4
1702	36	13	23	28	10	26	12	24	17	19
1703	4	3	3	8	2	6	4	2	4	2
1704	14	2	5	5	2	14	2	14	6	23
1801	1	1	1	1	1	1	1	1	2	4
1802	1	1	1	1	1	1	1	1	2	1
1803	2	2	2	2	2	2	2	2	2	2
1804	1	1	1	1	3	1	1	1	1	2
1805	1	1	1	1	1	1	1	1	1	1
1806	77	8	9	24	5	21	8	21	25	40
1901	51	11	5	80	3	60	6	6	13	15
1902	17	5	8	19	8	65	9	11	12	12
1903	2	1	1	1	1	1	2	1	2	1
1904	7	4	7	26	4	48	4	10	9	13
1905	19	7	12	16	6	81	8	23	14	32
2001	14	5	2	12	5	8	4	12	10	12
2002	8	2	2	7	4	7	2	8	3	22
2003	9	3	3	9	10	7	3	4	6	10
2004	9	4	2	12	2	12	2	8	3	12
2005	53	11	9	35	21	33	15	18	18	37
2006	7	4	1	3	3	5	5	6	13	2
2007	21	7	7	16	4	19	3	17	5	12
2008	87	23	26	93	26	59	24	137	22	55
2009	49	25	17	72	23	79	18	101	28	31
2101	24	6	12	25	4	12	7	11	8	22
2102	5	6	5	4	3	4	3	8	13	11
2103	17	6	8	11	6	12	9	7	14	25
2104	4	2	3	3	2	3	2	3	4	17
2105	7	1	1	8	1	7	1	3	4	2
2106	57	17	13	54	5	44	2	10	21	22
2201	2	5	4	2	4	3	5	4	3	5
2202	13	6	7	4	4	14	2	5	6	13
2203	3	1	1	1	1	6	1	3	1	16
2204	24	8	8	10	6	51	5	94	8	9
2205	5	4	2	3	2	9	2	4	2	4

부표 2-2. 한국 및 주요 9개국 품목 분류 현황(4단위)<계속>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MERCOSUR
2206	5	2	1	5	3	32	2	7	9	5
2207	3	2	4	7	4	5	4	2	4	3
2208	44	19	34	21	11	24	10	54	17	20
2209	1	1	3	1	1	1	1	4	2	1
2301	3	3	5	2	6	13	3	2	2	6
2302	8	5	8	5	5	9	5	9	5	8
2303	6	4	3	3	3	7	4	7	3	3
2304	1	1	4	1	2	1	1	1	1	5
2305	1	1	3	1	1	1	1	1	1	5
2306	10	9	38	9	9	9	10	11	11	30
2307	1	1	1	1	1	1	1	3	1	1
2308	5	2	1	1	1	1	1	4	4	2
2309	25	13	7	17	4	82	3	28	16	11
2401	137	6	19	3	5	13	8	21	11	11
2402	8	3	11	3	5	5	3	4	6	5
2403	42	5	14	5	6	10	4	5	8	5
2905	2	2	2	2	2	2	2	5	2	2
3301	40	29	79	24	25	19	19	31	30	63
3501	4	5	2	2	2	5	2	5	3	7
3502	4	4	4	4	4	6	4	10	5	5
3503	6	5	4	5	4	12	4	2	4	7
3504	2	7	3	3	2	1	2	1	7	7
3505	6	2	3	3	2	7	2	7	9	5
3506	-	-	-	-	-	13	-	-	-	-
3809	1	1	1	1	1	1	1	4	1	4
3824	1	1	2	-	1	1	1	4	1	-
4101	25	8	9	15	27	13	5	9	16	51
4102	10	3	8	5	5	5	3	4	3	12
4103	11	7	8	20	19	6	6	6	9	8
4301	18	12	6	10	14	16	6	9	12	8
5001	1	1	1	2	2	1	1	1	1	1
5002	1	1	3	11	6	1	1	1	7	1
5003	2	2	8	6	2	2	2	2	8	2
5101	34	18	5	5	10	5	5	5	5	6
5102	8	6	6	3	16	3	2	6	3	48
5103	3	9	6	4	13	3	3	6	3	3
5201	12	4	7	1	2	4	1	2	6	17
5202	6	4	3	3	3	3	3	3	3	3
5203	4	1	1	1	2	2	1	1	1	1
5301	4	8	4	5	4	4	4	5	5	6
5302	2	2	2	2	2	2	2	2	4	2
합계	2,689	1,264	1,513	1,832	1,766	2,476	1,065	2,141	1,452	2,28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10110	2	2	3	4	6	2	1	2	2
010190	5	4	3	4	6	4	2	4	3
010210	4	2	4	1	3	2	2	3	3
010290	17	6	3	3	3	2	2	12	3
010310	1	1	1	1	3	1	1	1	1
013091	3	3	1	1	6	1	1	2	1
010392	2	4	1	3	3	1	1	3	1
010410	1	3	2	1	2	3	2	3	1
010420	1	2	1	1	6	2	2	2	2
010511	3	3	1	1	2	4	2	4	2
010512	1	1	1	1	2	2	2	1	1
010519	1	1	1	1	2	3	2	2	2
010592	1	2	1	1	2	4	2	1	2
010593	1	2	1	1	2	4	2	1	2
010599	1	1	1	1	5	3	2	4	3
010611	1	2	1	1	2	1	3	1	1
010512	1	1	1	1	1	1	3	1	1
010619	3	6	1	16	9	3	5	2	5
010620	1	4	1	2	7	1	5	1	4
010631	1	1	1	1	2	1	3	1	1
010632	1	1	1	1	2	1	3	1	1
010639	1	3	1	2	12	2	3	2	1
010690	4	5	3	2	10	5	4	1	5
020110	6	1	1	1	5	4	1	1	1
020120	8	1	1	2	5	12	1	4	1
020130	8	1	1	4	5	20	1	1	1
020210	6	1	1	1	4	4	1	1	1
020220	7	1	1	1	2	12	1	4	1
020230	7	1	1	4	3	24	1	3	1
020311	1	1	1	4	10	1	1	2	1
020312	4	1	1	4	5	1	1	3	1
020319	4	1	1	4	5	4	1	6	2
020321	1	1	1	4	6	1	1	2	1
020322	2	1	1	4	3	1	1	3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20329	2	1	1	4	3	3	1	6	2
020410	1	1	1	1	5	1	1	1	1
020421	1	1	1	1	5	1	1	1	1
020422	5	1	1	1	4	2	1	4	1
020423	2	1	1	1	5	2	1	1	1
020430	1	1	1	1	3	1	1	1	1
020441	1	1	1	1	3	1	1	1	1
020442	5	1	1	1	3	2	1	4	1
020443	2	1	1	1	3	2	1	2	1
020450	1	1	1	1	5	1	1	12	2
020500	1	1	1	1	5	1	1	2	2
020610	1	1	1	3	3	1	1	4	1
020621	1	1	1	1	1	1	1	1	1
020622	1	1	1	1	1	1	1	1	1
020629	1	1	1	3	1	1	1	3	3
020630	1	2	1	5	3	1	1	1	1
020641	1	1	1	2	1	1	1	1	1
020649	1	3	1	5	1	1	1	2	2
020680	1	1	2	1	5	1	1	3	1
020690	1	1	2	1	3	1	1	3	1
020711	2	1	1	1	3	3	1	3	2
020712	2	1	1	1	1	3	1	2	2
020713	1	4	1	2	12	4	1	9	6
020714	2	5	1	3	4	16	1	9	6
020724	1	1	1	1	3	4	1	2	1
020725	2	1	1	1	2	4	1	2	1
020726	1	3	1	1	3	3	1	10	3
020727	2	4	1	2	1	5	1	10	3
020732	1	1	1	2	9	1	1	6	1
020733	1	1	1	2	3	1	1	5	1
020734	1	1	1	1	3	1	1	2	1
020735	1	1	1	2	9	1	1	15	3
020736	2	2	1	3	3	2	1	17	3
020810	1	1	1	1	9	1	1	3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20820	1	1	1	1	3	1	1	1	1
020830	1	1	1	1	3	1	1	1	1
020840	1	1	1	2	3	1	1	2	-
020850	1	1	1	1	3	1	1	1	1
020890	3	2	2	1	4	2	2	6	2
020900	1	2	1	1	3	6	1	4	2
20990	-	-	-	-	4	-	-	-	-
021011	2	1	1	2	6	1	1	5	1
021012	2	1	1	2	3	1	1	3	1
021019	2	1	1	2	3	2	1	11	1
021020	1	1	1	1	1	1	1	2	2
021091	1	1	1	1	1	1	1	1	1
021092	1	1	1	1	1	1	1	1	1
021093	1	1	1	1	1	1	1	1	1
021099	2	4	1	4	3	8	1	14	7
040110	1	2	1	3	1	2	1	2	1
040120	2	2	1	3	1	2	1	4	1
040130	6	2	1	6	1	2	1	6	2
040210	3	2	3	10	1	2	1	4	3
040221	9	2	1	11	1	4	4	5	2
040229	3	1	3	7	1	4	3	5	1
040291	6	2	2	6	1	2	1	8	2
040299	9	2	3	5	1	2	1	6	2
040310	4	1	1	6	1	3	1	12	3
040390	21	1	2	19	1	4	2	18	4
040410	9	2	3	22	1	5	2	24	7
040490	5	1	1	16	1	9	2	6	1
040510	3	2	1	6	1	1	1	5	1
040520	8	1	1	2	1	2	1	3	1
040590	6	3	3	5	1	3	2	2	1
040610	21	1	1	3	1	3	1	2	2
040620	39	1	1	2	1	7	1	2	1
040630	36	2	1	1	1	6	1	4	1
040640	9	1	1	2	1	2	1	3	1
040690	51	7	1	2	1	43	1	39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40700	3	4	3	3	14	9	7	4	3
040811	1	1	1	1	1	3	1	2	1
040819	1	1	1	1	1	1	1	3	1
040891	1	2	1	2	1	3	1	2	1
040899	1	3	1	1	1	2	1	1	2
040900	5	1	1	1	1	2	1	1	1
041000	1	2	3	2	6	1	2	1	4
050100	1	1	2	1	1	1	1	1	1
050210	1	1	2	1	3	1	1	1	1
050290	1	1	3	1	4	1	1	1	3
050300	1	1	1	1	4	1	1	1	3
050400	3	1	8	3	8	4	1	1	4
050510	4	1	2	1	1	2	1	2	1
050590	3	1	7	1	6	3	1	1	2
050610	1	1	8	1	1	2	1	1	1
050690	2	1	4	2	15	2	1	1	5
050710	1	1	2	-	4	1	1	1	3
050790	2	2	8	-	3	1	5	1	7
050800	1	2	6	-	4	3	4	1	-
050900	1	1	2	-	1	1	1	2	-
051000	4	4	5	3	10	3	1	1	9
051110	2	2	1	1	1	2	1	1	1
051191	1	3	4	-	1	5	3	2	-
051199	8	8	7	3	10	7	1	2	12
060110	10	9	1	3	7	18	1	5	9
060120	2	10	4	1	3	8	1	3	10
060210	1	7	1	1	1	8	1	2	2
060220	1	4	3	1	2	5	1	2	10
060230	1	1	1	1	2	1	1	1	1
060240	1	2	1	1	2	2	1	2	1
060290	10	14	4	3	11	20	2	11	26
060310	15	14	1	6	1	6	2	6	9
060390	1	1	1	1	1	4	1	1	1
060410	1	2	1	1	1	1	1	2	1
060491	4	3	1	1	1	4	1	5	3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60499	2	3	1	1	1	3	1	2	1
070110	2	1	1	1	1	1	1	1	1
070190	5	1	1	1	3	1	1	3	1
070200	14	2	1	1	3	10	1	1	1
070310	3	2	2	4	6	8	2	3	2
070320	3	2	1	1	11	1	1	1	2
070390	1	1	1	2	9	3	1	1	2
070410	3	3	1	1	3	3	1	1	1
070420	1	1	1	1	3	3	1	1	1
070490	3	2	1	2	3	9	1	2	3
070511	2	1	1	1	3	4	1	1	1
070519	2	1	1	1	3	3	1	1	1
070521	1	1	1	1	3	1	1	1	1
070529	1	1	1	1	3	2	1	1	1
070610	4	1	1	1	3	8	1	1	2
070690	3	1	4	2	3	10	1	3	3
070700	8	1	1	1	3	4	1	2	1
070810	2	1	1	1	3	3	1	1	1
070820	3	1	1	1	3	5	1	1	1
070890	5	1	1	1	3	2	1	1	1
070910	1	1	1	1	3	2	1	1	1
070920	2	2	1	1	3	2	1	1	1
070930	2	1	1	1	3	2	1	1	1
070940	3	2	1	1	3	3	1	1	1
070951	1	1	1	1	3	1	1	1	2
070952	1	1	1	1	3	2	1	1	1
070959	1	1	1	3	18	2	1	3	6
070960	6	2	2	2	3	2	1	4	2
070970	1	1	1	1	3	2	1	1	1
070990	8	2	6	3	8	12	4	9	4
071010	1	1	1	1	1	1	1	1	1
071021	2	1	1	1	1	1	1	1	1
071022	7	1	1	1	2	3	1	1	1
071029	5	1	1	2		2	1	1	1
071030	1	1	1	1	1	1	1	1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71040	1	1	1	1	1	1	1	1	1
071080	17	5	2	3	8	8	2	9	8
071090	2	2	1	2	1	1	1	1	1
071120	4	1	1	1	1	1	1	2	1
071130	1	1	1	1	1	1	1	1	1
071140	1	1	1	1	1	2	1	1	1
071151	1	1	1	1	3	1	1	1	1
071159	2	1	1	1	7	1	1	1	2
071190	3	3	3	7	6	1	1	5	8
071220	2	1	1	1	1	1	2	1	1
071231	2	1	1	1	1	1	1	1	2
071232	1	1	1	1	1	1	1	1	1
071233	1	1	1	1	1	1	1	1	1
071239	3	1	1	2	7	2	1	1	7
071290	17	4	7	8	10	6	5	6	15
071310	6	2	1	4	2	9	1	2	2
071320	3	1	1	2	2	4	1	1	1
071331	3	1	1	1	2	3	3	1	2
071332	2	1	1	2	3	2	1	1	2
071333	10	4	1	4	2	6	2	2	2
071339	17	1	2	6	1	3	5	1	1
071340	4	1	1	2	2	6	1	1	1
071350	2	1	1	4	2	3	1	1	1
071390	4	1	3	4	2	3	1	1	1
071410	2	2	1	6	3	1	3	3	6
071420	2	2	1	2	4	1	1	2	5
071490	11	3	2	4	8	9	2	3	4
080111	1	1	1	1	1	1	1	1	1
080119	2	1	3	1	2	1	1	1	1
080121	1	1	1	1	3	1	1	1	1
080122	1	1	1	1	3	1	1	1	1
080131	1	1	1	1	3	1	1	1	1
080132	1	1	3	1	3		1	1	1
080211	1	1	1	2	3	1	1	2	1
080212	1	1	1	2	3	1	1	2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80221	1	1	1	1	3	1	1	1	1
080222	1	1	1	1	3	1	1	1	1
080231	1	1	1	1	3	1	1	1	1
080232	1	1	1	1	3	2	1	1	1
080240	1	1	1	1	6	2	1	1	2
080250	2	2	1	1	3	2	1	1	1
080290	9	2	5	4	22	4	3	4	5
080300	4	1	1	2	3	2	4	3	1
080410	4	2	4	1	3	2	1	1	1
080420	3	2	2	2	3	2	1	2	1
080430	3	1	1	2	3	2	2	1	1
080440	2	1	1	2	3	1	1	1	1
080450	5	1	5	3	9	2	3	1	3
080510	2	1	1	1	3	3	3	4	1
080520	2	1	1	1	9	3	3	5	2
080540	3	1	1	1	3	1	1	1	1
080550	3	3	1	2	3	3	1	2	3
080590	1	1	1	2	3	3	2	1	1
080610	3	1	1	1	1	3	1	2	1
080620	5	1	2	1	1	1	1	6	1
080711	4	1	1	1	1	1	1	1	1
080719	6	2	1	1	3	3	2	1	1
080720	1	1	1	1	1	1	1	1	1
080810	2	1	1	1	1	18	1	4	1
080820	2	2	1	1	4	4	1	3	2
080910	1	1	1	1	1	3	1	1	1
080920	2	1	1	1	1	6	1	2	1
080930	3	1	1	1	1	5	1	2	1
080940	2	1	1	1	1	6	1	2	2
081010	2	1	1	1	1	2	1	1	1
081020	4	1	1	1	1	3	1	2	1
081030	1	1	1	1	1	1	1	3	1
081040	4	1	1	1	1	5	1	4	1
081050	1	1	1	1	1	1	1	1	1
081060	1	1	1	1	1	1	1	1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81090	3	1	7	2	8	4	5	3	5
081110	4	1	3	2	1	1	1	3	1
081120	3	1	3	2	1	3	1	7	1
081190	14	1	2	12	2	10	5	10	4
081210	1	1	1	1	1	3	1	1	1
081290	6	3	2	8	1	4	1	8	2
081310	1	2	1	1	1	1	1	1	1
081320	2	2	1	1	1	1	1	1	1
081330	1	1	1	1	1	1	1	1	1
081340	8	4	3	5	5	2	3	6	3
081350	3	1	2	2	1	3	1	7	1
081400	3	1	1	1	1	2	1	1	2
090111	2	2	20	1	1	1	1	1	1
090112	1	1	1	1	1	1	1	1	1
090121	2	1	2	1	1	1	1	1	1
090122	2	1	2	1	1	1	1	1	1
090190	2	2	3	2	2	2	1	2	2
090210	2	1	4	1	2	2	1	1	1
090220	2	1	5	2	2	1	1	1	1
090230	2	1	4	2	3	4	1	1	1
090240	1	1	7	3	3	2	1	1	1
090300	1	1	1	1	1	1	1	1	1
090411	2	1	9	2	3	1	1	1	1
090412	1	1	1	2	1	1	1	1	1
090420	8	2	6	3	2	4	2	3	2
090500	1	1	3	1	1	1	1	1	1
090610	1	1	4	1	1	1	1	1	2
090620	1	1	1	1	1	1	1	1	2
090700	1	1	4	3	1	2	1	1	1
090810	1	1	2	3	1	2	1	1	1
090820	2	1	1	3	1	2	1	1	1
090830	1	1	8	3	1	2	2	1	1
090910	1	1	4	3	2	2	1	1	1
090920	1	1	2	3	1	2	1	1	1
090930	1	1	4	3	1	2	1	1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090940	1	1	2	3	1	2	1	1	1
090950	1	1	4	3	1	2	1	1	1
091010	2	1	5	4	1	2	1	1	1
091020	1	1	3	3	1	1	1	2	1
091030	1	1	4	3	1	1	1	1	1
091040	3	1	3	3	1	2	1	4	1
091050	1	1	1	1	1	1	1	1	1
091091	1	1	1	2	1	2	1	2	1
091099	4	1	17	3	1	4	1	3	1
100110	6	1	2	2	3	4	1	1	1
100190	19	2	4	6	6	5	1	3	5
100200	3	1	2	3	2	2	1	1	2
100300	3	3	2	4	2	5	1	2	4
100400	3	2	2	2	2	2	1	1	2
100510	2	2	1	2	3	2	1	5	1
100590	3	5	1	7	3	7	1	1	3
100610	1	1	2	2	12	1	2	9	1
100620	5	1	1	2	6	4	15	8	2
100630	6	2	3	2	6	6	29	16	2
100640	1	1	1	2	6	1	16	1	1
100700	2	3	2	3	2	1	1	2	2
100810	1	1	2	2	1	2	1	1	1
100820	1	1	6	1	1	2	1	1	3
100830	1	1	2	1	1	2	1	1	1
100890	2	1	2	4	2	3	3	2	1
110100	4	1	1	3	3	1	1	3	2
110210	1	1	1	1	1	1	1	1	1
110220	1	1	1	1	3	1	1	2	1
110230	1	1	1	2	6	1	2	1	1
110290	3	1	1	5	1	4	1	3	2
110311	2	1	2	2	3	1	1	2	1
110313	2	1	1	1	3	3	1	2	1
110319	3	3	1	8	8	6	1	5	4
110320	2	2	1	11	4	5		7	4
110412	1	1	1	1	1	1	1	2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110419	2	2	1	11	2	5	1	7	3
110422	1	1	1	1	1	1	1	5	1
110423	1	1	1	2	3	1	1	4	1
110429	2	2	1	9	2	5	1	17	3
110430	1	1	1	1	1	3	1	2	2
110510	1	1	1	1	1	1	1	1	1
110520	1	1	1	1	1	1	1	1	1
110610	1	1	1	1	1	2	3	1	1
110620	2	2	3	3	1	2	3	2	2
110630	2	2	4	3	1	2	1	2	1
110710	1	1	1	4	1	4	1	4	1
110720	1	1	1	2	1	4	1	1	2
110811	2	1	1	2	1	3	1	1	1
110812	2	1	1	3	1	2	1	1	1
110813	2	1	1	3	1	2	1	1	1
110814	1	1	1	3	1	2	1	1	1
110819	2	2	2	6	1	7	2	2	2
110820	1	1	1	2	1	1	1	1	1
110900	2	1	1	1	1	2	1	1	1
120100	3	5	2	1	5	3	2	2	2
120210	6	4	4	3	2	1	2	2	1
120220	6	2	2	3	1	1	2	1	1
120300	1	1	1	1	1	1	1	1	1
120400	3	4	2	1	1	1	1	2	1
120510	3	2	1	1	2	3	1	2	1
120590	3	2	1	1	2	3	1	1	1
120600	6	4	2	1	2	5	2	3	1
120710	1	2	2	1	2	1	1	2	1
120720	2	4	2	1	2	1	1	2	1
120730	1	2	2	1	2	1	1	2	1
120740	1	2	2	1	2	1	3	2	1
120750	1	2	2	1	2	1	1	2	1
120760	1	5	2	1	2	2	1	2	1
120791	1	1	1	1	1	1	1	2	1
120799	2	6	5	2	3	3	3	3	3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120810	1	1	1	1	1	2	1	1	1
120890	1	4	1	1	1	2	1	1	1
120910	1	1	1	1	1	1	1	1	1
120921	2	1	1	1	1	1	1	1	1
120922	7	1	1	1	1	4	1	2	1
120923	5	1	1	1	1	5	1	3	1
120924	1	1	1	1	1	2	1	1	1
120925	2	1	1	1	1	2	1	2	1
120926	2	1	1	1	1	2	1	1	1
120929	15	6	2	1	2	10	1	4	4
120930	2	1	1	1	1	2	1	1	1
120991	22	15	7	2	1	24	2	3	4
120999	6	8	2	1	3	5	3	3	6
121010	1	1	1	1	1	1	1	1	1
121020	2	1	1	2	1	2	2	2	2
121110	1	1	1	1	2	2	1	1	1
121120	2	1	1	1	4	2	1	1	16
121130	1	1	1	1	4	1	1	1	1
121140	1	1	1	1	4	1	1	1	1
121190	10	6	37	7	38	6	3	2	14
121210	1	2	2	1	3	1	1	3	1
121220	1	2	2	-	18	1	2	1	-
121230	2	1	2	1	3	1	1	1	1
121291	1	1	1	1	1	1	1	2	1
121299	2	3	3	5	12	2	5	2	5
121300	1	1	1	1	2	2	1	1	1
121410	5	1	1	1	1	1	1	1	1
121490	5	2	1	2	1	3	1	2	3
130110	3	1	9	3	1	1	5	1	2
130120	1	1	1	1	1	1	1	1	1
130190	5	2	24	2	8	1	10	2	2
130211	1	4	1	1	1	2	1	1	1
130212	1	2	1	1	1	1	1	1	1
130213	1	1	1	1	1	1	1	1	1
130214	1	2	1	2	1	1	1	1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130219	5	13	12	6	11	2	4	4	13
130220	1	2	1	1	1	1	1	2	1
130231	1	1	1	-	1	2	1	1	-
130232	2	3	5	2	1	1	1	2	1
130239	2	5	1	1	1	2	1	1	1
140110	1	1	1	1	1	1	1	1	3
140120	3	1	1	1	1	1	1	1	2
140190	2	1	2	3	4	1	3	1	2
140200	2	1	1	1	1	1	1	1	1
140300	3	1	2	1	1	3	1	1	1
140410	2	2	10	1	1	1	1	1	3
140420	1	1	1	1	1	1	1	1	1
140490	1	1	9	7	1	2	2	1	8
150100	4	1	1	3	1	3	2	3	3
150200	3	1	4	3	2	3	2	2	3
150300	1	2	1	1	1	1	2	4	2
150410	2	3	3	-	1	4	2	3	-
150420	4	2	4	-	1	2	2	2	-
150430	1	1	1	-	1	1	2	2	-
150500	2	4	3	2	1	3	1	2	2
150600	1	3	2	1	3	2	2	1	2
150710	1	1	1	2	3	1	1	2	1
150790	3	1	2	1	3	2	1	2	2
150810	1	1	1	2	1	1	1	2	1
150890	1	1	3	1	1	1	1	2	2
150910	2	2	1	1	1	2	1	2	1
150990	2	3	2	1	1	2	1	1	1
151000	3	1	3	1	1	1	1	2	1
151110	1	1	1	1	3	1	1	2	1
151190	1	1	3	2	7	3	1	4	3
151211	2	1	2	4	3	2	1	3	2
151219	2	1	5	2	3	2	2	2	4
151221	1	1	1	2	1	1	1	2	1
151229	2	1	2	2	1	1	2	2	2
151311	1	1	1	1	1	1	1	3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151319	1	1	1	1	1	1	1	5	2
151321	1	1	2	3	1	1	1	3	2
151329	1	1	4	2	1	2	1	5	3
151411	1	1	3	2	3	1	1	2	1
151419	1	1	3	1	3	1	2	2	2
151490	-	-	-	-	1	-	-	-	-
151491	3	1	3	2	5	1	1	2	2
151499	5	1	4	1	3	1	2	2	3
151511	1	1	1	1	1	1	1	1	1
151519	1	1	2	1	1	1	1	2	1
151521	1	1	1	2	1	1	1	2	1
151529	2	1	2	1	1	1	2	2	1
151530	1	1	2	1	1	2	2	2	1
151540	1	1	1	1	1	2	1	1	1
151550	1	1	3	2	1	2	2	4	1
151590	4	5	6	8	2	8	5	11	5
151610	1	1	1	1	1	1	2	2	2
151620	2	1	8	2	1	8	14	5	11
151710	1	1	4	1	1	2	1	2	1
151790	15	3	5	5	3	5	1	4	3
151800	2	3	7	1	1	6	13	6	3
152000	1	1	1	2	1	1	1	1	1
152100	-	-	-	2	-	-	-	-	-
152110	3	2	3	-	1	4	1	1	3
152190	2	4	3	3	3	2	3	3	2
152200	1	1	3	2	1	1	1	5	3
160100	7	2	1	1	3	15	1	3	2
160210	1	2	1	1	3	2	1	1	1
160220	2	2	1	3	1	8	1	3	2
160231	2	1	1	3	1	12	1	4	2
160232	3	1	1	3	2	11	1	4	3
160239	3	1	1	3	2	3	1	4	2
160241	4	1	1	3	3	2	1	2	2
160242	3	1	1	3	3	2	1	2	2
160249	5	2	1	4	6	4	1	7	2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160250	9	2	1	24	6	6	1	4	2
160290	3	1	1	3	6	4	1	11	2
160300	3	2	3	-	3	4	1	2	2
160411	8	1	1	-	2	7	1	1	-
160412	6	1	2	-	1	5	1	3	-
160413	5	2	2	-	1	3	2	3	-
160414	17	4	2	-	1	5	2	4	-
160415	1	1	1	-	1	2	1	3	-
160416	4	2	1	-	1	2	1	1	-
160419	8	3	1	-	5	4	1	10	-
160420	12	3	1	-	2	6	1	7	-
160421	-	-	-	-	-	1	-	-	-
160430	3	2	1	-	1	2	1	2	-
160510	19	1	1	-	1	4	3	1	-
160520	7	1	1	-	1	4	6	3	-
160530	6	1	1	-	1	3	1	2	-
160540	3	2	1	-	3	3	1	1	-
160590	13	1	4	-	4	11	6	4	-
170111	4	4	3	3	3	6	3	2	2
170112	3	4	1	2	3	3	1	2	2
170191	10	1	1	1	3	6	1	1	1
170199	5	3	2	2	9	3	5	2	1
170211	1	1	2	1	1	1	1	1	2
170219	1	2	2	1	1	1	1	1	2
170220	8	1	2	2	1	2	1	2	2
170230	5	1	4	4	1	4	2	5	2
170240	4	2	4	3	1	1	1	2	2
170250	1	1	1	1	1	1	1	1	1
170260	5	3	2	3	1	2	1	3	2
170290	11	2	5	13	3	14	4	9	4
170291			1						
170310	2	2	1	4	1	3	2	1	2
170390	2	1	2	4	1	3	2	1	2
170410	1	1	1	1	1	2	1	4	1
170490	13	1	4	4	1	12	1	10	5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180100	1	1	1	1	1	1	1	1	2
180200	1	1	1	1	1	1	1	1	2
180310	1	1	1	1	1	1	1	1	1
180320	1	1	1	1	1	1	1	1	1
180400	1	1	1	1	3	1	1	1	1
180500	1	1	1	1	1	1	1	1	1
180610	13	2	1	2	1	2	1	4	1
180620	29	1	1	9	1	7	2	6	3
180631	3	1	1	1	1	1	2	1	2
180632	13	1	1	4	1	2	2	2	2
180690	19	3	5	8	1	9	1	8	17
190110	12	2	2	8	1	4	2	1	4
190120	16	3	1	32	1	33	1	1	3
190190	23	6	2	40	1	23	3	4	6
190211	5	1	1	1	1	12	3	1	3
190219	5	1	1	5	1	33	3	2	4
190220	3	1	2	8	1	2	1	4	1
190230	3	1	2	4	4	12	1	2	3
190240	1	1	2	1	1	2	1	2	1
190290	-	-	-	-	-	4	-	-	-
190300	2	1	1	1	1	1	2	1	2
190410	2	1	4	8	1	14	1	3	4
190420	2	1	1	8	1	14	1	4	2
190430	1	1	1	2	1	7	1	1	1
190490	2	1	1	8	1	13	1	2	2
190510	1	1	1	1	1	11	1	1	1
190520	1	1	1	1	1	1	1	3	1
190531	4	1	1	1	1	9	1	5	1
190532	4	1	3	1	1	5	1	5	1
190540	1	1	1	1	1	9	1	2	1
190590	8	2	5	11	1	46	3	7	9
200110	1	1	1	2	1	2	1	1	1
200190	13	4	1	10	4	6	3	11	9
200210	2	1	1	1	2	2	1	2	1
200290	6	1	1	6	2	5	1	6	2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200310	6	1	1	4	3	3	1	2	2
200320	1	1	1	2	1	1	1	1	1
200390	2	1	1	3	6	3	1	1	3
200410	3	1	1	3	1	1	1	3	1
200490	6	3	1	9	1	11	1	5	2
200510	1	1	1	2	1	1	1	1	2
200520	3	1	1	3	1	3	1	3	2
200540	1	1	1	6	1	1	1	1	1
200551	4	1	1	3	2	4	1	1	3
200559	1	1	1	3	2	1	1	1	3
200560	1	1	1	2	2	1	1	1	1
200570	28	1	1	2	1	2	1	2	1
200580	1	1	1	2	1	1	1	1	1
200590	13	3	1	12	10	19	7	7	4
200600	7	4	1	3	3	5	5	6	13
200710	1	1	1	2	1	1	1	3	1
200791	3	1	1	6	1	3	1	3	2
200799	17	5	5	8	2	15	1	11	2
200811	9	2	1	6	4	3	1	5	2
200819	12	2	5	18	4	9	2	7	3
200820	2	1	1	7	2	2	2	9	1
200830	17	9	2	4	2	5	1	11	1
200840	2	1	1	8	2	4	1	11	1
200850	2	1	1	4	1	3	1	13	1
200860	3	1	1	4	1	4	1	12	1
200870	4	1	1	9	2	4	1	12	2
200880	1	1	1	4	1	2	1	7	1
200891	1	1	1	1	1	2	1	1	1
200892	8	1	1	6	1	3	2	20	4
200899	26	2	10	22	5	18	10	29	4
200911	3	1	1	4	1	6	1	4	1
200912	2	2	1	4	1	2	1	1	1
200919	1	2	1	4	1	5	1	4	1
200921	3	1	1	4	1	2	1	1	1
200929	2	1	1	4	1	7	1	4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200931	8	3	1	6	1	4	1	6	3
200939	5	3	1	6	1	6	1	10	3
200941	3	2	1	4	1	1	1	3	1
200949	3	2	1	4	1	3	2	6	1
200950	2	1	1	2	1	2	1	2	1
200961	3	1	1	3	1	3	1	2	1
200969	2	1	1	4	1	8	1	7	1
200971	1	1	1	4	1	3	1	3	1
200979	2	1	1	4	1	6	1	6	1
200980	7	1	2	9	7	11	1	23	4
200990	2	2	1	6	2	10	2	19	6
210111	6	3	4	3	1	7	2	2	1
210112	8	1	1	11	1	1	2	2	3
210120	9	1	4	10	1	2	2	3	2
210130	1	1	3	1	1	2	1	4	2
210210	1	3	3	1	1	2	1	4	5
210220	3	2	1	2	1	1	1	3	7
210230	1	1	1	1	1	1	1	1	1
210310	1	1	1	1	1	1	1	1	1
210320	3	2	1	2	1	4	1	1	2
210330	2	2	1	2	1	2	1	2	2
210390	11	1	5	6	3	5	6	3	9
210410	3	1	2	2	1	2	1	2	3
210420	1	1	1	1	1	1	1	1	1
210500	7	1	1	8	1	7	1	3	4
210610	1	5	1	8	1	1	1	2	3
210690	56	12	12	46	4	43	1	8	18
220110	1	2	2	1	2	2	2	3	1
220190	1	3	2	1	2	1	3	1	2
220210	3	1	3	2	1	4	1	1	2
220290	10	5	4	2	3	10	1	4	4
220300	3	1	1	1	1	6	1	3	1
220410	2	1	1	1	1	2	2	4	1
220421	12	5	3	2	1	32	1	51	3
220429	9	1	3	2	3	14	1	34	3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220430	1	1	1	5	1	2	1	5	1
220510	2	2	1	1	1	6	1	2	1
220590	3	2	1	2	1	3	1	2	1
220600	5	2	1	5	3	32	2	7	9
220710	2	1	3	5	1	2	2	1	3
220720	1	1	1	2	3	3	2	1	1
220820	6	4	6	2	1	2	1	11	2
220830	8	5	8	6	1	9	1	10	4
220840	4	2	4	1	1	3	1	6	1
220850	2	1	5	1	1	2	1	4	1
220860	3	1	1	1	1	1	1	4	1
220870	2	2	4	1	1		1	2	3
220890	19	4	6	9	5	7	4	17	5
220900	1	1	3	1	1	1	1	4	2
224029	-	-	-	-	-	1	-	-	-
230110	1	2	2	2	4	3	1	1	2
230120	2	1	3		2	8	2	1	
230210	1	1	2	1	1	3	1	2	1
230220	1	1	3	1	1		1	2	1
230230	2	1	1	1	1	3	1	2	1
230240	3	1	1	1	1	4	1	2	1
230250	1	1	1	1	1	1	1	1	1
230310	3	1	1	1	1	3	2	3	1
230320	2	1	1	1	1	2	1	3	1
230330	1	2	1	1	1	2	1	1	1
230400	1	1	4	1	2	1	1	1	1
230500	1	1	3	1	1	1	1	1	1
230610	1	1	5	1	1	1	1	1	1
230620	1	1	3	1	1	1	1	1	1
230630	1	1	3	1	1	1	1	1	1
230641	1	1	1	1	1	1	1	1	1
230649	1	1	1	1	1	1	1	1	1
230650	1	1	3	1	1	1	1	1	1
230660	1	1	1	1	1	1	1	1	1
230670	1	1	1	1	1	1	1	1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230690	2	1	20	1	1	1	2	3	3
230700	1	1	1	1	1	1	1	3	1
230800	5	2	1	1	1	1	1	4	4
230910	2	1	1	5	2	4	2	12	1
230990	23	12	6	12	2	78	1	16	15
240110	26	2	9	1	2	6	4	10	4
240120	56	3	9	1	2	6	3	10	4
240130	55	1	1	1	1	1	1	1	3
240210	4	1	2	1	1	2	1	1	3
240220	3	1	6	1	1	2	1	2	2
240290	1	1	3	1	3	1	1	1	1
240310	14	1	5	2	1	3	1	2	2
240391	13	2	1	1	3	3	1	1	2
240399	15	2	8	2	2	4	2	2	4
290543	1	1	1	1	1	1	1	1	1
290544	1	1	1	1	1	1	1	4	1
330111	1	1	1	1	1	1	1	2	1
330112	1	1	1	1	1	1	1	2	1
330113	1	2	1	1	1	1	1	2	1
330114	1	3	1	1	1	1	1	2	1
330119	2	3	2	1	1	1	1	2	1
330121	1	1	1	1	1	1	1	2	1
330122	1	1	2	1	1	1	1	2	1
330123	1	1	1	1	1	1	1	2	1
330124	1	1	1	1	1	1	1	2	1
330125	3	1	5	4	1	2	1	2	1
330126	1	1	1	1	1	1	1	2	1
330129	21	5	35	8	9	4	5	4	5
330130	1	1	3	1	2	2	1	1	1
330190	4	7	24	1	3	1	2	4	13
350110	2	1	1	1	1	2	1	3	1
350190	2	4	1	1	1	3	1	2	2
350211	1	1	1	1	1	3	1	2	1
350219	1	1	1	1	1	1	1	2	1
350220	1	1	1	1	1	1	1	3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350290	1	1	1	1	1	1	1	3	2
350300	6	5	4	5	4	12	4	2	4
350400	2	7	3	3	2	1	2	1	7
350510	5	1	2	2	1	5	1	3	6
350520	1	1	1	1	1	2	1	4	3
350610	-	-	-	-	-	2	-	-	-
350691	-	-	-	-	-	10	-	-	-
350699	-	-	-	-	-	1	-	-	-
380910	1	1	1	1	1	1	1	4	1
382460	1	1	2	-	1	1	1	4	1
410120	8	2	3	5	9	3	2	4	1
410150	9	3	3	5	9	5	2	4	11
410190	8	3	3	5	9	5	1	1	4
410210	3	1	3	1	1	1	1	2	1
410221	3	1	3	2	2	1	1	1	1
410229	4	1	2	2	2	3	1	1	1
410310	3	1	5	2	12	1	1	3	1
410320	3	3	1	10	1	1	3	1	4
410330	2	1	1	2	3	2	1	1	1
410390	3	2	1	6	3	2	1	1	3
430110	2	1	1	1	1	2	1	1	1
430130	1	1	1	1	1	1	1	1	1
430160	2	1	1	1	1	1	1	1	1
430170	1	1	1	1	1	1	1	2	1
430180	11	7	1	2	6	10	1	3	7
430190	1	1	1	4	4	1	1	1	1
500100	1	1	1	2	2	1	1	1	1
500200	1	1	3	11	6	1	1	1	7
500310	1	1	3	4	1	1	1	1	5
500390	1	1	5	2	1	1	1	1	3
510111	6	4	1	1	2	1	1	1	1
510119	6	2	1	1	2	1	1	1	1
510121	8	4	1	1	2	1	1	1	1
510129	8	4	1	1	2	1	1	1	1
510130	6	4	1	1	2	1	1	1	1

부표 2-3. 한국 및 주요 8개국 품목분류 현황(6단위)<계속>

분류	미국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EU	한국
510211	2	1	2	1	1	1		1	1
510219	5	3	2	1	12	1	1	4	1
510220	1	2	2	1	3	1	1	1	1
510310	1	4	2	2	6	1	1	2	1
510320	1	4	3	1	4	1	1	3	1
510330	1	1	1	1	3	1	1	1	1
520100	12	4	7	1	2	4	1	2	6
520210	1	1	1	1	1	1	1	1	1
520291	1	1	1	1	1	1	1	1	1
520299	4	2	1	1	1	1	1	1	1
520300	4	1	1	1	2	2	1	1	1
530110	1	2	1	1	1	1	1	1	1
530121	1	2	1	1	1	1	1	1	1
530129	1	2	1	2	1	1	1	1	1
530130	1	2	1	1	1	1	1	2	2
530210	1	1	1	1	1	1	1	1	1
530290	1	1	1	1	1	1	1	1	3
합계	2,689	1,264	1,513	1,832	1,766	2,476	1,065	2,141	1,452

부록 3.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에 관한 설문 내용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에 관한 설문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신선 형태의 1차 농산물의 관세율은 높은 반면, 이를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등 단순 가공한 농산물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체계로 인해 단순 가공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각의 품목이 가공정도와 함량 등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하여 품목의 정확한 수입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산업피해구제 조치 등을 활용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설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진주산업대학, 농협중앙회가 함께 진행하는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와 품목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 DDA 농업협상에 따른 이행계획서 작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 과장 이 옥 ☎ 02-2131-4492)

I. 관세체계 인지도 및 개선방안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가 1차 농산물(신선, 냉장 상태)의 관세보다 이를 가공(냉동, 절임 등)한 단순 가공 농산물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예) 2005년 신선마늘의 관세는 360%인데 반해 냉동마늘은 27%임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2. 귀하께서 현재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냉동하거나 쪄는 등 단순 가공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3.

- ① 현재의 관세체계가 잘 되어있다
- ② 관세가 높은 신선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어야 한다
- ③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높여야 한다
- ④ 신선 농산물과 단순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같게 해야 한다
- ⑤ 기타()

4. 향후 농산물 가공 기술 발달로 신선 농산물을 쪄거나, 냉동, 초산처리, 절임 등 단순한 가공을 통해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단순 가공 농산물로 전환되어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냉동고추, 찐쌀 등

5.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다음의 설문에서 귀하의 견해와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표하여 주십시오

설문사항	정말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1] 신선 농산물을 냉동하거나 찌는 등 가공을 통해 수입하는 것은 신선 농산물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2] 신선 농산물의 관세가 이를 냉동하거나 찌는 등 단순 가공한 농산물의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단순 가공 농산물보다 신선 상태의 1차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3] 현재와 같은 농산물 관세체계가 지속된다면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 농산물의 수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다					
[4] 관세가 낮은 단순 가공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신선 형태의 1차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6.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냉동하거나 찌는 등 단순 가공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현재의 관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II. 품목분류의 필요성 및 관세수준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과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각 품목의 형태에 따라 '관세품목분류표(HSK)'상 특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며,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코드로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기타'라는 품목코드로 통합되어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예) 냉동채소 중 냉동고추라는 품목코드가 있는 경우 냉동고추(HSK0710807000)로 분류되나, 이러한 품목코드가 없는 품목은 '기타 냉동채소(0710809000)'라는 품목으로 통합 분류됨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2. 귀하께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으로 코드가 세분되어있지 않아 '기타'라는 품목으로 통합되어 관리되는 품목을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절임배추는 독립된 품목코드가 없어 기타일시저장채소(HSK0711905099)로 다른 일시저장 채소와 통합되어 있음

3.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 등에 따라 동일한 농산물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육류의 경우 부위에 따라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하고, 주스나 포도주 등은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세분화함

- ①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 ②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4.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가공정도나 함량 차이에 따라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가공 정도나 함량 등에 따라 동일한 농산물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한다면,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존 농산물의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 ②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 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조정해야 한다
- ③ 가공 정도나 원료의 함량 비율이 높을수록 관세를 낮게 조정해야 한다
- ④ 기타()

6. 귀하께서는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품목분류를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품목분류에 포함해야 한다
- ② 별도의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 ③ 기타()

7. 귀하께서는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기존의 농산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존 농산물의 관세와 같아야 한다
- ②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의 관세를 기존의 농산물의 관세보다 높게 해야 한다 ☞ 기존 농산물의 ()% 수준
- ③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의 관세를 기존의 농산물의 관세보다 낮게 해야 한다 ☞ 기존 농산물의 ()% 수준
- ④ 기타()

8. 농산물 품목분류·세분화에 대한 다음의 설문에서 귀하의 견해와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표하여 주십시오

설문사항	정말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1] 현재의 농산물 품목분류에 있어 품목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은 가능한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2] 농산물 수출입시 품목이 특정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 독립된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3] 농산물 품목분류를 가공정도나 함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새로운 품목코드를 부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농산물 품목분류를 세분화할 경우 세이프가드 제도와 같은 수입피해구제제도 등을 통한 국내 농업 보호에 유리하다					

9. 현재의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귀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